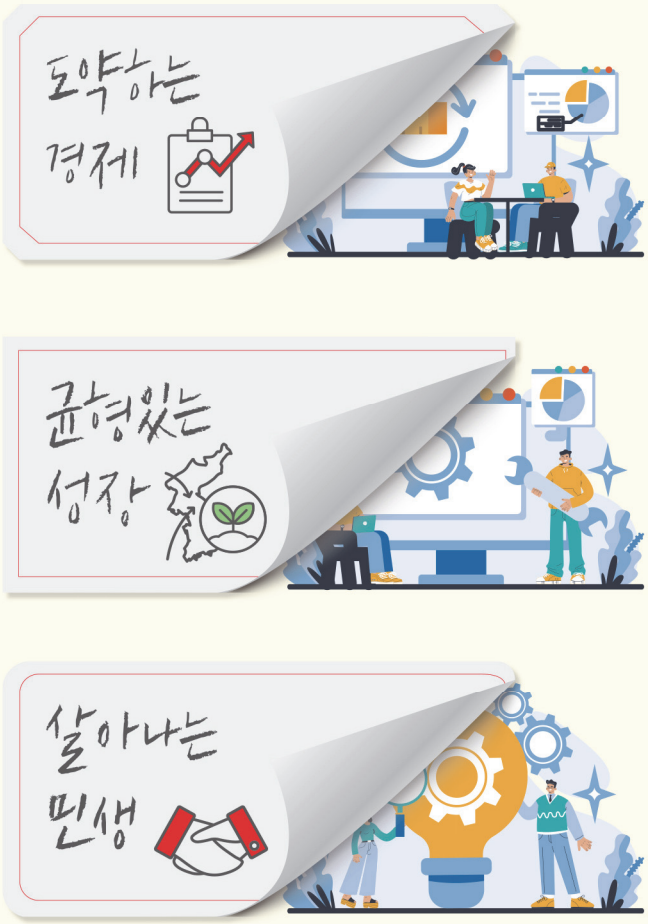

2025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Annual Report 2025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민생 회복과 공정한 성장의 열쇠,

과감한 규제합리화로 열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가 '민생 회복'과 '공정한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2025년 한 해 동안 규제합리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5 규제개혁백서」 발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정책의 철학과 운영체계를 마련한 해입니다. 정부는 "규제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조 아래, 규제를 민생 회복과 혁신 성장, 공정한 시장질서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여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앞서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규제합리화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선제적으로 부각하고 범정부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조기 가동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AI 데이터 활용 기준 정비,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운행 확대 등 ABCDEF 산업(AI·Bio·Contents·Defence·Energy·Factory)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신속 확인과 특례를 적극 부여하여 누적 2,526건의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데이터 활용, 모빌리티·지능형 로봇 활성화 등 분야별 제도 정비 방향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해소'를 양대 축으로 삼아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소비기한이 임박한 미판매 식품의 활용 활성화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5년 총 4,278건의 규제 건의를 접수·처리하였으며,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51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은 정책 수요자 중심 규제합리화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울러 규제의 신설·강화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신설·강화 규제 806건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규제 확산을 최소화하였으며,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사후규제영향분석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존 규제의 실효성 또한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을 맞아 규제합리화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사후 정비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 맞춤형 규제 설계 등 구조적 개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규제합리화는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구조적 개혁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참여가 모일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2025 규제개혁 백서」가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록을 넘어, 정책 연구와 제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규제합리화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국민과 기업, 관계 부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 민 석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Report 2025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09.15.)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Report 2025




새로운 도약
제 합리화 전략회의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Report 2025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10.16.)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Report 2025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25.10.16.)

국무총리 주재
관광규제 활성화 미니 TF
('25.08.06.)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Report 2025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25.12.01.)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Report 202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
('25.09.11.)



네이버 데이터센터
방문
('25.11.27.)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Report 2025





노인 요양시설
규제개선 현장방문
('25.12.26.)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
('25.11.27.)





CONTENTS

PART. 01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발간사 2

화보 4

01 개요 24

02 규제개혁위원회 25

1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5
2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3 |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28
4 | 규제신문고 29

0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30

1 | 규제총괄정책관 30
2 | 규제혁신기획관 31
3 | 규제심사관리관 31



04 새 정부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32

1 | 추진 배경 32
2 |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32
3 | 정부 내 차관급 규제합리화 TF 구축 33

05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합리화 추진기구 35

1 | 부처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35
2 | 부처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5
3 | 부처별 규제합리화 TF 36

06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합리화 추진기구 38

1 |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38
2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38
3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38

07 민·관·연 규제협력 창구 39

1 | 규제신문고 39
2 |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 39
3 | 규제연구센터 40
4 |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40

PART. 02

기존규제 개선성과

01 2025 규제합리화 추진성과 (총평) 44

02 핵심규제 합리화 46

1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46
2 | 총리 주재 미니 TF (관광규제 합리화) 52
3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 53
4 | 경쟁제한적 규제합리화 58
5 | 인증규제 합리화 64

03 국민불편 민생규제 합리화 68

1 | 국민불편 민생규제 합리화(1차) 68
2 |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합리화 71
3 | 황당규제 대국민 공모전 74
4 | 국민불편 민생규제 합리화(2차) 77

04 신산업 규제혁신 84

1 | 규제샌드박스 시행 성과 84
2 |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95
3 | 신산업 규제정비 100

05 규제신문고 106

1 | 개요 106
2 | 처리 절차 106
3 |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107
4 | 2025년 규제신문고 운영 성과 108
5 | 주요 개선사례 108
6 | 향후 계획 115

06 규제혁신 소통 116

1 | 현장규제 현장대화 116
2 |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22
3 | 규제혁신 정책홍보협의회 128

07 국제협력 129

1 | 개요 129
2 | OECD 협력 129
3 | 미주개발은행(IDB) 협력 132



PART. 03

신설·강화 규제심사

0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주요 결과 136

1 | 요약 136
2 | 경제분과위 심사결과 138
3 | 행정사회분과위 심사결과 168

02 규제영향분석 200

1 | 제도 개요 200
2 | 작성항목 및 요소 201
3 | 작성대상 및 절차 202
4 |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204



PART. 04

규제합리화 법령·제도 운영

01 행정규제기본법 214

1 | 입법연혁 214
2 | 2025년 개정 추진사항 215

02 규제등록제도 217

1 | 개요 217
2 | 등록대상 및 단위 217

03 일몰규제 정비 219

1 | 규제의 재검토 개요 219
2 | 2025년 심사결과 220
3 | 주요 정비 사례 220
4 | 향후 계획 222

04 규제비용감축제 224

1 | 개요 224
2 |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225

PART. 05
규제합리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01 2025년 규제합리화 평가 232

1 | 규제합리화 평가 개요 232
2 | 2025년 규제합리화 평가 결과 233
3 | 부처별 평가 결과 234
4 | 분야별 평가 결과 236

02 2026년 규제합리화 추진방향 238

1 | 기본방향 238
2 | 세부 추진방향 238
3 | 향후 계획 239



PART. 06
부록

01 각 부처 규제합리화 성과사례 244

02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340

1 | 본 위원회 개최일지 340
2 | 경제분과위원회 개최일지 342
3 |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344

03 규제합리화 관련 법령 347

1 | 행정규제기본법 347
2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360
3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374
4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377
5 |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83
6 |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386
7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388

01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1. 개요 ····· 24
2. 규제개혁위원회 ····· 25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30
4. 새 정부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 32
5.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합리화 추진기구 ····· 35
6.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합리화 추진기구 ····· 38
7. 민·관·연 규제협력 창구 ····· 39

2025 규제개혁백서

PART. 01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01 개요

강형석 사무관 Tel. 044-200-2452

정부는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으로써 '규제합리화'를 추진하였다. 2025년은 새 정부 출범 첫해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규제합리화 역량을 결집하여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개선·점검하였다.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의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등이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규제'를 걷어내었으며,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신문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완·지원 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각 부처별 규제합리화 TF를 구성하고 부처차원의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규제합리화 TF)와 함께 규제정책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협의하고, 규제분야 국정과제 2건을 새롭게 수립하여 규제합리화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핵심규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총리 주재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미니 TF를 구성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던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나아가 현안관계장관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범부처가 함께 민생 불편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이처럼 정부는 조직 중심의 규제 개편을 넘어, 국정과제와 회의체를 연계한 전략적 규제합리화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환경 형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로의 개편도 진행하였다.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승격시키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통과되면서, 28년간 지속되어 오던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규제합리화를 보다 전략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02 규제개혁위원회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행정규제기본법 개정, '26.2.~)

박도연 사무관 Tel. 044-200-2416
천해선 사무관 Tel. 044-200-2414

1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기능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당연직) 및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되며, 2025년 12월 현재 위원장 2인, 민간위원 9인, 정부위원 7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회의 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며, 매월 2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2025년 위원회 운영실적

2025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본회의를 총 22회(575회~596회) 개최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총 64회 개최(경제분과위 29회, 573회~601회 / 행정사회분과위 35회, 613~647회)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총 42개 안건을 논의(의결 14건, 보고 28건)하였으며, 분과위원회에서는 총 80개 안건(의결 73건, 심의 4건, 보고 3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총 806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그 중 중요규제 99건에 대한 심사 결과 86건을 개선(부대)·철회 권고하였으며, 86.9%의 개선권고율(개선(부대)·철회권고 수/중요규제 수)을 달성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부록) 참조

2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송경준 사무관 Tel. 044-200-2398
김수현 사무관 Tel. 044-200-2443

1 구성 및 기능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5.12월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4~5인, 정부위원 4~5인 등 8~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 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25년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

경제분과위는 총 29회(573회~601회) 개최되었으며, 12개 부처의 총 37개 안건(의결 35건, 심의 2건)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44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3건, 개선권고 36건, 부대권고 5건이었다. 한편 행정사회분과위는 총 35회(613회~647회) 개최되었으며, 11개 부처의 총 43개 안건(의결 38건, 심의 2건, 보고 3건)을 처리하였다. 그 중 38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55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8건, 개선권고 29건, 철회권고 4건, 부대권고 14건이었다.

3 |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박도연 사무관 Tel. 044-200-241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①비용분석위원회('14.8월), ②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16.3월), ③기술규제위원회('17.9월) ④지방규제혁신위원회('23.4월) 등 4개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용분석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감축제 적용여부, 비용검증의 적정성 판단, 비용·편익분석 결과 파급효과가 큰 규제의 검증 및 비용감축제의 전문적 연구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위원장) 및 4명의 민간전문가(KDI·KIPA 센터장 2명 당연직)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신산업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자문기구이다.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건별로 위원장 및 위원(4~10인)을 선임하여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청취하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기술규제위원회'는 융·복합 산업 확대 등 산업 전반의 복잡·다양화되는 기술규제를 검토·조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0여 명 이내로 구성(공동위원장 : 국가기술표준원장, 민간전문가 1인)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인증제도 정비·개선방안 마련 등의 전문적인 자문·검토를 실시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에 관한 전문적 검토·조정을 위한 지방규제 자문기구로 민간전문가 및 주요 중앙부처를 포함하여 약 15명 내외로 구성(공동위원장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민간전문가 1인)하여 지자체에서 건의한 정부 규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자체 규제 등의 심의·조정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방안 등을 검토한다.

4 | 규제신문고

고명수 사무관 Tel. 044-200-2634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에 규제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신문고('14.3월 신설)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직접 건의한 민생·경제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관하여 소관부처가 답변하는 온라인 기반의 범정부 규제혁신 대표창구로서, 2025년 한 해 동안 총 4,278건의 규제 건의를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0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강형석 사무관 Tel. 044-200-2452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행정규제기본법」제31조 및「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5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규제합리화제도 관리, 규제신문고 운영 등 주요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조율하고, 각 부처의 규제합리화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규제조정실은 2025년 12월 말 현재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의 3국 14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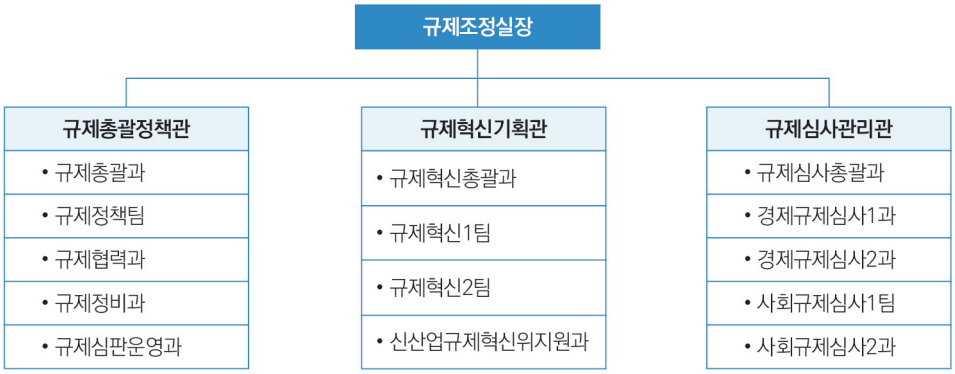

1 |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제조정실 업무와 규제합리화 정책의 기획·추진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 시작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부처별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관리한다. 행정규제기본법령 관리와 함께 규제합리화 홍보 및 교육, 규제신문고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조정·협의, 규제개혁 국제협력, 규제합리화 평가 및 포상 등을 주관하고 있다.

2 | 규제혁신기획관

규제혁신기획관은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합리화 로드맵 수립,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및 관련 입법 지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등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정책을 총괄하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3 | 규제심사관리관

규제심사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신설·강화 규제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중소기업·경쟁제한·기술규제 영향평가, 규제비용감축제, 사후규제영향분석,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04 새 정부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신우철 사무관 Tel. 044-200-2397

1 | 추진 배경

새 정부는 핵심 규제가 산업 경쟁력과 민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개혁이 개별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 규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개선 추진방식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규제, 장기간 미해결된 규제, 법·제도 간 정합성 문제가 얽힌 규제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규제개혁의 범위를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생명·안전 등 규제 강화까지 포함하는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확대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주재 회의체를 정비하여 대통령 주도의 최고 수준 논의기구로 통합해 핵심 규제를 직접 점검·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앙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함께, 각 부처가 스스로 소관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차관급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1 개편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합리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개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합리화 정책의 기본방향, 규제합리화 추진계획, 규제합리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규정되었다.

2 개편 주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소속, 기능, 구성, 위원장 체계 및 운영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첫째, 기존에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으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둘째,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4명의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였다.

셋째, 위원 수를 확대하였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였으나,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변경하였다.

넷째, 기존에는 민간위원 중 민간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간사를 맡았으나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간사를 맡아 정부 내 이견 조정력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위원회의 기능을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중심에서 규제합리화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으로 변경하였다.

3 개편 추진 상황

규제합리화위원회로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25.8.1.)하였으며, 정무위원회('25.11.27.)와 법사위('25.12.3.) 가결을 거쳐 해를 넘긴 '26.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 | 정부 내 차관급 규제합리화 TF 구축

1 도입 배경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25.10.16.)에서 대통령은 부처 차원의 규제개선을 강조하며, 주요 개혁의제와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규제합리화 과제를 각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25.10.17.)를 통해 각 부처에 차관 중심의 규제합리화 TF 구성과 과제 발굴 체계 마련을 요청하였다.

2 구성 및 운영

각 부처는 차관을 TF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 TF를 구성하고, 국장급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조직을 운영하였다.

부처 내 규제합리화 TF는 정기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 개선 필요성이 크나 부처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운 규제 등을 중심으로 3~4개의 핵심 과제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발굴된 과제는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TF 구성·운영 현황, 회의 개최 여부, 과제 발굴·제출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제출된 과제 중 주요 과제는 관계부처 안건 점검회의 및 차관급 안건 조정 회의를 거쳐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추진할 계획이다.

05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합리화 추진기구

1 | 부처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천해선 사무관 Tel. 044-200-2414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합리화 기본 방향 및 정책 수립,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관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등 자유롭게 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 부처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형석 사무관 Tel. 044-200-2452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관의 소관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고,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과장급이며, 주요 업무는 규제합리화과제 발굴·개선 및 이행·점검,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평가 실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으로 소관부처의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별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라는 명칭 이외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 관련 정책과 성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규제합리화 정책·홍보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운영 중이다.

3 | 부처별 규제합리화 TF

강형석 사무관 Tel. 044-200-2452

각 부처는 자율적인 규제합리화 기반을 조성하여 규제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처별 규제합리화 TF를 구성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차원의 규제개선을 더욱 강조하라는 대통령 지시(10.16.)의 일환으로, 부처별 차관 중심의 TF가 구성되어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40개 부·처·청에서는 규제합리화 TF를 설치하여 부처별 규제합리화과제 및 타부처와 협업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핵심규제의 발굴·개선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처 내 규제법무담당관실과 실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지원하는 등 부처 내 규제합리화 업무의 조율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처별 규제합리화 TF

연번	부처명	TF 팀장	구성원
1	기재부	1차관	규제 소관 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2	과기부	1차관	정책기획관, 각 실 총괄국장 등
3	교육부	차관	실·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4	외교부	조정기획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여권과장 등
5	통일부	차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안건별 소관 총괄과장 등
6	법무부	차관	각 실·국·본부장
7	국방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등
8	행안부	차관	정책기획관 및 실·국 주무국장
9	문체부	1차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예술 등 분야별 담당과장
10	농식품부	차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연번	부처명	TF 팀장	구성원
11	산업부	차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12	복지부	1차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13	기후부	1차관	본부 4실장, 정책기획관, 안건별 소관 국장 등
14	노동부	차관	각 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15	성평등부	차관	실·국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
16	국토부	1차관	실·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17	해수부	차관	정책기획관, 해운물류국장, 항만국장, 해사안전국장 등
18	중기부	1차관	실·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공기관, 협·단체 등
19	보훈부	차관	정책기획관, 각 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20	방미통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등
21	공정위	부위원장	혁신행정규제법무담당관, 시장구조개선과장 등
22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
23	권익위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 청렴정책총괄과장 등
24	개보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장 등
25	인사처	차장	기획조정관, 인사제도 담당 국장 등
26	법제처	차장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과장 등
27	식약처	차장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28	지재처	차장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29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소비세과장 등
30	관세청	차장	행정관리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각 과장 등
31	조달청	차장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32	경찰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무 부서장 등
33	농진청	차장	실·국장, 각 소속기관장 등
34	산림청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각 과장 등
35	기상청	차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예보정책과장 등
36	병무청	차장	기획조정관,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실 등
37	해경청	차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경비작전과장 등
38	질병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염병정책국장, 건강위해대응관 등
39	원안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 등
40	새만금청	차장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등

06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합리화 추진기구

최원진 서기관 Tel. 044-200-2456

1 |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민생경제지원과를 두었다.

* 민생경제지원과 규제관련 주요 업무 :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및 소극행태 개선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2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심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는 지자체 내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원, 규제 애로사항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07 민·관·연 규제협력 창구

고명수 사무관 Tel. 044-200-2634

1 | 규제신문고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에 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신문고('14.3월 신설)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직접 건의한 민생·경제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답변하는 온라인 기반의 범정부 규제혁신 대표창구이다.

규제신문고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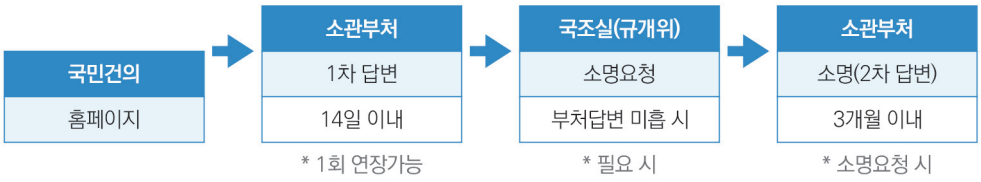

2 |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

'경제단체 규제신문고'는 경제·산업현장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한 상시 핫라인으로, '25.7~11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가동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각 회원사가 제출한 규제애로를 취합하여 경제단체 전용창구를 통해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건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소관부처와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건의 기업에 회신한다.

3 | 규제연구센터

천해선 사무관 Tel. 044-200-2414

2014년 6월, 규제비용감축제(구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KDI와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규제연구센터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 분석 검증을 수행해 왔다. 2023년에는 각 연구센터에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팀(KDI 재검토정책팀, 한국행정연구원 사후영향평가팀)을 구성하였고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을 시행하였다. 향후 전담팀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규제연구센터 현황

	KDI 규제연구센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기 능	•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 사후규제영향분석	•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 사후규제영향분석
인 력	• 총 25명(실장 : 김민호)	• 총 21명(실장 : 원소연)
조 직	• 3팀(제도연구, 분석평가, 재검토정책)	• 3팀(제도연구, 비용분석, 사후평가)

4 |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고유미 사무관 Tel. 044-200-2406

국무조정실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령 제·개정 시 실시하는 규제심사를 지원하고, 규제합리화 과제를 관리하는 등 범부처 규제 행정을 지원하는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정보시스템은 업무지원시스템인 '규제정보화시스템'과 대국민 창구인 '규제정보포털·규제신문고·규제샌드박스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등록, 과제관리 등의 규제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 비용분석검증, 경쟁·중기·기술 영향평가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합리화 정책에 대한 제반 정보를 대국민·기업에게 공개하는 관문으로써 규제정보, 규제합리화 과제, 규제심사 일정·결과, 규제샌드박스 현황 등을 제공·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규제신문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 규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규제정보의 디지털전환 추진을 목표로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ISP'을 수립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 걸쳐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024년(1단계)에서는 규제정보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위한 규제데이터 재구축, 규제 내비게이터 구현 및 지능형 서비스 인프라 구성 등 스마트규제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어 2025년(2단계)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 재구축을 추진하여 업무 편의성을 확보하고 규제영향분석 고도화 및 유사사례 제공 등을 통하여 지능형 규제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

02 기존규제 개선성과

1. 2025 규제합리화 추진성과 (총평) ····· 44
2. 핵심규제 합리화 ····· 46
3. 국민불편 민생규제 합리화 ····· 68
4. 신산업 규제혁신 ····· 84
5. 규제신문고 ····· 106
6. 규제혁신 소통 ····· 116
7. 국제협력 ····· 129

2025 규제개혁백서

PART. 02

기존규제 개선성과

강형석 사무관 Tel. 044-200-2452

01 2025 규제합리화 추진성과 (총평)

정부는 2025년에 '규제에서 지원·육성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생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합리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부처별 규제합리화 TF' 등 범정부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통해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복잡하게 얽힌 핵심·갈등과제를 신속히 개선·점검하였고, 특히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 바탕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 10.16.)를 두 차례 운영하여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규제를 신속·과감하게 걷어내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AI 학습데이터 활용 및 자율주행모빌리티 시범운행 확대, 바이오 허가-심사체계 혁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영화 제작지원·지상파 방송광고 규제합리화 등 ABCDEF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업활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AI, Bio, Contents, Defence, Energy, Factory로 핵심 신산업 분야를 의미

또한 부처별로 규제합리화 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외부적으로는 대국민·경제단체 건의를 중심으로 현장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해소'를 큰 축으로 삼아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관광 분야 규제를 개선하거나, 소비기한이 임박한 미판매 식품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규제 합리화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국조실 중심의

전 주기 통합관리 및 실증 이후 법령정비 의무 강화 등 성과 중심의 규제샌드박스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25년에는 기업의 신청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특례 적극 부여로 e-플랫폼을 활용한 반려동물병원 전용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등 과제를 승인하였고, 누적 2,526건의 사업을 승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AI 기업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는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신산업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에 시작점이 되었다.

이외에도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중요규제 대상을 99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중요규제 건수 대비 개선·철회·부대권고 건수(권고율)를 전년 대비 상향(82.6%→86.9%)하였다. 또한 규제비용감축제 비용감축률 목표치인 200%를 상회하는 207.2%를 달성하여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범정부적인 규제합리화 추진 노력을 단순히 총량적인 규제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수요자와의 소통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갔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특정 산업 분야의 종사자·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를 개진·토론함으로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총리 주재의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51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민간 주도의 규제합리화에도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다.

02 핵심규제 합리화

신우철 사무관 Tel. 044-200-2397

1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1 추진 배경

AI·바이오·로봇·자율주행·재생에너지·콘텐츠 등 신산업이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존 규제체계는 개인정보, 저작권, 안전, 환경, 인허가, 업역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제약해 왔다.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법·제도 간 정합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파급력 있는 규제의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이전 규제합리화 추진동력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장기간 누적된 '거미줄 규제'를 선별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하는 대통령 주도의 최고위급 논의체를 통해 파급력이 큰 핵심 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규제기관에서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개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공론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합리화 회의체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며,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논의 구조로 운영되었다.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관계부처가 개선 방향과 이행계획을 제시한 후 자유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과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 고시·지침 정비, 시범사업 및 특례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후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였다.

3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정부는 '25년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와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①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 부담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구축하여 AI 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많이 개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통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공공기관 데이터의 신속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 분야 규제합리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특례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로봇 분야에서는 주차로봇, 건설로봇 등 기존 사람 중심 안전기준을 재정비하여 생활·산업현장에서의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③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행정제재와 병과되는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9.15) 주요 내용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1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 저작권이 모호한 데이터 활용
  - ➡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25년 11월
-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 활용
  - ➡ 합리적 거래·보상체계 마련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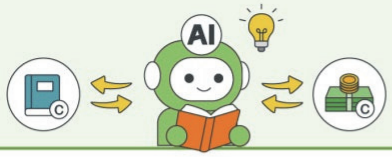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개방, 더 쉽게, 더 많이!

- 공공데이터 제공 여건 조성
  - ➡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25년
- 가명정보 활용 촉진
  - ➡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마련 25년 9월
-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속 개방
  - ➡ 법원·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강화

2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 원본 영상 활용
  -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례 도입 ~25년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지역, 더 넓게!

- 실증구역 확대
  - ➡ '노선·지구 → 도시 단위'로 확장, 지자체도 직권으로 신속 지정 ~25년



생활·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 가속화!

- 사람 중심의 기존 규제 일괄 정비
  - ➡ 로봇 활용 기준 마련
  - (예 : 주차로봇, 건설로봇 등)



국무조정실

4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정부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25년 10월 16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규제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기조 아래, K-바이오, 탈탄소·순환경제, K-컬처 분야의 핵심규제 합리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①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바이오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동시·병렬적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허가(목표 240일)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 임상연구 추진 및 해외 임상자료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한 치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사망자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하고, 심평원·건보공단 의료데이터를 의료 AI 연구·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은 법제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관세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③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위기의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정책펀드 확대 및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며 광고총량제를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 보호를 위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24시간 이내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규제에서 성장으로

K-바이오 · K-에너지 · K-컬처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내용

1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1 "바이오 허가·심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합니다"

- 바이오 허가·심사를 동시·병렬적으로 전환
- 개발부터 허가까지 全 주기 규제 서비스 지원



2 "첨단재생의료 치료, 해외에 나가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 기획 추진 26년
-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하면 바로 치료심의 방안 마련 25년
- 난치질환 가이드라인 발표 25년
- 중위험 연구부담 완화 (심의 가이드라인 개선 등) 26년 3월



3 "사망자 및 건보공단·심평원 의료데이터를 쉽게 활용합니다"

- 사망자 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명확화 25년
- 건보공단·심평원의 의료데이터를 의료 AI 연구·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6년



2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1 "농사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얻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로 1석 2조"

- 농지법 개정(기간 연장 등)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 허용) 26년 상반기
-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 25년



2 "리튬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절차 간소화 26년 상반기
  수입 보증금 면제 26년 1분기
  수입 관세 완화 26년 1분기
-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촉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 신설) 26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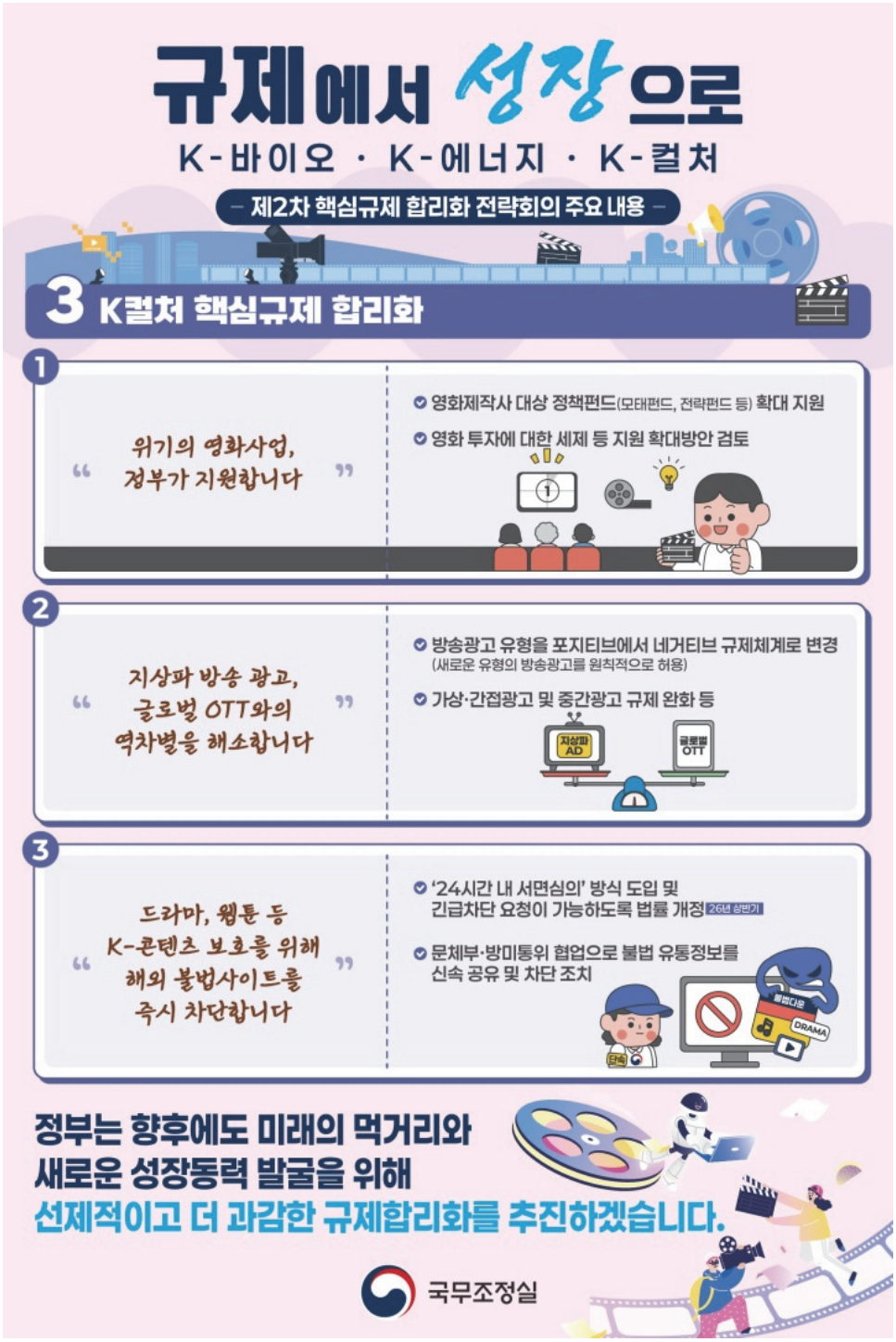
규제에서 성장으로
K-바이오 · K-에너지 · K-컬처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내용
3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1
위기의 영화사업, 정부가 지원합니다
영화제작사 대상 정책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등) 확대 지원
영화 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확대방안 검토
2
지상파 방송 광고,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을 해소합니다
방송광고 유형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변경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
지상파 AD
글로벌 OTT
3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 보호를 위해 해외 불법사이트를 즉시 차단합니다
'24시간 내 서면심의' 방식 도입 및 긴급차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26년 상반기
문체부·방미통위 협업으로 불법 유통정보를 신속 공유 및 차단 조치
불법다운
DRAMA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2 | 총리 주재 미니 TF (관광규제 합리화)

최원석 서기관 Tel. 044-200-2366

1 추진배경

저성장 우려 속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관광수입 증가가 내수 경기 회복 및 체감경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하였다.

2 개요

8월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 등 민간까지 참석하였다. 민·관이 함께 모여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관광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주요성과

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25년 9월 29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중국에서는 '24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1~7.) 이전부터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②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대상 우대심사대 혜택 확대 및 제도화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도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24.10.~'25.12.)하고 있었으나, 이를 위한 대상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26년부터 정식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마이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③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기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도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에 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3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

고명수 사무관 Tel. 044-200-2634

정부는 민생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25.12.1.)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까지 원활히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을 규제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여 민생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①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

현 황 일반 상표등록심사(1년 이상 소요)와 달리 신속한 상표등록을 위한 **상표 우선심사(2개월 소요) 제도를 예외적*으로 운영** 중**
* ▲상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예정 ▲상표 관련 분쟁 중인 경우
** 창업기업 현황('24년) : 약 118만 개

개 선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심사기간 1년 이상 → 2개월)

기대효과 심사기간 대폭 단축으로 **창업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 지재처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25.10월 완료)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 폐지

현 황 **한옥, 고택** 등 준공 이후 **30년이 초과된 건축물***은 오래된 건축물의 안전성 우려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칙적 불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현황 : ('24) 4,946 → ('25) 6,350개소

개 선 30년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하여 **안전이 확인된 모든 건축물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기대효과 한옥·고택 등 활용 **외국인 도시민박업 활성화**

☞ 문체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 개정 ('25.10월 완료)

③ 군사 접경지에 공장 신축 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

현 황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분계선 25km 이내)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본인이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군사시설**(옥상진지, 군출입 계단 등) **설치의무 부담****
* 군사시설이 설치로 본인이 허가받은 건폐율·용적률 등 감소
** 최근 4년간 경기도 접경지 군사시설 설치 의무부과 2,631건

개 선 군사시설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추가되는 군사시설은 허가받은 면적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 (건폐율·용적률 등 유지)

기대효과 접경지역 내 **중소기업 공장 신축 부담 완화**

☞ 국토부 / 「건축심의 간소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26.6월)

2 사업확장 지원

④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 허용

현 황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중소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설치**하기 위한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 불가**

개 선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시공·설치를 위한 전기·정보통신 공사업은 입주 가능토록 허용**

기대효과 ▲임대료 절감, 생산원가 등 **부담 완화** ▲공사업 허용을 통한 **사업 확장**

☞ 산업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26.3월)

⑤ 농산가공품 소매판로를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 확대

현 황 농가에서 생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은 **농가의 제조영업장 또는 인터넷** 판매만 가능**(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 판매가 제한되어 소비자 접근성 저하)

* ▲장류(된장, 고추장 등) ▲절임류(장아찌 등) ▲두부류 등 농산물을 가공·제조한 식품(280품목)

** ▲농산가공품 시장규모('24년) : 4.8조 원 ▲관련 농가 수('22년) : 7.2만

개 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한 **농산가공품 소매 판로**를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시범사업* 통해 확대**

* 지역 시범사업 6개소 → 전국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확대

기대효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가공품 물가 안정

☞ 식약처 / 전국적인 시범사업 확대 ('26.10월)

⑥ 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

현 황 **택시운전자**가 광역단위 사업구역을 이동하는 경우, **해당 지역별로 추가 택시자격증 취득 필요***

*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 현황('24년) : 5.2만 명

개 선 사업구역 이동과 관계없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체계로 일원화

기대효과 지역별 택시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불편 해소

☞ 국토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6.12월)

3 운영부담 경감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확대

현 황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이 '**전통시장**' 점포로 한정되어 있어,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기부에서 연간 약 20억 원 지원(상인 부담 평균보험료 年96,400원)

** 대상 점포 수('25년) : ▲상점가 약 5.6만 ▲골목형상점가 약 12.6만 개

개 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확대**

기대효과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중기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25.12월 완료)

⑧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의 운행 종료지 인근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현 황 **여객운송사업용차량**(노선·시외·전세버스, 택시 등)*은 운행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만 **밤샘주차**** 가능(등록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 대상)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현황(버스·법인택시, '24년) : 약 17.3만 개

** 밤샘 주차: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행위

*** 운행정지(1차: 3일, 2차: 5일) 또는 과징금(1차: $10^{노선}$·20만 $원^{전세}$, 2차: $15^{노선}$·30만 $원^{전세}$)

개 선 운행종료 후 인근 허가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 「주차장법」상 건물 내 부설주차장, 도로 외에 설치된 주차장

기대효과 ▲ 여객운송사업자 운영부담 해소 ▲ 차량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국토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26.3월)

⑨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완화

현 황 중소기업이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준수 필요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24년) : 총 885개(조합원 기업 65,230개)

** ▲(전국조합) 8천만 원 ▲(지방조합·연합회) 4천만 원 ▲(사업조합) 2천만 원
(※ 일반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설립 시 별도의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없음)

개 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완화**
(▲ 전국조합 8 → 4천만 원 ▲ 지방조합·연합회 4 → 2천만 원)

기대효과 ▲ 신생 협동조합 **설립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

☞ 중기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6.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9건)



4 | 경쟁제한적 규제합리화

정재영 사무관 Tel. 044-200-2407

1 개요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영업활동 제한, 서비스 가격 결정 개입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유도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에 대한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언론·국회·사건 처리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를 발굴·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여부 및 개선범위 등을 확정, 그 결과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계기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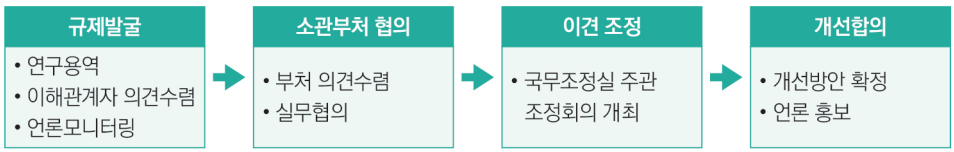

3 2025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주요내용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총 22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미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업·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AI, 친환경 등 미래전략산업 ▲시장진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AI,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자율주행차나 로봇 학습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내 인물 등을 모자이크(가명처리)해야 했으나, 이는 시선 처리나 미세한 표정 변화 인식을 방해해 기술적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적법하게 수집된 데이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명처리 없는 원본데이터 학습 활용이 가능하도록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소유 캠핑카를 타인에게 유상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와 차주의 유지비 부담 완화(수익 창출)를 도모하였다.

두 번째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먼저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이 약화되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변경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정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소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전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한해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한정된 포장 공간에 방대한 정보(원재료, 주의사항 등)를 기재함에 따라 가독성이 저하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안전 정보 외 항목은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품 설명서 내 원료명 표시 방식 등을 간소화하였다. 더불어 제과점업의 주요 3개 원료 원산지 표시기준 관련, 품목다양성 및 빈번한 신제품 출시 등으로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것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표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체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연번	과제 및 개선내용
1	▣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개인정보위) 현 황 **AI기술 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AI 솔루션 등이 **가명처리**(모자이크 등) **없이 원본데이터 그대로를 학습**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적·기술적 한계** 개 선 **AI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추진 *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거쳐 허용
2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스마트기술 활용 인센티브 부여**(기후부) 현 황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 **ICT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도** 운영비 절감이 가능함에도 **물리적 설비개선**에 대한 **보상체계만 규정**되어, **스마트기술 도입 및 활성화가 저조** 개 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비 절감 성과를 반영**하도록 **고시 개정**
3	▣ **캠핑용 차량의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국토부) 현 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는 **타인대여가 제한됨**에 따라 **유휴 캠핑카 난립** 등 **비효율** 발생 개 선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4	▣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복지부) 현 황 노인복지주택 내 의료·간호사실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업 활성화 및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 개 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 관리 등)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
5	▣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명확화**(기후부) 현 황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시 수집·운반 차량이 일정 수준의 적재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불명확 개 선 별도 적재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제약 완화

(나) 시장진입 활성화 및 경쟁 촉진

연번	과제 및 개선내용
1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발급 확대**(국세청) **현 황**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제도가 운영되나, **신규면허** 및 **전체면허 발급 감소**로 **시장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 **개 선**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 **산식 변경***을 통해 **신규 면허 발급 확대** *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의 **평균 값** → 허용범위 중 **큰 값**
2	▣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국세청) **현 황** 주류제조사는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직거래 가능 물량**은 **전체 주정 판매량의 약 2%(3만 드럼)에 불과** **개 선** 주정 직거래 가능 물량을 **연간 3만 드럼**(약 2%)에서 **4~6만 드럼**(약 3~4%)으로 **확대**
3	▣ **신기술사용협약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명확화**(행안부) **현 황**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 **신기술사용협약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가능 여부**가 관련 법령상 **불명확** **개 선**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자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각 지방정부 등에 교육·공문을 통해 안내**
4	▣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셀프 충전 허용**(산업부) **현 황**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위생용품을 리필**해 가는 판매점(제로웨이스트샵)의 경우에도 **기존 제조업 규제 적용** **개 선** 리필매장을 위한 **별도의 영업을 신설**하는 등 규제개선
5	▣ **반려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농림축산검역본부) **현 황** 약사·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어야 함에 따라 구인난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지장 및 화장품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 제한 **개 선**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로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6	▣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확대**(식약처) **현 황** 유통전문판매업자는 건기식 원료·성분 등에 관한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하지 못해 독자 개발한 원료의 권리 확보 불가 **개 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원료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 허용
7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중기부) **현 황** 사업 신청 시 모든 조합원사의 누리집 회원가입 및 서류 구비 요구로, 다수의 조합원사를 보유한 협동조합의 사업 신청 제약 **개 선** 사업 신청 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회원가입 및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사업참여 확대 유도

(다)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

<table>
<tr><th>연번</th><th>과제 및 개선내용</th></tr>
<tr><td>1</td><td>▣ 식품의 QR코드 등 표시 허용범위 확대(식약처)

현 황 식품은 법령상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 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하여 표시를 생략하고 QR코드로 제공

개 선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쇄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고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QR코드 등으로 제공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개정]
<table><tr><th>현행</th><th>개선</th></tr><tr><td>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td><td>영양성분(열량,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제외)
영업소 소재지, 원재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제외), 품목번호, 주의사항(안전사항 제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td></tr></table></td></tr>
<tr><td>2</td><td>▣ 건강기능식품의 QR코드 등 표시 허용범위 확대(식약처)

현 황 건강기능식품은 법령상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영양성분 등 광범위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최근 포장 간소화 추세하에서 가독성 저하
- 특히 증정용·비매품 등 소포장 상품은 별도의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해지는 등 부담 작용

개 선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쇄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고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QR코드 등으로 제공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개정]
<table><tr><th>현행</th><th>개선</th></tr><tr><td>의약품 아님 문구,
용기·포장 재질,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td><td>원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제외), 영업소 소재지, 의약품 아님 문구, 영양성분(열량, 당, 나트륨 제외), 용기·포장 재질</td></tr></table></td></tr>
<tr><td>3</td><td>▣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수리 실적 관련 보안 규정 신설(식약처)

현 황 연간 생산 및 수출·수입, 수리실적을 경쟁사업자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민간 사단법인)에 제출토록 하여 기업의 중요정보 유출 우려 및 보안 문제 발생 소지

개 선 관계 법령에 비밀유지 의무 등 보안 관련 규정 신설</td></tr>
<tr><td>4</td><td>▣ 제과점업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농식품부)

현 황 제과점은 국내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기준에 따라 주요 3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품목 다양성과 빈번한 신제품 출시 등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개 선 제과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진행 중)</td></tr>
</table>

연번	과제 및 개선내용
5	▣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문체부) 현 황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물 과몰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시간선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전체 1%에 불과** * 만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개 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추진 (전체이용가 게임물 한정)
6	▣ **은행 유가(연중)증권 등 투자규제 완화**(금융위) 현 황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상환기간 3년 초과 채무증권 등에 대한 은행의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험도가 낮은 채무증권**** 등은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 *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권 개 선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지방채, 특수채***, **주택저당증권 등을**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 추진** *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7	▣ **영화관 상영 광고영화 심의 개선**(문체부) 현 황 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 심의**를 받은 **방송광고**의 경우에도, **광고영화로** 상영 시에는 **영등위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비용 부담** * 광고영화 심의건 중 이미 방송광고 심의를 받은 비율은 **42.2%** ('23년 기준, 출처: 대한상의, 「2025년 생활속 규제합리화 건의서」, 2025.8월) 개 선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통과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영등위 상영등급 분류대상**의 **예외**로 인정
8	▣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면제 확대**(조달청) 현 황 인쇄·광고물은 품목 간 제조방식, 기술력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만 인증보유 의무 면제 개 선 '조합추천 수의계약대상 요건' 삭제(인증면제 대상품목 : 23개 → 36개)
9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인터넷접수 허용**(소방청) 현 황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달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어 신고 대상자의 불편 초래 개 선 인터넷 소방민원센터(www.safeland.go.kr)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10	▣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 시 신체검사 항목 명확화**(경찰청) 현 황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 필요한 신체 검사서상 구체적 검사항목 등 별도의 기준이나 서식이 부재 개 선 구체적 검사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서 서식 제정

5 | 인증규제 합리화

고유미 사무관 Tel. 044-200-2406

1 추진 배경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1주기('19.~) 186개 중 통폐합 17개 → 2주기('22.~) 222개 중 통폐합 11개 → 3주기('25.~'27.) 246개

2 추진성과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및 인증 신설 억제방안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25.2.28.)에 보고하였으며,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시행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정책목적 달성, 수요 부족) 폐지 검토
②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용 목적의 제도는 폐지 검토
③ 제품, 서비스 등의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KS인증으로 통합 검토

3주기('25~'27년) 검토계획을 수립, 총 246개 검토대상 목록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25.3.28.)에 보고하였으며 2025년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제594회 규제개혁위원회('25.11.28.) 심의·의결 및 '국가정책조정회의('26.1.14.)'에서 발표하였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 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인증)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하였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 실효성검토 결과 주요사례

■ 폐지

• 운영되지 않거나 실적이 미흡한 제도, 유사제도로 대체가 가능한 제도, 적합성평가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는 과감히 폐지

1. 실효성 미흡에 따른 단순 폐지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과기부)

현 황 3D프린팅 소프트웨어의 품질 검증을 위해 도입('16년~)되었으나, 시장 미성숙 등 사유로 인증기준 및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미운영 상태

개 선 미운영 제도의 폐지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 방지**
(필요시 동일 목적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내 세부품목으로 도입 검토)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국토부)

현 황 인증 대상이 도시/서비스/기반시설로 구분·운영되는 제도로서, '도시' 인증은 지자체(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및 '기반시설'은 실적이 미흡함

개 선 '도시'인증은 국내 유사 제도와 같이 지정, 선정 등 적합성평가 외 정책수단으로 전환하고, 실적이 저조한 '서비스' 및 '기반시설' 대상 인증 폐지 검토 필요

건강친화기업 인증 (복지부)

현 황 인증 수요 및 실적(누적 67건)이 저조하며, 해외 법정인증 사례가 없으며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민간 인증과 유사하여 향후 기업 부담 가중 우려

개 선 **ISO 등 민간 인증** 또는 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 정책**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 및 **중복인증 해소**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기대

2. 폐지 후 타제도로 통합

순환자원 품질 인증 (기후부)

현 황 같은 법을 근거로 동 제도와 목적, 대상, 기준, 정책 효과가 유사한 제도가 존재, 인증 실적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개 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두 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등 제도 정비를 권고함으로써 공급자 중심 제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변화 도모

3. 타 정책수단으로 전환 검토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노동부)

현 황 인증의 요건이 직원 수, 최저임금 지급 여부, 직원 보험/연금 가입 여부 등으로서 전문적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제도

개 선 인증제도로서는 폐지하고 **지정/허가제 등으로 전환** 후 혜택연계 등 검토 필요

■ 통합

• 정책 목적, 대상, 기준 등이 유사한 제도 통폐합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통합대상: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폐지)) (산림청)

현 황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는 품질 성능과 방사성 검사로 구분되며, 품질의 경우 동 제도와 중복되나 별도 운영 중

개 선 동법 내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는 폐지하고 동 제도로 통합하여 **창구 일원화**를 통해 기업 **시간, 비용 부담 경감** 기대

■ 개선

• 인증방법 개선 및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1. 기업 부담 경감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공정위)

현 황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과 기준이 유사하며, 해당제도와 비교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유효기간은 짧아 기업 애로로 작용

개 선 ISO 37301과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한 인정·면제, 인증 소요기간 등 절차 간소화·단축, 유효기간 확대 등 **기업 부담 경감** 방안 검토 필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중기부)

현 황 같은 법을 근거로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두 가지 인증으로 구분·운영중이나, 두 제도 간 평가기준이 중복되며, 일부 기업은 2개 인증을 모두 취득

개 선 두 제도 별도 운영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복 평가항목**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피규제자 **부담 경감** 조치 필요

2. 제도 운영 합리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후부)

현 황 기본모델과 에너지효율이 동일한 추가모델 등록 시 기본모델 등록이 선행되어야 추가모델 등록 가능(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인증의 경우 동시 등록 가능)

개 선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 등 지원 기대

우수물류기업 인증 (국토부)

현 황 인증 실적에 따르면 약 100여 개 소수 기업만 참여, 혜택을 받는 구조로 운영

개 선 소규모 혁신 기업 등 **물류기업 전반**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인증 정보 접근성 강화

산업융합 신제품 인증 (산업부)

현 황 제도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나, 인증받은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개 선 피규제자 및 소비자를 위한 **인증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필요

03 국민불편 민생규제 합리화

정재영 사무관 Tel. 044-200-2407

1 | 국민불편 민생규제 합리화(1차)

1 추진배경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민생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은 일상생활의 해묵은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 절차 등을 개선하여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추진경과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25.1.22.)'에서 발표하였다.

3 분야별 주요내용

첫 번째로,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GB)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GB) 내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50m^2 이하)을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였다. 더불어 아파트, 상가 등의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을 토요일 16시까지 자율연장하고, 이후 운영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주말에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기혼자가 임신을 위해 본인의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가능토록 하여, 동결적기를 놓치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을 현행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여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도 관세납부가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과 관련, 현재 보훈·위탁병원에서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치료비를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장애인 육아휴직자가 고용인원에서 제외되는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육아휴직 시에도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더불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에는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유도를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관련, 현행 내장형·외장형 반려동물 등록방식 외에도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 도입을 추진하여 등록방식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DB 구축 및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여,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가축 위주의 현행 동물사료 분류체계와 별도로 반려동물의 성장단계별 필수 영양소 등을 반영한 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펫푸드 시장의 성장을 지원한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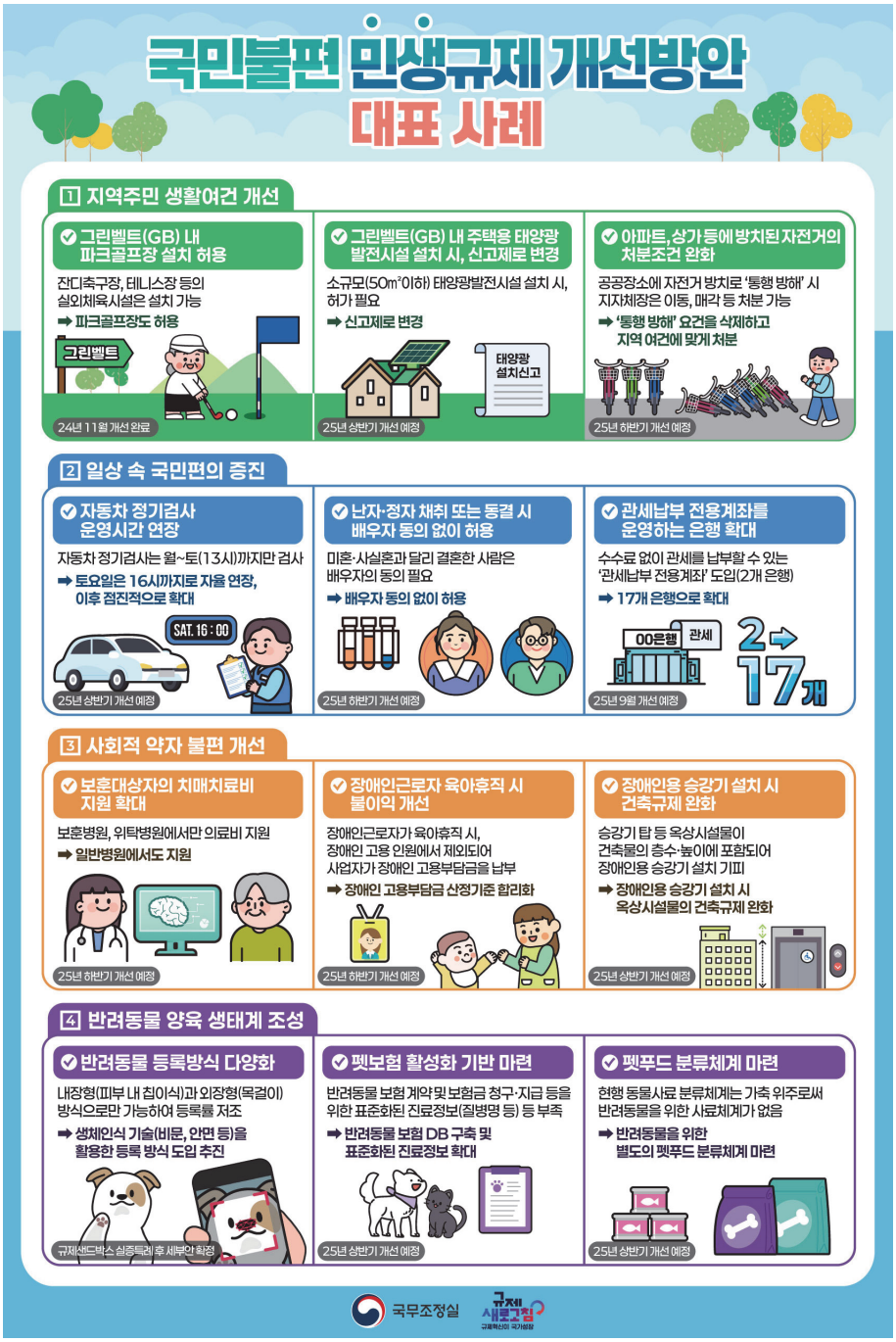

2 |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합리화

정재영 사무관 Tel. 044-200-2407

1 추진배경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이어, 민생 규제 혁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시리즈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차 대책이 일상생활 속 국민의 편의에 집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최근 내수침체 장기화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애로 해소에 방점을 두었다. 특히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낡은 관행과 중복적인 행정 부담을 제거하여 민생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추진경과

정부는 규제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업종·업태별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확정, 이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5.4.10.)'에서 발표하였다.

3 분야별 주요내용

첫 번째로, '제조·건설업' 분야 관련, 비수도권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동일권역 내에서만 허용되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권역 간(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고용허가제 평가요건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 완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학위·자격증 없이 순수 현장경력만으로도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두 번째로, '생활·전문서비스업' 분야 관련,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을 합리화하여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활용을 지원한다. 더불어 현행 덤프트럭 1종에만 허용되던 건설기계 옥외광고를 레미콘, 지게차 등 9종에도 확대 허용하여 건설기계 소유주의 광고비용 절감 및 홍보기회를 확대한다.

세 번째로, '수출입·조달기업'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조·가공·조리·급식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표시를 허용하여,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불필요한 폐기비용 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 확인 관련, HACCP 등 공인인증을 보유한 사업장은 현장심사를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심사비용을 절감하고 증명서 발급시간을 축소하였다.

네 번째로, '창업·인증기업' 관련, 청년창업기업이 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 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 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환경 개선을 통한 조기 안착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요건을 삭제하여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1~2년에서 최대 2개월 이내)하여 스타트업 등의 기술 보호 및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분야 관련, 농업법인이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매출제한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휴경기간을 활용한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그간 통제되어 왔던 서해 특정해역의 야간조업을 전면 허용(경비력 증강 등 안전대책 보완)하여, 어민들의 어획고 증대 및 조업편익을 개선하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



3 | 황당규제 대국민 공모전

신부섭 사무관 Tel. 044-200-2559

1 공모전 의의 및 경과

지난 '23년에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황당규제 공모전'이 올해 3회째를 맞아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고 정부가 직접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참여형 민간규제 개선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25년 제3차 황당규제 대국민 공모전은 국민제안 접수를 3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44일('25.3.20.~5.2.)에 걸쳐 총 1,061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이미 조치가 완료된 사항, 다른 제안과 중복된 사항, 단순 일반 민원 등 검토가 불필요한 과제를 제외한 후 903건에 대해 민간전문가 및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109건의 심층검토과제를 선별하였으며, 그 중 51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의 대안제시 사항까지 포함하여 개선을 결정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접수된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을 최대한 민간의 시각과 입장으로 개선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규제 및 행정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제안 과제들에 대한 자문과 검토 등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공모전 결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난 1~2차 공모전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만큼, 심도 있는 검토 절차와 조정 과정 등을 거쳐 총 51건의 제안에 대해 부처가 개선(일부수용, 대안제시 포함) 하기로 협의했고, 이후 행정규제 민간전문가 및 규제총괄정책관이 포함된 '우수과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15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25.8.22.)에도 직접 보고하였다.

또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총 8일간('25.7.15.~7.22.)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일반 국민 3,246명의 참여를 통해 최종 순위와 함께 우수과제 10건을 결정하였다.

투표 최종 결과, 국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미통위 소관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 과제가 1위인 대상에 선정되었고, 이어서 개인정보위 소관의 '아파트 CCTV 자료 범죄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근거 마련'이 2위인 최우수상에, 행안부 소관의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부 소관의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하여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가 각각 우수상인 3~5위에 선정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최종 투표 결과 등 공모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25.9.3.)에 보고하는 한편, 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이행 협조와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5년 연말까지도 방미통위 등과 지속적으로 정책개선 TF 등을 지속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국민제안 투표결과

순위	제안과제(부처명)	시상내역
1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방통위)** ☞ 즉시 해지 처리 원칙 도입, 필수 해지 유선상담 폐지 등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 마련	대상
2위	**아파트 CCTV 자료 범죄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근거 마련(개보위)** ☞ 공동주택의 범죄신고 목적 CCTV 자료 제공 법률 근거 마련	최우수상
3위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행안부)** ☞ 슈퍼마켓 등 소매점포가 없는 농어촌(면)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우수상
4위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성평등부)** ☞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넘긴 초등학생 모두 지원 가능토록 개선	
5위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하여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교육부)** ☞ 학교활동 중 다친 학생이 상급병실 입원 시 학생 요양급여 지급 불가, 상급병실 기준을 축소(3인실→1인실)하여 더 많은 학생이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6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국토부)** ☞ 장애인 할인 적용되는 무인 매표기로 순차적으로 교체	장려상
7위	**여성도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자격 개선(행안부)** ☞ 새마을운동중앙회 남녀 회원자격 관련 회칙 일괄 정비 추진	
8위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친환경차 소유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국토부)** ☞ 공공분양 청약 시 일반차량보다 비싼 친환경차 구매 시 자동차가액이 3,80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청약 자격에서 탈락되므로 차량가액을 합리적으로 상향	
9위	**군대 화물차 운전경력을 민간사업용 화물차운전경력으로 인정토록 개선(국토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0위	**임업후계자 '만 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산림청)** ☞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 요건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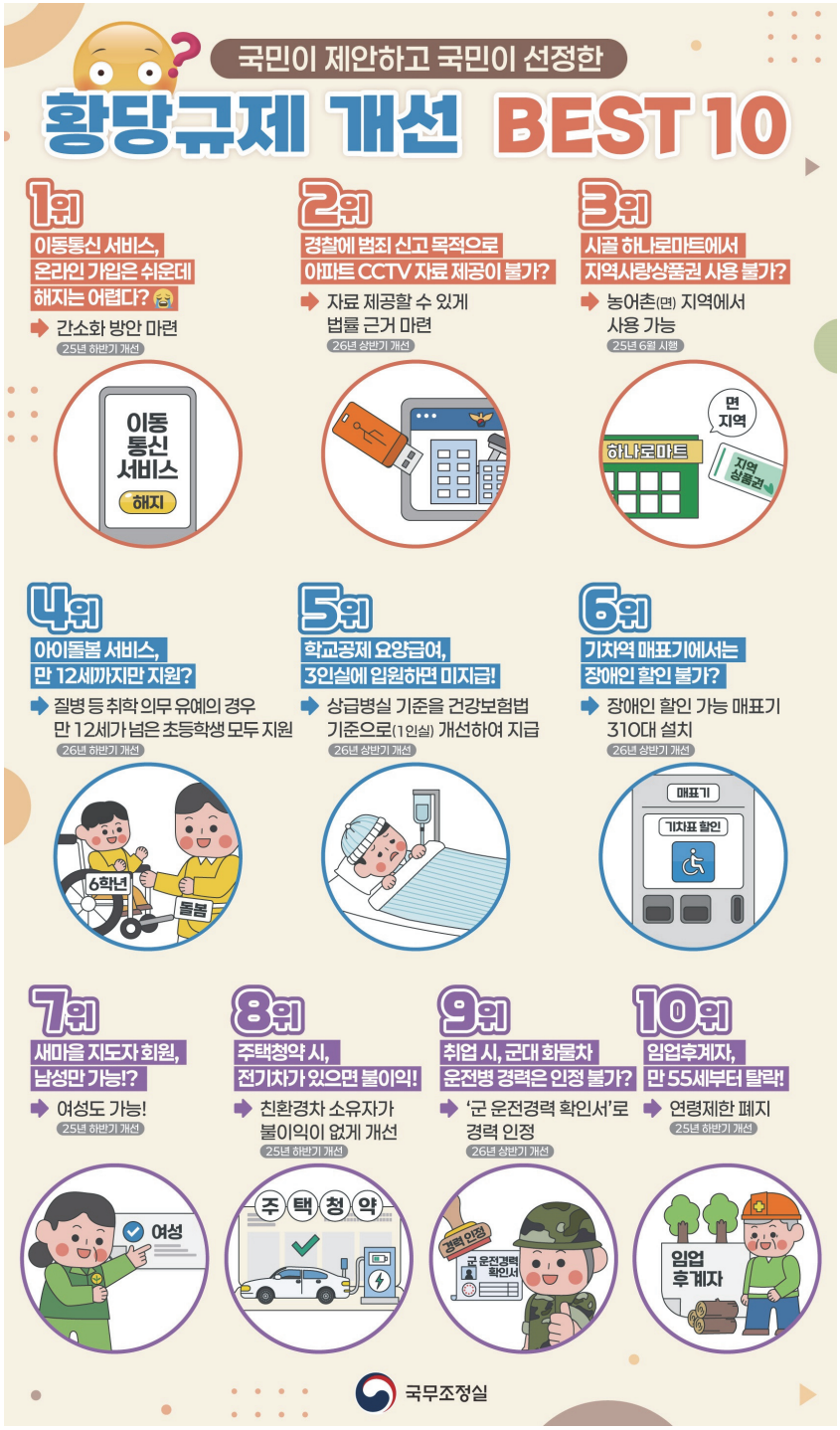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선정한
황당규제 개선 BEST 10
1위
이동통신 서비스, 온라인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다?
간소화 방안 마련
25년 하반기 개선
이동 통신 서비스
해지
2위
경찰에 범죄 신고 목적으로 아파트 CCTV 자료 제공이 불가?
자료 제공할 수 있게 법률 근거 마련
26년 상반기 개선
3위
시골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불가?
농어촌(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
25년 6월 시행
면 지역
하나로마트
지역 상품권
4위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까지만 지원?
질병 등 취학 의무 유예의 경우 만 12세가 넘은 초등학생 모두 지원
26년 하반기 개선
6학년
돌봄
5위
학교공제 요양급여, 3인실에 입원하면 미지급!
상급병실 기준을 건강보험법 기준으로(1인실) 개선하여 지급
26년 상반기 개선
6위
기차역 매표기에서는 장애인 할인 불가?
장애인 할인 가능 매표기 310대 설치
26년 상반기 개선
매표기
기차표 할인
7위
새마을 지도자 회원, 남성만 가능!?
여성도 가능!
25년 하반기 개선
여성
8위
주택청약 시, 전기차가 있으면 불이익!
친환경차 소유자가 불이익이 없게 개선
25년 하반기 개선
주택청약
9위
취업 시, 군대 화물차 운전병 경력은 인정 불가?
'군 운전경력 확인서'로 경력 인정
26년 상반기 개선
경력 인정
군 운전경력 확인서
10위
임업후계자, 만 55세부터 탈락!
연령제한 폐지
25년 하반기 개선
임업 후계자
국무조정실

4 | 국민불편 민생규제 합리화(2차)

김은영 사무관 Tel. 044-200-2458

1 개요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부처 협의 및 조정회의 등을 통해 국민의 ①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대상으로, ②신속한 개선이 가능하여, ③체감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하였으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25.12.24.)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는 ▲일상 속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영업활동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총 21건의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2 주요성과

가. 일상 속 불편해소

세부 추진과제 현황

과제명	소관 부처
①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	기후부
②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로 주거환경 자율성 제고	국토부
③ 야영장 전기사용량 제한 완화	문체부
④ 희귀·난치질환 의료기기 지정 절차 단축(14주→9주)으로 신속한 환자 치료 보장	식약처
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	기후부
⑥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을 허가·신고 없이 제거	산림청

①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

기존에는 베이커리, 음식점, 편의점 등 식품매장에서 판매 후 남은 제품이나 소비기한 임박식품을 대부분 폐기처분하여,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놓치고 식품사업자는 폐기 비용과 환경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정부-플랫폼사업자-식품사업자 간 식품 재고정보를 공유하여 미판매 식품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식품사업자는 폐기량 감소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로 주거환경 자율성 제고

현행 제도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민 이용률이 낮고,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공간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여, 입주민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③ 야영장 전기사용량 제한 완화

기존에는 밀폐된 이동식 야영장 천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 총 사용량을 600W로 제한하여, 야영객 증가와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화재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량을 1,100W로 상향하여, 기존에 조명·휴대폰 충전기 사용 수준에서 헤어드라이어, 전기온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④ 희귀·난치질환 의료기기 지정 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환자 치료 보장

기존에는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에 평균 14주가 소요되어, 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유사 절차를 통합하여 지정 기간을 약 9주로 단축함으로써,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신속히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

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는 RPM(엔진회전 수)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검사 실패율이 높고, 재검사 과정에서 차량 엔진 손상 우려가 있었다.

이에 속도 제어 방식으로 검사 방법을 변경하여 검사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재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과 차량 손상을 줄이도록 개선하였다.

⑥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을 허가·신고 없이 제거

기존에는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도로에 연접하여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나무는 산림소유자 동의만으로 허가·신고 없이 신속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였다.

나.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및 생명·안전 강화

세부 추진과제 현황

과제명	소관 부처
⑦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무료로 디지털 취약계층 부담 완화	국토부
⑧ 병력동원훈련소집(예비군 훈련, 2박 3일) 연기사유 추가 신설	병무청
⑨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절차 개선	성평등부
⑩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행안부

⑦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로 디지털 취약계층 부담 완화

현재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현장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어 디지털 취약계층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65세 이상 고령층의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고령층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본인 건축물 대장 및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우선 시행 후 타 민원서류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⑧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사유 추가 신설

기존 동원훈련 연기사유는 채용·승진 시험 등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입사 예정이나 출산·난임치료 등 개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입사 예정,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난임치료 등을 연기사유로 추가하여 청년 취업활동과 출산·육아를 지원하였다.

⑨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절차 개선

기존에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결정 후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주민센터·복지로에서 바우처 신청과 카드 발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강화하였다.

⑩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근거 마련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일반 자전거(픽시 포함)에 대해서도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개조나 안전요건 미준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였다.

다. 영업활동 부담 완화

세부 추진과제 현황

과제명	소관 부처
⑪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로 조업안전 및 선원복지 개선	해수부
⑫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 및 전문업 신설로 산림복원 전문성 강화	산림청
⑬ 외국인투자지역 내 협력업체의 입주업종(제조업→제조업·연구개발업)확대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부
⑭ 선(先) 가격입찰 대상 확대로 조달시장 참여 부담 완화(5억→10억)	조달청
⑮ 산림사업(숲 가꾸기) 인력배치 기준 폐지로 비용 절감	산림청
⑯ 정부 유사 공인제도(AEO, CP) 간 상호인정 확대	산업부,관세청

⑪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로 조업안전 및 선원복지 개선

기존 대형선망어업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 근해연승어업은 10톤 이상 90톤 미만 등 어선 톤수 상한 규제로 인해 안전설비 확충과 선원 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어획량 준수가 정착된 업종(대형선망 17척, 근해채낚기 332척, 근해연승 270척)에 한해 상한을 폐지하여 조업 안전성과 선원 복지를 동시에 개선하였다.

⑫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전문업 신설로 산림복원 전문성 강화

대형 산불 등으로 산림복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자 및 전문업 제도가 미비했다.

이에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산림복원 기술자를 추가하고, 산림기술전문업 종류에 산림복원전문업을 추가하여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⑬ 외국인투자지역 협력업체 입주업종 확대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협력업체 입주업종이 제조업으로 제한되어 연구개발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업까지 입주를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공정단축, 원가절감,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⑭ 선(先)가격입찰 대상 확대

추정가격 5억 원 초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입찰 건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작성 등 입찰 참여에 부담이 커 중소기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에 선(先)가격입찰(PQ전 가격입찰 진행) 대상을 10억 원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였다.

⑮ 숲 가꾸기 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폐지

기존에는 숲 가꾸기 사업에 일률적인 기술자 배치 비율을 요구해 인건비 부담이 컸다.

이에 기술자 비율 규정을 폐지하고 사업별 필요 인력 산출 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⑯ 정부 유사 공인제도(AEO·CP) 상호인정 확대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5년마다, 산업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는 3년마다 공인을 갱신해야 했다. 이 2개 제도는 유사한 공인제도임에도 갱신 심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컸다.

이에 공인 요건을 상호 인정하고 관세청 가점 및 산업부 심사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하였다.

라. 행정절차 합리화

세부 추진과제 현황

과제명	소관 부처
⑰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요양지원 대상자 안내 및 신청 서비스 강화	보훈부
⑱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요건 완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확대	성평등부
⑲ 소속 기관별로 다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통일	과기정통부
⑳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30일→20일) 단축	산림청
㉑ 환급신청·제증명서 정정 신청 시 종이서류 제출 의무화 폐지	관세청

⑰ 저소득 국가유공자 요양지원 안내·신청 서비스 강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40~80%)받을 수 있으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에 고령 및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파악하고 신청 안내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요양보조금 지원을 강화하였다.

⑱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요건 완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진로 설계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재직자·자영업자 등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 연소득 48백만 원, 매출액 1.5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여 이직 등을 희망하는 재직자·자영업자의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에 소득·매출 제한을 폐지하여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였다.

⑲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기준 통일

기존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인정 시 적용되는 경력인정기준은 동일한 공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기관 및 사업장에 따른 경력 인정 비율이 달랐다.

이에 근무기관 구분 없이 정보통신기술자 수행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였다.

⑳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 단축

기존 사유림 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 시 최대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어 산림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이에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산림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였다.

㉑ 환급신청·제증명서 정정 시 종이서류 제출 의무 폐지

기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민원 업무 중 일부 민원*은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종이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 불편이 컸다.

이에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세관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①환급신청서 정정신청, ②제증명(기납증 등) 정정(취하)신청, ③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정정(취하), ④농림축산물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대표 사례

1 일상 속 불편해소

✓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

식품매장에서 판매 후 남은 제품,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을 폐기 처분

➡ 재고 정보를 공유해 미판매식품 할인



25년 12월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로 주거환경 자율성 제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작은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작은도서관 설치의무 예외 인정



26년 3월

✓ 야영장 전기사용량 제한 완화로 이용객 편의성 증대

야영장 천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의
총 사용량을 최대 600W로 규정

➡ 전기사용량 상향(600W → 1,100W)



25년 12월

2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 고령층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무료화

본인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 시
온라인 서류발급은 무료이나
현장 발급 시에는 수수료 발생

➡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현장 발급 시에도 수수료 면제



26년 상반기

✓ 병력동원훈련 소집연기 사유 추가 신설

입사예정일은 불가하고,
출산·육아 관련 연기는 일부 허용

➡ 입사예정일 및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난임치료 연기 사유 신설



26년 1월

✓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현행 「자전거법」은
일반 자전거(픽시 포함)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 부재

➡ 일반 자전거에 대한 단속근거
및 처벌(벌금,과태료) 규정 마련



26년 상반기

3 영업활동 부담완화

✓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로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 개선

어종 자원의 보호를 위해 허가어업
업종별 선복량 상한을 규정

➡ 어획량 준수가 정착된 업종에 한하여
선복량 상한 폐지



25년 12월

✓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 및 전문업 신설로 산림복원 전문성 강화

대형 산불 등으로 산림복원의 수요가 증가하나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전문업 종류에
'산림복원' 분야가 포함되지 않음

➡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산림복원기술자' 추가
산림기술전문업의 종류에
'산림복원전문업' 추가



25년 12월

✓ 외국인투자지역 내 협력업체의 입주업종 확대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외국인투자지역 내 협력업체 입주 시
제조업에 한정

➡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기업의 협력업체
입주를 연구 관련 업종까지 확대



26년 1월

4 행정절차 합리화

✓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요양지원 대상자 안내·신청 강화

본인 직접 신청으로 제도를 알지 못해
요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기관 간 정보 연계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 맞춤형 안내



25년 12월

✓ 여성구직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요건 완화

구직희망여성에게 진로설계
상담프로그램 제공 중(소득·매출제한 있음)

➡ 소득·매출제한 폐지로 여성 모두 참여



26년 1월

✓ 소속기관별로 다른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통일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인정 시
소속기관 별로 공사업무 경력 차등 구분

➡ 구분 없이 100% 경력 인정



26년 1월

국무조정실

04 신산업 규제혁신

김혜원 사무관 Tel. 044-200-2437

1 | 규제샌드박스 시행 성과

1 승인현황

(가) 총괄

2025년에 842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승인과제 누계는 총 2,526건이 되었다.

(나) 유형별 승인현황

유형별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가 2,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가 119건, 적극해석 등이 68건이었다.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실증특례가 92%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유형별 승인현황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등
2,526건	195건	209건	228건	228건	279건	545건	842건	2,339건(92%)	119건(5%)	68건(3%)

(다) 분야별 승인현황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분야가 9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 ICT융합, 규제자유특구, 모빌리티,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순환경제 순이었다.

규제샌드박스 분야별 승인현황

합계	혁신금융	산업융합	ICT융합	규제자유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2,526건	998건(40%)	901건(36%)	296건(12%)	103건(4%)	61건(2%)	52건(2%)	80건(3%)	35건(1%)

(라)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식약처,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기 부처들이 전체 승인과제 규제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합계	금융위	식약처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개인정보위
2,805개	991개(35%)	422개(15%)	328개(12%)	299개(11%)	145개(5%)	124개(4%)	83개(3%)
	농림부	행안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문체부	기타
	76개(3%)	70개(2%)	53개(2%)	40개(1%)	33개(1%)	31개(1%)	110개(4%)

※ 총 39개 부처(지자체 6개 포함,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 포함), 총 2,805개 규제(중복계산)

(마)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승인기업의 54%, 중견기업이 5%, 대기업이 37%, 기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이 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소기업 등의 신산업 진입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합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공공기관, 지자체 등)
2,526건	1,353건(54%)	116건(5%)	926건(37%)	131건(5%)

2 규제개선 현황

2025년까지 승인된 과제 총 2,526건 중 24%에 해당하는 617건*의 과제가 규제 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된 후 규제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다.

* 법령개정 521건, 유권해석 등 96건

2025년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5.3월 시행)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4월 시행)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25.5월 시행)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 「건축법 시행령」 개정('25.8월 시행)을 통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25.8월 시행)을 통한 '스마트라벨(QR코드)을 이용한 식품표시 간소화' 등이 있다.

규제개선 완료과제 현황

연번	과제명(유형)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1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해석, 1건)	'19.2월
2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해석, 1건)	'19.2월
3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해석, 1건)	'19.2월
4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적극해석, 1건)	'19.2월
5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1건)	'19.3월
6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해석, 1건)	'19.4월
7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적극해석, 1건)	'19.4월
8	융복합 냉온동 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적극해석, 1건)	'19.7월
9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적극해석, 1건)	'19.7월
10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1건)	'19.7월
11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해석, 1건)	'19.9월
12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적극해석, 1건)	'19.10월
13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적극해석, 1건)	'19.10월
14~15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2건)	'19.11월
16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해석, 1건)	'19.11월
17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1건)	'20.1월
18	태양광 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적극해석, 1건)	'20.1월
19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2월
20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실증특례, 1건)	'20.2월
21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 1건)	'20.2월
22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3월
23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3월
24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1건)	'20.3월
25	온라인 주류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4월
26	소수력발전 시스템	(적극해석, 1건)	'20.4월
27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실증특례, 1건)	'20.6월
2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0.7월
29~30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실증특례, 2건)	'20.8월
31~32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0.8월

연번	과제명(유형)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33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1건)	'20.8월
34~41	통신 및 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실증특례, 8건)	'20.8월
42	K-12(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개발 및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9월
43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9월
44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 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	(적극해석, 1건)	'20.9월
45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적극해석, 1건)	'20.9월
46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환자이송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9월
47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9월
48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9월
49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임시허가, 1건)	'20.10월
50~51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0.10월
52~53	해외소액송금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0.10월
54~55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실증특례, 2건)	'20.10월
56~59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4건)	'20.12월
60~67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8건)	'20.12월
68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1건)	'20.12월
69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적극해석, 1건)	'20.12월
70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0.12월
71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1.1월
72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적극해석, 1건)	'21.3월
73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1건)	'21.4월
74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1.4월
75~77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서비스	(실증특례, 3건)	'21.4월
78~81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플랫폼	(실증특례, 4건)	'21.4월
82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1건)	'21.6월
83	섬유여과기를 적용한 3분 스마트 정수기술	(적극해석, 1건)	'21.7월
84~85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1.8월
86~87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실증특례, 2건)	'21.9월
88~102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 15건)	'21.9월
103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1.9월
104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1.9월
105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임시허가, 1건)	'21.9월
106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적극해석, 1건)	'21.11월
107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1건)	'21.11월

연번	과제명(유형)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108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1.11월
109~117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9건)	'21.12월
118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적극해석, 1건)	'21.12월
119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적극해석, 1건)	'21.12월
120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적극해석, 1건)	'21.12월
121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1.12월
122	교통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적극해석, 1건)	'21.12월
123~124	DTC 유전자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1.12월
125~127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사업	(실증특례, 3건)	'22.1월
128~129	스마트폰 NFC 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2.1월
130	(경북)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실증특례, 1건)	'22.1월
131	(경북)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실증특례, 1건)	'22.1월
132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2.1월
133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 1건)	'22.1월
134	(대전)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특례, 1건)	'22.1월
135~142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8건)	'22.2월
143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 및 임대운영 서비스	(임시허가, 1건)	'22.2월
144	중온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	(적극해석, 1건)	'22.2월
145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실증특례, 1건)	'22.3월
146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2.4월
147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2.5월
148	(충북)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실증특례, 1건)	'22.5월
149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실증특례, 1건)	'22.6월
150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1건)	'22.5월
151~158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 8건)	'22.7월
159	(부산)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영상제보 서비스	(임시허가, 1건)	'22.7월
160	(부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1건)	'22.7월
161	(부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1건)	'22.7월
162	보행자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스마트교통안전 차량과속 경보시스템	(실증특례, 1건)	'22.8월
163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2.9월
164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2.9월
165	대기 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미세조류 기반 AI 공기정화장치	(적극해석, 1건)	'22.9월
166~170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활용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5건)	'22.10월
171~172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실증특례, 2건)	'22.11월

연번	과제명(유형)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173~175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 3건)	'22.12월
176~179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 4건)	'22.12월
180	(전남) 전기자전거 주행실증	(실증특례, 1건)	'22.12월
181	드론기반 3D 지형자료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및 상황전파 시스템 실증	(실증특례, 1건)	'22.12월
182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실증특례, 1건)	'22.12월
183	자동차의 제동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포집을 위한 세라믹 필터 장치 개발	(적극해석, 1건)	'22.12월
184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인공어초 개발	(적극해석, 1건)	'22.12월
185	유전자 재조합 임시발현 식물을 활용한 그린백신 제조 상부공정 실증	(적극해석, 1건)	'22.12월
186	집적 광에너지 근접 조사기기를 통한 바이러스 질환 치료 기술	(적극해석, 1건)	'22.12월
187	(대구)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실증특례, 1건)	'22.12월
188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실증특례, 1건)	'23.1월
189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 보조시스템 기술 실증사업	(실증특례, 1건)	'23.2월
190	무인 담배판매 키오스크	(적극해석, 1건)	'23.3월
191	(전북) 탄소복합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임시허가, 1건)	'23.3월
192	VIB ESS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실증특례, 1건)	'23.4월
193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실증특례, 1건)	'23.4월
194	(전북)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특례, 1건)	'23.4월
195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임시허가, 1건)	'23.5월
196~199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 4건)	'23.6월
200~201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3.6월
202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실증특례, 1건)	'23.6월
203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적극해석, 1건)	'23.6월
204	퍼스널 모빌리티용 무선충전 거치대 실증	(실증특례, 1건)	'23.6월
205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실증특례, 1건)	'23.6월
206~212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실증특례, 7건)	'23.7월
213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3.7월
214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집하처리 시스템	(적극해석, 1건)	'23.7월
215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3.7월
216	(충남)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특례, 1건)	'23.7월
217	(대구)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실증특례, 1건)	'23.8월
218	능동형 EMI 필터의 안전인증 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증	(적극해석, 1건)	'23.8월
219	고흡수성 연질왕겨 상토(비료)개발 및 비즈니스모델 실증	(적극해석, 1건)	'23.8월
220~223	AI 안면인식 기술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4건)	'23.9월
224	(세종)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실증특례, 1건)	'23.9월

연번	과제명(유형)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225	(광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실증특례, 1건)	'23.9월
226	군(軍)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 1건)	'23.9월
227	실내 자율주행 방역로봇	(실증특례, 1건)	'23.9월
228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3.9월
229	화재감시 및 학생범죄 예방용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	(실증특례, 1건)	'23.9월
230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3.9월
231~24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서비스	(실증특례, 15건)	'23.10월
246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실증특례, 1건)	'23.10월
247	(대전)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특례, 1건)	'23.10월
248	(강원)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 개발실증	(실증특례, 1건)	'23.10월
249	(경북)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임시허가, 1건)	'23.10월
250	클라우드 등 기반 VAN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3.10월
251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3.10월
252~262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11건)	'23.10월
263~272	실내외 자율주행 무인순찰로봇	(실증특례, 10건)	'23.11월
273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적극해석, 1건)	'23.11월
274	영상/음성 기반 인공지능 인적자원 분석 인재채용 시스템 실증	(적극해석, 1건)	'23.12월
275	지능형(AI)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키오스크	(실증특례, 1건)	'24.1월
276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	(실증특례, 1건)	'24.1월
277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4.2월
278~289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실증특례, 12건)	'24.2월
290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4.3월
291~298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8건)	'24.3월
299~308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특례, 10건)	'24.4월
309~310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4.4월
311	드론을 활용한 교량의 통합 안전점검 자동화 시스템	(적극해석, 1건)	'24.4월
312	생체신호 연동 실시간 핸드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적극해석, 1건)	'24.4월
313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 1건)	'24.4월
314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실증특례, 1건)	'24.4월
315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실증특례, 1건)	'24.5월
316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4.5월
317~320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4건)	'24.5월
321~323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3건)	'24.5월
324~328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실증특례, 5건)	'24.6월

연번	과제명(유형)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329	(충남)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실증특례, 1건)	'24.6월
330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한 시승서비스	(적극해석, 1건)	'24.6월
331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적극해석, 1건)	'24.6월
332	친환경 비가교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	(실증특례, 1건)	'24.6월
333~343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11건)	'24.7월
344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4.7월
345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 1건)	'24.7월
346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4.7월
347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임시허가, 1건)	'24.7월
348~355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제유의 석유·화학 공정 원료화	(실증특례, 8건)	'24.8월
356~358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3건)	'24.9월
359	(대구)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특례, 1건)	'24.11월
360	(대구)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특례, 1건)	'24.11월
361	新첨단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실증특례, 1건)	'24.11월
362~366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 5건)	'24.12월
367	(울산)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실증	(실증특례, 1건)	'24.6월
368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적극해석, 1건)	'24.12월
369~371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생산	(실증특례, 3건)	'24.12월
372	(대전)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특례, 1건)	'24.12월
373	(충남) 가정용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실증특례, 1건)	'24.12월
374~376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 3건)	'25.1월
377	(경남) 무인선박 실증사업	(실증특례, 1건)	'25.1월
378	자율운항선박을 이용한 무인&원격 해상물류 운송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1건)	'25.1월
379	(전북)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특례, 1건)	'25.2월
380~431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 52건)	'25.3월
432	시각장애인 보행안내용 QR코드 인식·음성 안내 시스템 연구개발	(적극해석, 1건)	'25.3월
433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전력거래 실증	(실증특례, 1건)	'25.3월
434	수거 바지선을 활용한 폐그물 재활용 시스템	(적극해석, 1건)	'25.3월
435	교통카드데이터 기반 교통 입지정보 분석플랫폼 실증	(실증특례, 1건)	'25.3월
436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사업	(실증특례, 1건)	'25.4월
437~454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실증특례, 18건)	'25.4월
455~47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17건)	'25.5월
472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기반 통학서비스 실증사업	(실증특례, 1건)	'25.4월
473~474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2건)	'25.5월

연번	과제명(유형)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475~481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	(실증특례, 7건)	'25.5월
482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1건)	'25.5월
483	수소 모빌리티용 70Mpa 수소저장용기	(실증특례, 1건)	'25.5월
484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실증특례, 1건)	'25.5월
485~488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실증특례, 4건)	'25.5월
489~490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5.5월
491	(울산)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특례, 1건)	'25.5월
492	(울산)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특례, 1건)	'25.5월
493	(전북)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실증특례, 1건)	'25.5월
494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실증특례, 1건)	'25.6월
495~496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실증특례, 2건)	'25.6월
497~502	조각투자 발행·유통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6건)	'25.6월
503~505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실증특례, 3건)	'25.6월
506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농촌전력 직접공급시스템	(실증특례, 1건)	'25.6월
507	(제주)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1건)	'25.6월
508~510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모빌리티 충전 및 운용 실증	(실증특례, 3건)	'25.6월
511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 활용 의료 서비스	(임시허가, 1건)	'25.7월
512	(강원)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1건)	'25.7월
513~547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실증특례, 35건)	'25.8월
548~575	스마트라벨(QR코드)을 이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실증특례, 28건)	'25.8월
576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	(적극해석, 1건)	'25.9월
577~601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 25건)	'25.9월
602~603	비상장주식 안전 거래 플랫폼	(실증특례, 2건)	'25.9월
604	셀프LPG 주유소	(실증특례, 1건)	'25.11월
605	(충북)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실증특례, 1건)	'25.11월
606~609	도시정비전용 토지소유자 본인 전자서명 동의서비스	(실증특례, 4건)	'25.12월
610~614	도시정비총회 전자적개최, 현장출석 투표	(실증특례, 5건)	'25.12월
615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	(적극해석, 1건)	'25.12월
616~617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적극해석, 2건)	'25.12월

3 신속확인

신사업 관련 규제 유무를 1개월 내 확인해주는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누적 총 264건의 신청과제를 '규제없음'으로 기업에 통보하였다.

분야	2025년 '규제없음' 회신 주요 사례
ICT융합	• **(클라우드 기반 한의(韓醫) 케이스 공유 플랫폼)**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정보 등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경우, 데이터 암호화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적용되는지 여부 문의 → 동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허가 등은 불필요하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규정 준수는 필요
산업융합	• **(AI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공공기관의 홍보용 이미지 및 영상을 제작할 경우, AI 생성 이미지를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에게 자유 이용 허락 가능 여부 문의 → AI 생성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공공저작물로 분류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이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
스마트도시	•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기반의 디지털인증·온라인총회 지원 서비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에 필요한 동의서/투표/총회 일체를 전자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조합원 등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 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음
순환경제	•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중 R-9-2, R-10-1로 재활용된 폐식용유 등의 동식물성 유지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 가능한지 여부 문의 → 폐식용유, 폐동식물유 등의 경우 석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R-3-3유형)할 수 있어 별도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등은 불필요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 생활 밀착형 스마트기술 활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01 모빌리티 샌드박스

도심주차장 등 유휴시설,
택배환적 작업허용 등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



02 스마트도시 샌드박스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성녹음 가능



03 순환경제 샌드박스

농산 부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
(식품, 화장품 등의 중간 소재 등)



04 ICT 샌드박스

AI 기반
도축 자동검인 시스템 실증



05 산업융합 샌드박스

관광단지 내 음식점 등은
바로 붙어있지 않은 공간에서도 옥외영업 가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06 산업융합 샌드박스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을
형식승인 후 1회 실시로 검정제도 간소화



07 산업융합 샌드박스

마을어장을 임대한 공공기관이 청년·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수익창출 및 생산성 개선 실증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란?

경제적 파급력이나 부처간 이견이 큰 규제 등의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것~!



국무조정실

2 |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고연주 사무관 Tel. 044-200-2912

국무조정실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 예측에 기반하여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AI 분야 로드맵은 새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에 해당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AI 분야를 경제·사회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인식하여 대규모 투자와 파격적인 기술 실험의 테스트베드를 허용하는 등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목표인 AI 3대 강국에 들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규제합리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AI 전반의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법제 정비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AI 기업 등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로드맵 마련을 위해 AI 관련 협회·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가 함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전방위적으로 과제를 발굴·검토하였다. 연구용역을 4월부터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집단 및 기업 등과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하였고, 부처조정회의를 수시로 진행하였다. 또한, 이견이 첨예한 핵심과제들은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25.9.15.)에서 민간전문가·기업 및 소관 부처 간 토론을 통해 이견이 조율 되었다.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서는 ①기술개발 ②서비스활용 ③인프라 ④신뢰·안전 규범의 4가지 분야에서 규제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AI 분야는 범용기술로서 산업 가치사슬이 복잡하고 다난한 만큼, 관련 규제의 심도 있는 파악을 위해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발굴되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R&D 단계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서비스에 활용될 때의 규제이슈 및 AI 산업의 근간인 인프라 분야 등이 전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효과적인 시장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I 산업 밸류체인별 주요 규제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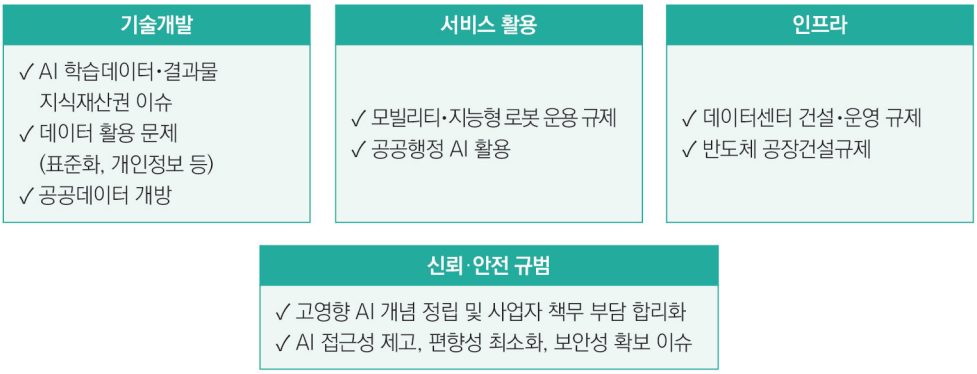

첫째,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데이터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편의 중심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AI 데이터 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서비스 활용 분야로는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합리화로 기술 상용화를 도모하였으며, 공공행정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으로 대국민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셋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등의 불필요한 운영비용 감소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한 예로,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신뢰·안전 규범으로는 AI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예방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각 분야에서 도출된 세부과제들은 총 67개에 해당한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AI 산업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세부 규제개선 과제〉

	과제 목록	관계 부처	시기
개발 분야	◈ AI학습·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규제합리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완화	문체부	'26
	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 거래체계 마련	문체부, 과기정통부	'26
	공공저작물의 개방 확대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제공	문체부, 과기정통부, 노동부	'26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지위 명확화	문체부	'25
	AI 생성물의 산업재산권 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지식재산처	'26
	◈ 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합성데이터(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행안부, 금융위	'27
	산업데이터 생성툴 보급 및 공유 플랫폼 구축	산업부, 과기정통부	'29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개발·확산 및 플랫폼 고도화	중기부	'28
	가명처리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위	'25
	가명정보 결합 효과성 개선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금융위	'26
	가명정보 결합절차 간소화 및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위, 금융위	'26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연계	과기정통부	'26
	정보주체 참여형 데이터 유통 체계 마련	개인정보위	'28
	마이데이터 全산업 확산	개인정보위	'27
	범죄예방 등 공익 목적의 AI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	개인정보위	'26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예외	개인정보위	'25
	공공데이터 가명처리 유인체계 마련	개인정보위, 행안부	'26
	민간의 고품질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지원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산업부	'29

	과제 목록	관계 부처	시기
개발 분야	◈ **공공데이터 활용성 강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개선	행안부	’26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개별법 정비	행안부	’26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구체화	행안부	’25
	판결문 등 행정부 外 데이터 개방 확대	행안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26
	헌법기관·독립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시범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27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개선	행안부	’26
	주소 정보의 AI 전환 근거 마련	행안부	’27
	공공구매정보망 기능 강화를 위한 조달·기업데이터 연계	중기부	’27
	공공기관 내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설치	행안부	’26
	출입국·외국인 행정 데이터의 AI 학습·활용 촉진	법무부	’28
서비스 활용	◈ **모빌리티·지능형로봇**		
	자율주행 제한구역 규제합리화	국토부	’26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확대	국토부	’26
	AI 학습 목적 개인정보 활용 특례 조항 신설	개인정보위, 국토부	’25
	AI 로봇 활용 가속화	산업부	’27
	주차로봇 기존규제·안전기준 정비	국토부	’26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간소화	산업부	’25
	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25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도화	농식품부	’26
	◈ **공공행정**		
	반복적 처분에 AI 기술 적용된 자동적 처분 도입으로 행정적 비효율성 개선	법제처	’27
	AI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	조달청	’26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근거 마련	행안부	’26
	생성형 AI 기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구축	관세청	’26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개발	국세청	’26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	중기부	’26

과제 목록		관계 부처	시기
서비스 활용	홈택스 AI 검색 고도화	국세청	'26
	AI 국민신문고 구축 및 민원 분류·배정체계 개선	권익위	'30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기반 자동 안부확인	보훈부	'26
	AI 기반 지능형 산림경영계획 자동생성체계 도입	산림청	'27
	AI 기반 소방예방 정보시스템 도입	소방청	'28
	AI 기반 수입 수산물 현장검사 지원체계 구축	식약처	'27
	AI 기반의 심사지원 시스템 지원	지식재산처	'32
	AI 기반 지능형 통합관제 활성화 추진	행안부	'27
	AI 기반 디지털 환경영향평가 지원	기후부	'26
	AI 기반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부	'28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중기부	'27
	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중기부	'27
인프라 분야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	기후부	'26
	데이터센터 미술작품 설치 의무 개선	문체부	'26
	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	국토부	'26
	데이터센터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수부	'25
	반도체공장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	국토부	'25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설정기준 완화	국토부	'26
신뢰·안전 규범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	과기정통부	'26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관련 중복규제 해소	과기정통부	'26
	채용 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부	'26
	AI 서비스의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과기정통부	'26
	AI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공정심 침해 방지	과기정통부	'28
	고성능 AI의 보안성 확보	과기정통부	'25
	모두를 위한 AI 복지 구현	복지부	'26

3 | 신산업 규제정비

고연주 사무관 Tel. 044-200-2912

1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AI 모델 개발에 요구되는 학습데이터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G3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이 1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점점 확대 되고 있지만, AI 학습 친화적 고가치 공공데이터의 비중이 적고, 공공데이터의 AI 산업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가공이 필요하여 활용성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전문가 집단, 기업 등과의 논의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기업 및 소관 부처 간의 토론을 통해 이견이 조율되었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법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담당 공무원의 면책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공공데이터법을 개정하여 면책 규정을 두고, 실무적으로도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급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대응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해야 하는 경험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하급심을 포함하여 기존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던 판결문의 공개범위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AI 학습 필요한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여 AI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해당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가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명처리 후 반출까지 약 310일이 소요되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명처리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가명처리 전 과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무원의 데이터 제공 부담을 완화하여 데이터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자인 기업들은 쉽게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급자인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 자율주행차 실증공간 확대 등

박종민 사무관 Tel. 044-200-2253

자율주행차는 조속한 상용화 기반 조성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8년과 '21년에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여 세계 최초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 마련, 레벨 4 성능 인증제 마련 등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자율주행차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에 비교한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나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개발사 및 차량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협회·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실증 공간 확대 등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25.9월에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서 자율주행 산업 현황을 점검·확인하고 규제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확정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서 자율주행시스템 기술 향상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의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원본영상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가명처리 영상에 비하여 최대 17.6% 정도 평균 정밀도 개선이 가능함에도 비식별 처리에 따라 자율주행 AI의 학습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원본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국민이 일상 속 자율주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지만,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지역) 소규모 지구·노선 중심 ▲ (운행)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모드만 허용 ▲ (행정) 지자체 신청(연 2회) 후 국토부 심의·지정 등 시간 소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 → 도시 단위(중규모 지방도시 등)로 실증구역 확대(공모)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추진하고, △업계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25.11월에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26.1월에 국내 최초로 광주광역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규제특례 부여 등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책임 주체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운수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 기술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시민이 자율주행을 체감하고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3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변경록 사무관 Tel. 044-200-2666

(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2025년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으나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고, 난치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여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중위험 임상연구 심의 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더 이상 줄기세포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지 않도록 첨단재생의료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였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대상이 되는 난치질환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2026년부터 치료 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한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 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첨단재생의료 심의 인력 확충과 전문위원 풀 확대 등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사망자의 의료정보는 신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망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하는 비식별화 방법이나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사망자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데이터 비식별화 판단 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산업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연구·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 분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산업계의 경우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폐쇄형 데이터 센터 방문으로만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했으나, 개인 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 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 분석이 가능하도록 2026년 시범운영 예정이다.

4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 해소

김영길 주무관 Tel. 044-200-2449

(가) 추진 배경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G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AI 기술을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학습데이터 이용을 최대한 폭넓게 허용하고 AI 개발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한편, 창작활동을 하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대규모 무단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되고 합리적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등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재산권으로서 헌법상 보호받는 저작권과 AI 기술혁신은 서로 긴장관계를 갖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보호와 혁신 중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창작의 동기를 유지하는 동시에, AI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상호 발전과 성장을 진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므로 매우 난이도 높은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나) 추진성과

①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저작권법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전 이용허락의

원칙'을 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 규정, 즉 '공정이용' 제도*를 두고 있는데, 조항의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법원의 판례 또한 충분하지 않아 GAI 개발을 위한 저작데이터 학습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기존의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예: 교육목적 이용, 도서관에서의 이용, 비영리공연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무조정실 조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자단체, AI기업,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에서 특별분과를 발족(9.22.)하여, AI기업·권리자 설문조사(10.13.~11.2.), AI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회의(12.4.),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사례보완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5차례), 대국민 설명회(12.4.) 등을 거쳐, G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해석 방향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공정이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26년 1월까지 발표하기로 하였다.

②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범위 확대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 조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했다.

*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26. 1月 제4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9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정예팀이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중 약 1,100만 건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제0유형 또는 인공지능 유형을 표시한 공공저작물이면 전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 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참고]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허락 범위 요약

적용범위	모든 이용목적에 적용	AI 학습 이용목적에만 적용

이용조건	0유형 (신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출처표시 의무	-	✓	✓	✓	✓
상업적 이용금지	-	-	✓	-	✓
변경금지	-	-	-	✓	✓

✚

AI 유형 (신설 / 1~4유형과 병행 표기)	
출처표시 자유	■ AI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 시,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필요
상업적 이용가능	■ **학습한 AI 모델의 상업적 활용 가능** (공공저작물로 제작한 AI 학습용 데이터 **재판매 금지**)
변경가능	■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경 가능**

적용방법	공공누리 **'1~4유형'을 선택**한 저작권자는 **추가적으로 'AI유형'을 선택 가능 (병행 표기)**

05 규제신문고

고명수 사무관 Tel. 044-200-2634

1 | 개요

규제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범정부 규제혁신 건의창구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누구나 규제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한 규제개선 사항도 규제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2 | 처리 절차

규제신문고는 '부처답변 → 소명요청 → 부처 2차 답변' 과정을 통해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규제건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신문고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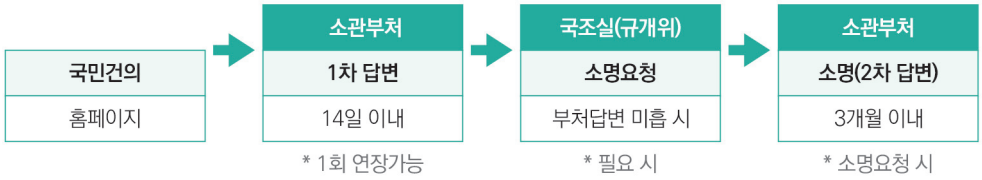

1차 답변 소관부처는 규제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건의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책임자 실명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부처에서 심층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14일)을 할 수 있다.

소명요청 국무조정실은 답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부처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소명 (부처 2차 답변) 국무조정실은 부처 답변이 불합리하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 부처가 소극적·관행적으로 답변한 경우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소관부처에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관부처는 소명대상 규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 심층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규제신문고는 2014년 3월 개설 이후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보완·강화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년마다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는데, 규제신문고가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서 '21년에 이어 '24년 평가에서도 온라인 소통서비스 우수 평가('21년 3~4위→ '24년 3~5위)를 받았다.

2025년 12월부터 규제신문고 내에 '경제단체 규제신문고'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기업(회원사)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정부에 상시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과제접수,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회신하고 있다.

구분	이 전		현 재
① 국민 권리	규제의견 제출제 (소극적 권리)	→	규제정비 요청제 (정부 성실답변 의무→적극적 권리)
② 건의 창구	비전용·비독립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內 일부 운영)	→	전용·독립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③ 건의 경로	분산·다원화 (부처·지자체별 개별 접수)	→	통합·일원화 (부처·지자체 연계→ 접수창구 단일화)
④ 지자체 건의	전담창구 부재 (지자체 상시·즉시적 건의 불가)	→	전담창구 마련 (지자체 상시·즉시적 건의 가능)
⑤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 규제혁신활동 평가부재	→	지자체 규제혁신활동 평가반영

❶ 규제신문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을 통해 규제의견 제출제에서 '규제정비 요청제'를 도입하였다. 국민이 규제정비를 요청하면 정부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❷ 기존에 규제정보포털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나 규제신문고 전용 홈페이지(www.sinmungo.go.kr)를 개설('17.10.)하여 국민이 규제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홈페이지를 구축('21.1.)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❸ 중앙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규제건의를 개별 접수하던 것을 규제신문고로 연계·통합하여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였다.

❹ 제도와 현장의 경계에 있는 일선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상시·즉시적으로 규제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담 창구를 마련('20.1.)하였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절차 등을 지자체 등 지역 요구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의 현장체감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❺ 지자체의 규제혁신 활동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 활용도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21.10.)하였고, 2022년부터 지자체 건의·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국무조정실이 16개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신문고 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4 | 2025년 규제신문고 운영 성과

2014년 3월 규제신문고 개설 이후 2025년말까지 총 37,699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7,281건을 개선하였다.

2025년 한해 규제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4,278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2025년 규제건의 처리현황

규제건의	처리						중장기검토
		전부수용	일부수용	대안제시	기시행	수용곤란	
4,278	4,134	211	247	3	538	3,135	144

2025년 규제건의 4,278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59.8%로 가장 많았고, ▲기업 건의 21.7% ▲자영업 건의 13.3% ▲기타 건의 5.1% 순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등 민생분야 관련 건의가 약 73.2%를 차지한다.

수용된 규제건의 437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57.0%로 가장 많았고, ▲기업 건의 24.9% ▲자영업 건의 14.8% ▲기타 3.3% 순이었다.

5 | 주요 개선사례

1.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암표 판매 근절 (문체부)

기 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공연 및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구입, 판매**하는 **행위 금지**

→ 불법 입장권 판매자(암표상)들이 입장권을 "티켓 거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지속 발생**

개 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벌칙 강화***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3년, 3천만 원**

※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6.7월)**

⇒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이 정가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의 권리 보호

2.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 (식약처)

기 존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당뇨·신장질환·암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식약처의 **식품표준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 가능

※ 환자용 식품 시장 규모(억 원) : ('18) 800 → ('20) 1,097 → ('22) 2,372

→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부재**하여 제품화에 한계

개 선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25.8월, 조치완료)

⇒ 간경변 환자의 식품선택 폭 확대 및 환자용 식품시장 창출(연간 47억 원*) 기대

* 간경변 환자(12.8만 명, '23)의 1%가 일일 1식(10,000원) 섭취 가정

3. 법인택시 면허기준 중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국토부)

기 존 **법인택시 면허기준**에 차량 1대당 13㎡~15㎡ 이상의 차고지 확보가 필요, 시·도지사가 지자체 조례로 **40% 범위**에서 **해당 기준 완화 가능**

→ 차고지 면적의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경영난 지속**, 차고지 면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개인택시와의 불균형 등 발생

※ 과거에는 법인택시 차량 1대당 기사 2명이 번갈아 영업을 하는 경우 多, 최근에는 차량 1대당 기사 1명이 운영하는 경우 多 → 차고지 주차 필요성 저하

개 선 법인택시 면허기준 차고지 면적을 시·도지사가 **50% 범위**에서 **기준 완화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5.7월, 조치완료)

⇒ 법인택시 회사의 차고지 임대료 등 부담 감소로 경영난 해소에 도움

4.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부)

기 존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50%)**은 장애인 **자기소유 차량** 대상으로 한정

→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리스·렌트 등)**의 경우 주차료는 감면되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미감면**되어 임차 차량과 자기소유 차량과의 **불형평 발생**

개 선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26.7월)

⇒ 장애인 임차 차량에 대한 운행 부담 감소

5. 심야시간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 주차 허용 (산업부)

기 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 원) 부과**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건축허가를 받은 신규 시설은 주차장의 5%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공간으로 배치 의무

→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을 비워둬야 하는 **비효율 발생**

개 선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 차량이 **심야시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6.7월)

⇒ 일반 차량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전업무 연령기준 20세 → 18세 완화 (국토부)

기 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20세이상**으로 **제한**하여 **관련 운전면허(특수·1종대형·1종보통)** 취득가능 연령인 **18세**와 **불일치**

→ 화물차 운전면허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관련 운전업무의 기준연령 미달로 **취업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

※ 영업용 화물차량 대수('24년): 537,471대 (일반: 469,261, 특수: 68,210)

개 선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연령**을 **18세로 완화**하여 관련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과 일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5.12월, 조치완료)

⇒ 특수·1종대형·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청년층의 구직기회 증대

7. 염색업종밀집 산업단지 내 세탁물공급업서비스업 제한적 입주 허용 (산업부)

기 존 **세탁물공급업은 서비스업**으로, 제조업중심 집적화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에 입주가 원칙적으로 제한**

→ 현재 **섬유염색업계**는 생산비 상승, 산업 침체 등으로 폐업이 늘어나 염색업종이 밀집된 **산업단지 공실*이 증가**하는 반면, **세탁물공급업****은 일반 지역 내 폐수 배출에 따른 민원으로 **입지 선정과 공장 허가에 애로**

* 전국 염색공단 공실 비율 18.8% ('25.3월,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 하루 50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해 200평 이상 대형부지의 폐수처리 시설 필요

개 선 **기존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국가산단**(반월,시화,명지녹산)에 **제한적**으로 **허용**

※ 각 개별 산단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26.6월)

⇒ 국가산단 공동폐수처리장 활용한 **폐수처리 비용 경감으로 섬유염색업종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8. 조합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GMP 심사 간소화 (식약처)

기 존 **조합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조합되는 모든 세부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GMP) 심사 필요**
* 2개 이상의 의료기기가 하나의 의료기기로 조합되어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

→ 이미 GMP 인증을 보유한 제조소는 **재심사**에 따른 **비효율 및 부담** 발생

개 선 **GMP 인증을 보유**한 제조소의 의료기기가 **조합의료기기의 구성**으로서 조합된 경우, **해당 GMP 심사 생략 가능**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 기본지침」 개정 ('25.5월, 조치완료)

⇒ 의료기기 심사허가 기간 단축으로 시장 진출 가속화

9. 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교육부)

기 존 **기업 본사 소재지**와 **거리가 50km 이내**인 인근 대학(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 설치·운영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사와 분리**되어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근로자**는 **본사 계약학과 교육 참여 곤란**

개 선 기업부설연구소 근로자 대상 계약학과 설치에 한해, **기업부설연구소 기준** 거리가 **50km 이내**인 **인근 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 허용**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개정 ('25.12월, 조치완료)

⇒ 본사와 분리된 기업부설연구소 근로자의 계약학과 교육 참여 기회 확대

10.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산업부)

기 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은 **재사용전지모듈**에 대한 **전수 검사** 요구, 모든 셀에 대한 물리적 시험 의무로 **과도한 인증부담*** 발생
* 셀 전수검사를 위한 인증 비용(약 70만 원) 〉 평균 배터리 시장가격(약 30만 원)
※ (폐)배터리는 최소 단위인 셀, 셀을 여러개 묶은 모듈, 이를 다시 조합해 외함과 관리시스템을 결합한 팩 구조로 구성

→ 물리적 검사의 대안으로 **소프트웨어 검사*** 가능하나, 데이터 관리·공유를 배터리 제조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활용도 저하**
* 배터리에 내장된 이력 정보(잔존용량, 전압 등)를 활용한 검사로서, 물리적 검사에 비해 검사비용 약 1/5로 저렴

개 선 **'배터리 전주기 통합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검사기관을 확대(1개소 → 6개소)**하여 재사용전지모듈의 **소프트웨어 검사기법 활용 확대**
※「사용후 배터리 법」 제정 ('26.12월)
배터리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28.12월)

⇒ 재사용전지모듈 검사비용 완화로 폐배터리 사용 확대

11. 사전 신고절차 없이 산지에 양봉통 설치 허용 (산림청)

기 존 **양봉농가**가 **산지에 양봉통 설치** 위해서는 **일시사용을 위한 사전신고*** 필요, 특히 **임업용 산지****의 경우 양봉시설 **설치 가능여부 불명확**

* 물건적치 지자체 신고필요, 신고수리 최대 10일 소요

** 산지분류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 공익용 산지)

→ 양봉통 설치는 산지 훼손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로 **양봉농가 불편 발생**

개 선 산지 양봉통 설치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절차 폐지** 및 **임업용 산지 양봉시설 허용 명확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26.6월)

※「임업용 산지 양봉시설 설치관련 인허가 처리」 안내 ('25.11월, 조치완료)

⇒ 양봉농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및 양봉업 활성화

12. 지역축제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식품 영업신고의 수수료 합리화 (식약처)

기 존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지역축제**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팝업스토어 등)**하려는 경우, 지자체 **신고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부과*

* 무료 ~ 28,000원(신규 영업신고 수수료 수준)

개 선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규정(9,300원)** 등 합리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6.12월)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 간 형평성 제고

13.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가능조건 확대 등 폐기 의무 완화 (해수부)

기 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는 수산부산물을 **90일 내**에 **배출** 의무, **예외적으로 재활용 가능*****하지만 **연안환경 개선 목적**의 재활용은 **불가**

* 패각, 생선 뼈, 껍질, 내장, 지느러미 등

**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하는 자

*** 단순 수리·세척하여 재사용,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는 경우 등

→ 수산부산물 보관기간이 짧아 분리배출 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어장정화 등 **연안환경 개선 곤란**

※ (예시)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을 위해 굴패각 활용 시 효과가 우수함에도 활용 불가

개 선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의 **보관기간 현실화, 수산부산물 재활용 허용 용도**에 **연안환경 개선** 등을 **추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26.12월)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의 보관기간 관련 부담 완화 및 재활용산업 활성화

14. 산지에 임산물 재배를 위한 울타리는 허가·신고절차 없이 설치 허용 (산림청)

기 존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 시 야생동물 피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울타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필요

*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복구비 예치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가능 / 사업계획서, 지형도, 사용예정지 실측도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 울타리 시설 설치는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이행해야 하여 **임업경영에 불편 발생**

개 선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임산물 재배를 위한 울타리는 **별도 인허가 없이 설치 허용**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26.6월)

⇒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임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 '23년 전국 임가 99,000가구 중 재배임업 약 81%

15. 농어촌 민박 사업 시 관할 지역에 사전거주 요건 완화 (농식품부)

기 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주민이 **농어촌 민박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소유)** 또는 **3년(임차) 이상 사전 거주** 필요

→ **귀농**하여 민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

개 선 관할 시·군·구 사전 거주요건 완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5.12월, 조치완료)

⇒ 농어촌 관광경제 활성화

16. 공중위생영업자가 동일 광역시 내 복수의 영업장을 운영할 경우, 위생교육 이수 횟수 연 1회로 완화 (복지부)

기 존 **공중위생영업자***는 **복수의 영업장 운영** 시 **각 영업장별로** 대표자가 **연 1회 위생교육** 이수 필요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미용업 제외)

→ 동일 광역시에서 복수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위생교육 중복 이수 부담 발생**

개 선 광역시별로 복수의 공중위생업종의 영업장을 운영 시 연 1회 위생교육 이수로 전체 위생교육 이수의무 갈음 (사업장별 복수 교육이수→1회 이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6.12월)

⇒ 불필요한 위생교육 이수 의무 완화로 공중위생업 자영업자 부담 완화

17. 식품접객업 유사업종 간 업종변경신고 허용 (식약처)

기 존 식품 관련 영업자(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는 원칙적으로 **업종 전환** 시 **폐업신고 후 다시 신규 영업신고** 필요(수수료 28,000원)

→ 카페(휴게음식점) 영업 중 맥주 판매를 하려면 기존 카페 폐업 후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신규 영업신고 필요하여 **세무서, 보건소 등 방문에 따른 불편 발생**

개 선 **식품접객업 중 유사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상호 업종 전환** 시 폐업신고 및 신규 영업신고 절차 없이, **단순 변경신고 허용**(수수료 9,300원)

* 3개 업소 수('24.12월) : 910,724개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7.6월)**

⇒ 영업자의 폐업 후 재신고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수수료 부담 완화

18. 사실상 휴업 중인 식품영업소에 지하수 수질검사 의무 면제 (식약처)

기 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주기적***으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질검사**** 의무

* (6개월) 음료류 등 직접 음용에 사용되는 경우, (1년) 기타 경우

** 세균, 대장균, 납 등 총 46항목 수질검사 비용 약 **26만 원** 발생

→ 업소가 **사실상의 휴업** 상태에 있더라도 **해당 의무 존재**(미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하여 불합리

개 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일정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의무 면제**

※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25.12월, 조치완료)**

⇒ 사실상의 휴업 중인 업소의 수질검사 부담 해소

19.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요건 간소화 (국토부)

기 존 **아파트 내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 해당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 시 ①(행위허가) **소유자 2/3 이상 동의** 필요, ②(축조신고)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 **사실상** 휴게시설 등 **가설건축물 설치 곤란**

개 선 ②**축조신고**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소유자 2/3 이상**으로 합리화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26.12월)**

⇒ 경비원·미화원의 휴식권 보호

20. 유치원 원장에게 부과되던 불합리한 과태료 면제 (교육부)

기 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유아보호자**로 하여금 **법정 건강검진 수검** 후 **해당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할 의무 존재

→ 관련 의무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치원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3회)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불형평 발생

개 선 유치원 원장도 유아보호자 대상 **3회 이상 유아 건경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유아교육법」 개정 ('26.2월, 조치완료)

⇒ 유치원 원장이 아동의 건강검진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등 그 의무를 다했다면 과태료가 면제되도록 하여 제도 합리화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제도 형평성 도모 ※ 전체 유치원 수 : 8,294개('24년 기준)

6 |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은 국민 누구나 민생·경제 규제합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규제애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 지자체 및 협·단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확대·강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수 국민이 개선을 원하는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06 규제혁신 소통

1 | 현장규제 현장대화

고명수 사무관 Tel. 044-200-2634

1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2025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전쟁, 내수회복 정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 들었으나, 기업경영 환경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1%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2차례 개최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건의서'를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하는 한편, 행사에 참석한 분야별 중소기업 대표가 현장에서 건의한 규제애로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개선방안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전달한 규제건의를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60건 마련

1 제조·건설업

✓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권역간 이동 불가

➡ 개선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간 이동



✓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개선

내국인 채용실적이 높은 사업장부터 우선 배정

➡ 개선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 삭제



✓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진입요건 완화

관련 자격증·학위 필요

➡ 개선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진입 허용



2 생활·전문서비스업

✓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상·하층 각각 1.7m 이하로 제한

➡ 개선 창고, 주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건설기계 확대

덤프트럭만 가능

➡ 개선 레미콘트럭, 굴착기 등 9종으로 확대



3 수출입·조달기업

✓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 표시 허용

수출 계약 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어 국내 활용 곤란

➡ 개선 한글 스티커 표시 허용으로 가공·조리용, 급식용 등 국내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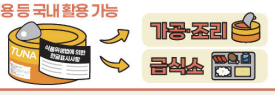

✓ 공인인증(HACCP 등)을 보유한 사업장이 공공조달 참여 시, 중복 현장심사 면제

공인인증을 취득할 때 거쳤던 현장심사를 공공조달 참여 시에도 중복으로 실시

➡ 개선 중복된 현장심사 면제



4 창업·인증기업

✓ 지자체 등과 지방 계약 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 상향

2천만 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의계약 가능

➡ 개선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청년창업자 우대

청년창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 부족

➡ 개선 입주 심사 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 신설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필요

➡ 개선 제출 의무요건 삭제



5 농·어업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농업법인은 농업 관련 부대사업만 가능

➡ 개선 농업용 공장·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 거래 허용



✓ 서해 특정해역의 야간조업 허용

서해 특정해역은 야간조업 불가

➡ 개선 안전대책 보완 후 야간조업 허용



국무조정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

1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신속한 상표등록을 위한
상표 우선심사 요건은 상표권 분쟁 등
예외적 경우에 한정

➡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
(심사기간 1년이상 → 2개월로 대폭 단축)



25년 10월 완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 폐지

한옥 등 준공이후 30년이 초과된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불가

➡ 30년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건축물은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25년10월 완료

✓ 군사 접경지 공장 신축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

접경지에 중소기업이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본인이 허가받은
면적내에서 군사시설 설치 의무 부담
(옥상진지, 군출입계단 등)

➡ 추가되는 군사시설은 허가받은 면적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
(건폐율·용적률 유지)



26년 6월

2 사업 확장 지원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 허용

산단·지산 입주 중소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시공·설치를 위한 공사업 입주 불가

➡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시공·설치를 위한 공사업은 입주 가능토록 허용



26년 3월

✓ 농산가공품 소매 판로를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 확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장류, 절임류 등)은
농가 제조영업장 및 온라인 판매만 가능

➡ 농가 생산 농산가공품의 소매판로를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확대



26년 10월

✓ 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

택시운전자가 광역단위 사업구역을
이동하는 경우 해당 지역별로
추가 택시자격증 취득 필요

➡ 사업구역 이동과 관계없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체계로 일원화



26년 12월

3 운영 부담 경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이
전통시장 점포로 한정

➡ 가입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확대



25년 12월

✓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의 운행 종료지 인근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여객운송사업용차량(노선·전세버스, 택시 등) 운행
종료 후 등록된 차고지에만 밤샘주차 가능

➡ 운행종료 후 인근 허가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주차장법」상 건물내 부설주차장, 도로 외에 설치된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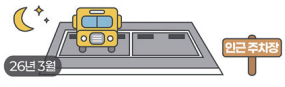

26년 3월

✓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완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시
조합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준수 필요

➡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시 조합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완화
△(전국조합) 8→4천만원, △(지방조합·연합회) 4→2천만원



26년 12월

국무조정실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및 기업인 간담회

성진구 사무관 Tel. 044-200-2917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9.1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 에코에너젠 윤종필 대표, TEMC 유원양 대표, 테스 이재호 대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산업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소방청 차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혁신기획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으로는 ①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 ②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③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④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완화 등이 있다.

먼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합리화하였다. 현행 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 뿐만 아니라 높이기준도 추가 설정하여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둘째,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하였다.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나, 설비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반도체 공장도 배관통로(Duct Shaft)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방화구획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하며, 공장 운영 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하여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 시 현재 자재·공간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나열식) 방식의 現 규제체계에서,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 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셋째,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일반산단)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또는 예정 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반도체 칩 제조기업 B社는 소부장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을 마련하여 운영기관(비영리 재단법인 신설)에 무상임대할 예정이나, 산단 입주 기업은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임대 가능하여, '27년 1호팹에 입주할 미니팹은 '33년(잠정) 1호팹 완공 시까지 임대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상 특례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미니팹이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착공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시급성과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우리나라 주요 첨단산업인 반도체 생산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신속한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기간 단축(2개월),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3 네이버 데이터센터 '세종 각(閣)' 현장방문 및 기업인 간담회

성진구 사무관 Tel. 044-200-2917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11.27.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카카오 김세웅 부사장, 삼성SDS 이준희 대표, 노타AI 채명수 대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연정 전무,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중협 회장, 과기부 2차관, 문체부 1차관, 기후부 2차관,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협력기획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참석 기업들과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원활한 전력공급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 예측에 기반하여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①기술개발, ②서비스 활용, ③인프라, ④신뢰·안전 규범의 4가지 분야에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이날 발표된 AI 분야 로드맵은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세계 각국에서 AI 기술을 사회·경제 등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인식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속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법제 정비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AI 기업 등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엇보다 저작권, 공공데이터 개방 등 일부 핵심과제들은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2025.9.15.)에서도 관련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부처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4 노인요양시설 규제개선 현장방문

박도연 사무관 Tel. 044-200-2416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날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현희 국회의원 등이 동행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검받기가 어려웠다. 2026년부터는 검진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425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26.5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 출장건강검진 사유 확대

기 존 ①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② 섬·벽지 지역 검진대상자의 일반검진 및 암검진 ③ 출장검진 필요항목에 대한 검진만 가능

개 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도 포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개정 예정, '26.1월~)

2 |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유가영 사무관 Tel. 044-200-2429

1 개요

정부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 적극행정 주요성과를 관리·공유한다. 작년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적극행정 주요성과 중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한 경우,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국민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총 2회 대표사례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Top 5로 총 10건이 선정되었다.

2 제1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Top 5('25.9.)

①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 운영(국방부)

기 존 군인사칭 사기범죄(No-Show, 구매대행사기 등)는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피해자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미흡

개 선 국방부 운영 정보체계와 국방헬프콜(1303)의 24시간 상담시스템을 활용해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기여

②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문체부)

기 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세법 개정

개 선 체육시설 이용료뿐 아니라 체육시설 강습료(50%)도 공제받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의미를 적극 해석해 수영장·체력단련장이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혜택 확대

③ 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실시(식약처)

기 존 소비자는 식품 이물 신고 시 택배사에 연락하거나 편의점을 방문하여 자신이 택배비를 내고 직접 조사기관에 이물을 발송

개 선 소비자는 이물 등을 포장해 문 앞에 내놓는 것만으로 신고 절차 마무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소비자 이물 신고 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접수를 대행함으로써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

④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권익위)

기 존 연간 1천만 건 이상 접수되는 국민신문고 답변 작성 시 민원 요지, 담당자 이름·소속·전화번호 등 반복 입력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외국어(16종) 번역 시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번역료 발생

개 선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민원 답변 지원 및 번역 서비스를 공무원이 개발하여 국민신문고 서버에 구축, AI 구축 비용 약 3억 원 및 번역 예산 절감

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운영(기상청)

기 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기상정보는 문자 중심으로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연령과 디지털기기 사용 환경 등으로 인해 정보 전달에 한계

개 선 기상청이 보호자에게 폭염 정보 전달 후 가족·지인이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로 이를 전하는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운영으로 사회적 돌봄 기능 강화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8일간(8.26~9.2) 5,882명 참여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1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 24시간 운영,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

- 의심신고 1,042건 (51.4억 원 피해 예방, 5~8월)



dd**43
최근 군인이라고 속여 노쇼(No-Show)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24시간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가 생겨 소상공인이 사기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네요.

2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 공공·종합체육시설, 강습료의 50%도 포함(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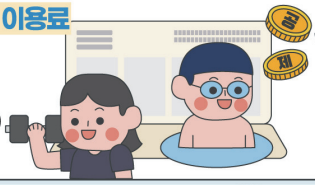

kt***01
체육시설 이용은 문화생활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인데요, 이제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혜택을 누리게 되었네요~!

3 소비자가 식품 이물 신고 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실시

- 이물 신고 접수 편의성 향상 (1,315건 서비스 제공, 3~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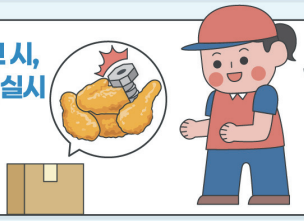

개*
소비자가 식품 이물을 발견했을 때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를 통해 가정까지 찾아가 수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이네요.

4 생성형 AI를 공무원이 직접 구축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 AI 구축비 2~3억 원 절감(6월)



김*나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억 원을 절감한 것도 놀랍고, 민원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5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운영 (가족·지인의 안부전화로 전달)

- 2,199명 신청(6~9월 운영)



cj****gs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런 적극행정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무조정실

3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Top 5('25.11.)

①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기 존 기존의 보이스피싱 데이터는 범죄 예방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활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개 선 보이스피싱범 목소리와 비교·대조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정함으로써, KT의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시 지원

②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중복 형식승인 면제(해경청)

기 존 동일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생산 시에도 용량이 달라지면 수십~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재차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행적 문제

개 선 동일한 물품일 경우 성능 변화가 없다면 제품 무게 등 용량 단위 변경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출하하도록 개선

③ 보훈회관의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보훈부)

기 존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65세 이상 노인은 점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평균 77세의 고령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보훈회관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함

개 선 전국 248개 보훈회관을 특정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4만여 명) 대상 경로당으로 인정하는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점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④ 미래 선진형 차량 확산에 대비한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국토부)

기 존 20년 된 기계식주차장 기준으로 인해 크고 무거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나 전기차 등 진입 불가능, 새로운 스마트 주차 기술의 구현에 제약

개 선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자동차 기준과 출입구·주차단위구획 등 설치 기준 상향 및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 시 규제 완화, 자율 감지·회피 기능을 갖춘 주차로봇은 높이 10cm 이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해석

⑤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한 선 출하 후 품질관리 시행(식약처)

기 존 인슐린 제제가 수입됐으나 시험검사기관의 문제로 품질검사가 불가능하여 의약품이 출하되지 못할 우려 발생, 국가필수의약품이면 제조원 성적서로 수입자 품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지만 인슐린 제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

개 선 인슐린 제제는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으로서 공급 중단 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원 시험검사 성적서가 적합한 경우 먼저 출하하고 수입자 품질검사 결과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허용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8일간(11.6~11.14) 5,461명 참여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1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

- 신기술 규제개선으로 국민 피해 예방



용*보**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져서 해마다 피해액이 늘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범죄 피해가 줄어들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2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용량 변경 시 형식승인 면제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연간 약 138억 원의 간접효과)



ca***ue**
방제 자재·약제 업체는 공급하던 양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제도개선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3 보훈회관을 특정인 대상 경로당으로 인정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

- 248개 보훈회관에서 4만여 명 지원 가능



아*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게 하루의 기본이 되는 '식사'를 안정적으로 챙겨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책이네요.

4 EV·자율주행 등 차량 확산에 대비한 미래형 스마트주차장 기반 마련

- 기계식주차장 주차 가능 전기차 비율 확대 (16.7%→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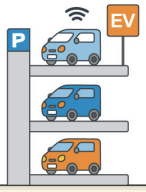

킴*
전기차 정비를 배우고 있어서 이런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미래 교통 준비를 정부가 미리 해둔다는 게 든든하네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5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한 先 출하 후 품질관리 시행

- 인슐린 제제 공급 안정화로 당뇨병 환자 피해 예방



in****ce**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라 공급이 중단되면 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해결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

3 | 규제혁신 정책홍보협의회

최원석 서기관 Tel. 044-200-2366

1 추진배경

규제혁신 정책홍보협의회는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실과 각 부처의 규제혁신 담당부서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된 회의로,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정책과 홍보방안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2 개요 및 안건

'25년 규제혁신 정책홍보협의회는 상반기(3월)와 하반기(10월)에 개최되었다. 안건은 정책홍보협의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협의·공유하기 위한 내용들을 발굴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규제정비 종합계획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안건을, 하반기에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한 3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규제혁신 정책홍보협의회 안건

구분	안건 목록
상반기 (3월)	① 2025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② 2025년 규제혁신평가 시행계획(안) ③ 행정조사 개선방안 ④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 협조 요청 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및 협조 요청 ⑥ 규제혁신추진단 발표과제 정보화시스템 등록 협조 요청
하반기 (10월)	①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안내 ② 2025년 규제합리화 평가 추진 계획 안내 ③ 신산업 규제합리화 추진 관련 협조 요청

07 국제협력

전예진 사무관 Tel. 044-200-2428

1 | 개요

한국은 규제개혁 분야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제도적 성과를 축적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선진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 규제샌드박스 등 한국의 우수한 경험은 동남아, 중남미 등 국가에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혁신 경험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시사점을 제공하며,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도 한국의 정책적 기여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OECD와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정기회의, OECD-ASEAN GRPN(Good Regulatory Practice Network)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규제 거버넌스, 규제 품질 관리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와 기준 설정에 기여해왔다. 또한, OECD의 권고와 지표를 국내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국제 정합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왔다. 향후 한국은 OECD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규제, 지속가능성, 포용적 성장 등 새로운 글로벌 의제에서 규제합리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 | OECD 협력

1 규제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국무조정실은 11월 1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모범규제관행을 확산해나가기 위한 협력의 틀이 제시됐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OECD GRPN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ASEAN 지역 내 규제 거버넌스 구축과 국제 공조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저작권 보호 등 미래 규제환경에 대한 정책 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한국이 ASEAN 지역 내에서 규제정책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2 제32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4월 9일~10일 이틀에 걸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발간을 확정하였다.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의 구체적인 결과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정책평가(iREG)는 38개 회원국의 '21~'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3개 분야로 평가한 결과이다.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하였다. OECD 측의 한국 규제정책 소개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3 제3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11월 18일~19일 양일에 걸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은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약 2,0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축적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령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규제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RPC 회의 기간 중에 Anna Pietikainen OECD 규제정책부서장과 규제총괄정책관 간의 별도 면담도 진행됐다. OECD측은 한국이 공동 주최자로 지원한 제10차 OECD-ASEAN GRPN 회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ASEAN 지역에서 규제정책 협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OECD는 대통령 직속 AI 위원회, 데이터 공유 및 저작권 보호를 포함한 AI 규제 거버넌스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AI·데이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웨비나 공동 개최, ASEAN-OECD GRPN 네트워크의 정례화 및 주제별 온라인 회의 확대 등을 협력 과제로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4 제10차 ASEAN-GRPN 회의

ASEAN-OECD GRPN은 동남아지역 내 모범규제관행을 논의하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 산하 네트워크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외에 한국, 뉴질랜드,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25년은 특히 GRPN 설립 10주년으로 10월 15일~17일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한국은 해당 행사의 공동 주최자로 기여하며 의제 설정, 세션 구성, 발표자 섭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KDI 등이 참여하여 한국의 규제거버넌스, 규제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사후평가 제도, 한국의 AI 규제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GRPN에서 규제정책의 효과적 운영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많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정책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OECD도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이번 행사 및 GRPN 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 의사를 표명하였다.

5 공동 화상 세미나(Webinar) 개최

한국은 OECD 규제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 18일~19일 양일간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모범규제관행을 확산하기 위한 규제협력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는 ASEAN 및 OECD 국가 정책담당자, 규제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OECD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 등이 무역협정 내 모범규제관행의 역할과 현황을 발제했다. OECD는 무역협정 내 GRP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을 설명했으며, 말레이시아, 영국, 뉴질랜드 정부 대표는 자국 무역협정 내 GRP 조항을 반영한 사례와 관련 법·제도·정책 효과 등을 소개했다. 한국측 대표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참여했으며, 최근 무역협정 내 GRP의 제도화 흐름과 국제 규범 내 GRP 요소들을 조망하며,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를 공유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측은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개혁 거버넌스,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규제심사제도와 비용-편익 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도구들을 소개했다.

3 | 미주개발은행(IDB) 협력

국무조정실은 9월 9일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제도와 규제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었으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규제·법제 분야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2일차인 9월 9일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하며,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03 신설·강화 규제심사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주요 결과 ····· 136
2. 규제영향분석 ····· 200

2025 규제개혁백서

PART. 03

신설·강화 규제심사



0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주요 결과

천해선 사무관 Tel. 044-200-2414

1 | 요약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806건(중요규제 99건, 비중요규제 707건)을 심사하여 이 중 3건은 철회권고, 70건은 개선권고, 13건은 부대권고를 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를 개선하였다.

'25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심사 결과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	15	7	8	1	5	1	1
경찰청	5	6	6	0	0	0	0	0
고용노동부	10	17	10	7	0	1	3	3
공정거래위원회	10	12	6	6	0	5	1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43	40	3	0	3	0	0
관세청	2	2	1	1	0	1	0	0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교육부	11	20	16	4	0	4	0	0
국가보훈부	1	1	1	0	0	0	0	0
국가유산청	5	11	10	1	0	1	0	0
국방부	2	2	2	0	0	0	0	0
국토교통부	60	124	111	13	0	9	2	2
금융감독원	3	3	3	0	0	0	0	0
금융위원회	25	39	36	3	0	2	1	0
기상청	3	6	6	0	0	0	0	0
기획재정부	3	3	3	0	0	0	0	0
기후에너지환경부	48	107	95	12	0	9	2	1
농림축산식품부	29	57	50	7	0	6	0	1
농촌진흥청	2	3	3	0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16	25	25	0	0	0	0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7	7	0	0	0	0	0
법무부	4	5	5	0	0	0	0	0
보건복지부	42	79	74	5	0	2	0	3
산림청	4	6	6	0	0	0	0	0
산업통상부	11	16	14	2	0	2	0	0
소방청	16	22	19	3	0	3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39	69	54	15	2	9	3	1
성평등가족부	4	5	4	1	0	1	0	0
외교부	1	1	1	0	0	0	0	0
우주항공청	1	3	3	0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4	9	9	0	0	0	0	0
인사혁신처	1	2	2	0	0	0	0	0
재외동포청	1	1	1	0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5	5	4	1	0	1	0	0
지식재산처	2	7	3	4	0	4	0	0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질병관리청	4	4	3	1	0	0	0	1
해양경찰청	4	5	5	0	0	0	0	0
해양수산부	36	51	50	1	0	1	0	0
행정안전부	6	13	12	1	0	1	0	0
계	**452**	**806**	**707**	**99**	**3**	**70**	**13**	**13**

2 | 경제분과위 심사결과

가. 공정거래위원회

송경준 사무관 Tel. 044-200-2398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0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 중 5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건은 부대권고,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1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10.)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2.2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7.)	개선권고 1	신설 1 (비중요 1)
(5)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4.06.)	부대권고 1	강화1 (중요 1)
(6)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12.2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개선권고 5 부대권고 1 원안의결 6	신설 10, 강화 2 (중요 6, 비중요 6)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정기결제 대금 유료 전환 또는 증액시 사전 동의 등 기간 (신설)

- 정기결제 대금 유료 전환·증액 이전 소비자 동의를 받고 해지 조건·방법을 고지해야 하는 기간을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 내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내로 규정

심사결과 재화등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동의기간은 최초 계약 후 재동의에 따른 사업자 부담, 무료체험 감소 등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를 고려하여 '30일 내(대금 증액 시와 동일)'로 확대할 것과 2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소비자 선택·결정의 변경 요구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 (신설)

-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반복 요구 행위를 금지하되,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 예외 인정

심사결과 단순 정보제공인 광고·공지의 금지 선택 기간이 통상 1~3일인 점 고려 시 소비자 결정 사항의 변경 요구 금지를 7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규제 도입에 따른 시장의 행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2년의 재검토기한을 것을 **개선권고**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심사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신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파생상품 거래 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둠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계열사 발행)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② 거래의 실질상 파생상품의 매도인이 금융기관(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 포함)인 경우

심사결과 정상적 효용을 가진 파생상품 거래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유형, 예시를 구체적으로 고시에 반영할 것과 기업의 자금 조달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 고시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것을 **개선권고**

(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심사내용 중요정보 표시·광고 대상 추가 (강화)

- ① 적립식 여행업은 기존에 여행업종으로서 적용받던 중요정보 광고 의무 외에 상조업종의 표시·광고 의무까지 추가하여 적용하고 ② 체육시설 운영업종 적용범위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여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표시·광고 의무 부과

심사결과 ① 적립식 여행업은 긴 납입기간을 설정하여 대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환급금 등에 대해 표시·광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 ② 체육교습업 또한, ▵교습비 등에 대한 분쟁 방지 필요성이 있고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적용되는 게시항목 대비 체육교습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업자들의 준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립식 여행업과 체육교습업에 대해 규제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을 **부대권고**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하늘 사무관 Tel. 044-200-2424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총 20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4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3건 중 3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4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0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신설 6 (중요 1, 비중요 5)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5.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7.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2)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9.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10.20.)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1.0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2 (중요 1, 비중요 2)
(15)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19)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12.30.)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계		개선권고 3 원안의결 40	신설 36, 강화 7 (중요 3, 비중요 40)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심사내용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플랫폼 사업자 기준(신설)

- 직전 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법령·약관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매출액 하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출액은 많으나 이용자 수가 적은 기업(분쟁가능성 낮은 기업)도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외에 이용자 수 기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 월평균 1만 명 이상)도 함께 적용하도록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심사내용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신설)

-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총 13종)의 충전단자로 USB C-type 사용을 의무화

심사결과 13종의 기자재 생산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3종 기자대 전부에 대해 유예기간 1년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요건
-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보안관련 인적·기술적 요건을 상향하고, 자본금 요건의 경우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심사결과 기술적·인적 요건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나, 자본금 요건을 일시에 3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기대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시장 경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자본금 기준을 1억 원으로 수정하여 시행할 것을 **개선권고**

다. 관세청

송경준 사무관 Tel. 044-200-2398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등 총 2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 중 1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5.25.)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심사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횟수를 연간 총 5회로 제한(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발급 횟수 합산)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만료 후 1개월 경과 시 부호관리자가 부호를 해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부호 도용 피해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호의 부정 발급·사용 등에 있어 부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 횟수 제한 규정의 예외를 두고, 유효기간 만료 전 부호관리자가 사용자에게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을 **개선권고**

라. 국토교통부

강하늘 사무관 Tel. 044-200-2424
김동현 사무관 Tel. 044-200-2423
성연주 사무관 Tel. 044-200-2420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 총 60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12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4건 중 9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2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 11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01.13.)	원안의결 11	신설 11 (비중요 11)
(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24.)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2.17.)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5.03.31.)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2)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4.14.)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4.14.)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4.2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7	신설 8 (중요 2, 비중요 6)
(17) 건설기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8.)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9)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4.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개정안	예비심사 (2025.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5.20.)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26.)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6.02.)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심사 (2025.06.1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개정안	본위원회심사 (2025.06.1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6.23.)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3) 주차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3)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6)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10.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4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50)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3)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1.1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5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8)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0)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계		개선권고 9 부대권고 2 원안의결 113	신설 90, 강화 34 (중요 13, 비중요 111)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심사내용 주택 건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친환경 조건 강화(강화)

- 민간이 30세대 이상 분양 시 주택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을 ZEB(Zero-Energy Building) 로드맵에 따라 ZEB 5등급 수준으로 규정
- 설계조건은 성능기준(100㎾h/㎡·yr) 시방기준(성능기준 수준의 효율을 확보하는 구조)으로 구분되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인정

심사결과 고층 빌딩은 옥상 설치만으로 태양광 시방기준을 충족하기 곤란하고, 벽면 태양광 패널(BIPV) 설치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BIPV 외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소규모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권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기준 신설 (신설)

- 자동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자동차도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작 시 갖추어야 할 성능인증 및 운행목적, 운행계획의 적합성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성능인증의 경우,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새로운 인증제도의 도입이며 국민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실질적으로 차량의 제작·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술영향평가 기술규제위원회 심의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업계와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한 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적합성 승인의 경우, 레벨4 자율차의 적합성 승인과 관련 없는 일반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적합성 승인 일반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 운수권 배분 배제(신설)

-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테러·천재지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사망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 배제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내 항공기 사망사고 사례, 안전체계 재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운수권 배분배제가 과도하지는 않으나, 안전강화 목적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운수권의 배제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없이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분 배제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여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심의 기준을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

마. 금융감독원

한재찬 전문위원 Tel. 044-200-2413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총 3개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바. 금융위원회

한재찬 전문위원 Tel. 044-200-2413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금융투자업규정 등 총 25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3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9건 중 2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건에 대하여 부대권고, 3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0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8)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6.1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1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2.19.)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2, 강화 2 (중요 2, 비중요 2)
(2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2 부대권고 1 원안의결 36	신설 24, 강화 15 (중요 3, 비중요 36)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대부업 등의 요건 (강화)

- 법인이 지자체 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최소 자기자본을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온라인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인력·전산설비 요건을 규정

심사결과 불법 사금융업자 난립 방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 및 인력요건 등을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향 조정한 자기자본 수준은 금융기관 필요 자본요건의 하한에 해당하여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지 않으며, 전산인력 확보 및 정보보안 등 관련 설비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추가 비용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도 인정됨. 다만,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관련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사항 점검 등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2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심사내용 보험회사 등의 준수사항 (신설)

- 보험사가 고객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전속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구분하여 장기(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유지관리수수료는 도입 초기 설계사 소득보전을 위해 '27~'28년 중에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2% 이내로 4년 분할 지급(다만, 신인설계사들의 소득 공백 보전을 위해 1년간 지급하는 지원금은 동 수수료 규제 준수 여부 산정시 제외)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및 중기영향평가 의견, 금융위 및 보험사 수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신인설계사 지원금의 경우 신인설계사 육성의 중요성 및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신인설계사 지원금을 수수료 산정 시 제외할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며, 보험대리점도 현행 수준으로 신인설계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지급 한도 적용 (신설)

-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해 전속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으로 1,200%룰(월 납입보험료의 12배)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집행기준을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동일하게 규율

심사결과 보험대리점이 자율규제 등으로 규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점, 과당경쟁 지속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연장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다만, 보험대리점이 1,200%룰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로부터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후 보험대리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면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사. 기획재정부

송경준 사무관 Tel. 044-200-2398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등 총 3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10.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아. 농림축산식품부

정연호 사무관 Tel. 044-200-2885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29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5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7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5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13.)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2)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14.)	개선권고 2	강화 2 (중요 2)
(6)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1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3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5.04.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4.13.)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2)
(11)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농산물 검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0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6)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6.15.)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1 (중요 1, 비중요 2)
(18)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8	신설 5, 강화 3 (비중요 8)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8.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3)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5.10.2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4)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5.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11.2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9)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개선권고 6 원안의결 51	신설 30, 강화 27 (중요 7, 비중요 50)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 및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①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 (강화)

-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신청 시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허가·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 휴업기간을 정한 영업자가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 하는 경우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삭제

②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에서 사육·관리·보호하는 번식 목적의 개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토록 의무화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토록 의무화

심사결과

①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 (강화)

-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허가·등록 조건도 임의로 부여할 수 있어 일선현장에서 과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서류의 범위, 형식 등을 구체화하고 허가·등록 조건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휴업기간을 정한 영업자가 재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가능한 행정조치 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영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한을 정한 휴업에 한해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을 **개선권고**

②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번식용 개에 한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 침해 우려가 있어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동물판매자에게 직접 전달을 의무화 할 경우 법상 허용된 동물 운송업자의 영업이 사실상 제한되어 동물보호 증진을 위해 직접 대면 후 판매·전달토록 하되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은 허용토록 **개선권고**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로 일반 동물판매업의 사육실, 격리실을 추가 지정 (강화)

- 동물판매업의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장소에 일반판매업(펫숍)의 사육실 및 격리실을 추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일반 동물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의 구체적 통계나 실태조사 없이 CCTV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 동물판매업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 및 관련업계 협의를 통해 CCTV 설치대상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을 **개선권고**

(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고 종계 병아리 또는 육성계를 사육하는 자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준수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가축사육업자와 종계업자 간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규정은 삭제하되,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적용 대상에 이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자. 농촌진흥청

성연주 사무관 Tel. 044-200-2420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등 2건의 법령·행정규칙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강하늘 사무관 Tel. 044-200-2424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등 항공 총 5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5.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09.)	원안의결 2	신설 1 (비중요 1)
(5)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9.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7	신설 6, 강화 1 (비중요 7)

카. 산림청

김동현 사무관 Tel. 044-200-2399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4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규정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타. 산업통상부

송경준 사무관 Tel. 044-200-2398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등 총 11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1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6건 중 2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01.06.)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4 (중요 2, 비중요 2)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4.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4	신설 8, 강화 8 (중요 2, 비중요 14)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심사내용 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신설)

-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을 신설하면서 ① 시설 등에 대한 기준으로 교육실습에 필요한 장비,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② 지정신청 시 첨부 서류로 기업 조직도, 활동 개요서 등을 규정

  *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부서를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로 지정

심사결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규모는 교육 대상 규모,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로 수정하고, 기업의 조직도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외부공개가 어려운 정보일 수 있으며, 지정에 필수적인 서류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출 서류에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설)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기준 등을 신설하면서 ① 4명 이상의 전문인력 ② 3백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 등을 규정

  *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연수 및 교육, 전문양성인에 대한 연수 및 교육, 첨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 수행

심사결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규모는 교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3백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을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으로 갖출 것'으로 수정하고, 변화가 빠른 첨단산업 특성상 교육과정에 있어 탄력적인 교육인력 운영이 필요하므로 전문인력 보유 인정기준 4명에 비상근인력도 포함할 것을 **개선권고**

파. 우주항공청

강하늘 사무관 Tel. 044-200-2424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3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하. 중소벤처기업부

최형옥 사무관 Tel. 044-200-2421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등 총 5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중 1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7.2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4, 강화 1 (중요 1, 비중요 4)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심사내용 경영지도사 양성주관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신설)

- 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규정함

* ①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분야의 진단과 지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 2명 이상, ②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 3명 이상,

** ③ 교육생 4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시설과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 포함)

심사결과 ① 상위법령인 「경영지도사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5에서 지도사 양성과정의 강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성주관기관의 강사요건으로, 지정교육기관은 제정안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지도사 양성과정의 강사요건을 준용 ② 관리인력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 관리인력의 인원수(3명)를 삭제 ③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점, 교육수요자의 규모가 상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설 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을 갖추되, 강의시설의 임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거. 지식재산처

최형옥 사무관 Tel. 044-200-2421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개정안 등 총 2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4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2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1.23.)	개선권고 3 원안의결 3	신설 4, 강화 2 (중요 3, 비중요 3)
계		개선권고 4 원안의결 3	신설 5, 강화 2 (중요 4, 비중요 3)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 제정안

심사내용 교육명령 이수기준 및 원칙 명시 (신설)

- 부정경쟁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교육명령 세부사항으로 ① 4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으로 필요시 가산 가능 ② 교육 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

* 영업주체가 사업활동 시 정당한 대가의 지불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 상의 우위를 확보하여 타인의 영업상 신용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심사결과 교육시간을 필요 시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식재산처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예측이 가능하도록 1회에 한하여 4시간 범위 내에서 가산하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과 교육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 것은 교육 대상자에게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개정안

심사내용 결강 후 교육 보충 시 출석 인정시간 축소 (신설)

-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결강을 승인받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과제물 또는 보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결강한 강의에 준하는 교육 내용을 보충한 경우 최대 24시간(현행 전체 교육시간의 1/10, 25~26시간)을 출석으로 인정

심사결과 결강 인정시간(1~2시간) 축소의 편익은 미미한 반면, 교육생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판단되어 출석 인정시간은 현행과 같이 전체 교육시간(250시간)의 1/10을 유지하되, 규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이를 25시간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집합교육 불인정 사유 (강화)

- 집합교육 과목별 이수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 불인정 사유로 ① 집합교육 대상자가 강사 또는 집합교육기관에 소속된 집합교육 담당자의 수업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 ② 실습과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① 수업 주체인 강사가 아닌 집합교육 담당자의 조치가 수업실적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집합교육 담당자의 지시 불이행은 집합교육 불인정 사유에서 제외할 것 ② 정당한 사유와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 침해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과 같이 전체 과제의 2분의 1 이상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현장연수 신청 시정기한 규정 (신설)

- 부적격 현장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를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예비 변리사)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연수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심사결과 예비 변리사가 현장연수가 가능한 기관을 쉽게 신청하고 원하는 시기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행정청의 책무로 이를 예비 변리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14일의 시정기한과 해당기간 도과 시 현장연수 신청 불인정 규정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너. 해양경찰청

김민주 사무관 Tel. 044-200-2441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등 총 4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중 5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3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더. 해양수산부

김민주 사무관 Tel. 044-200-2441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 기준 제정안 등 총 36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5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1건 중 1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5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1.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4)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31.)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8)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4.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해양수산 연구 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8.11.)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23) 연근해어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4)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9.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7)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1)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의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5.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5.12.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0	신설 44, 강화 7 (중요 1, 비중요 50)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정안

심사내용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요건 (신설)

-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종별수협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해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을 규정

* 업종별수협이 신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①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미해당, ②경제사업규모 200억 원 이상, ③자기자본 15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심사결과 ① 제도 운영 시 보완사항 점검 등을 위해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②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당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할 것을 **부대권고**

3 | 행정사회분과위 심사결과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용균 사무관 Tel. 044-200-2913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총 7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1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5건 중 1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5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건에 대하여 부대권고,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2)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2.21.)	개선권고 3	신설 3 (중요 3)
(4)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2.21.)	개선권고 1	신설 1 (비중요 1)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2.24.)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강화 3 (중요 3)
계		철회권고 1 개선권고 5 부대권고 1 원안의결 8	신설 11, 강화 4 (중요 7, 비중요 8)

2 2025년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심사내용 일반수신자의 기준 (신설)

-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 요건을 ▲전송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보호체계(내부관리계획, 전송이력 기록·보관 및 점검, 접근통제 체계 등)로 구분

심사결과 일반수신자 및 전문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술요건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동 고시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재검토기한(3년) 도래 시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기준 (신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유형별(일반/특수/중계전문기관) 설비 및 기술요건 규정

심사결과 일반수신자 및 전문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술요건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동 고시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재검토기한(3년) 도래 시 동 고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 (신설)

- ▲전문기관 지정심사 절차로 서류·현장심사, 종합심사 규정 ▲지정권자로 하여금 지정 신청을 받은 다음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통지토록 규정

심사결과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현장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제1항)한 것은, 설비·기술 요건의 구현 여부를 확인하는데 서류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과 유사사례(금융마이데이터)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 전문기관 지정 심사기간(제2항)의 경우, 사업자 이익 보호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마이데이터와 동일하게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2개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

(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심사내용 보건의료 분야 전송 요구 대상 정보 (신설)

- 보건의료 분야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예방접종정보(전체기간, 질병청) ▲건강검진정보(10년) 및 진료내용정보(1년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투약이력정보(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전송 정보 세부 항목에서 의료기관 명칭 등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공공기관 제공 정보는 향후 인프라 상황에 따라 전송 정보 항목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과, 재검토기한 도래 시 동 고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부대권고**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본인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범위 (강화)

- (정보전송자) ▲연간 매출액 등이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재학생 2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 (전송정보) 모든 산업 분야 및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조회 가능한 정보
- (전송정보 제외대상)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된 정보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제외

심사결과 중소기업 부담을 감안하여, 본인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인 '연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연 매출액 1,800억 원 초과'로 수정할 것과, 상기 기준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마이데이터 활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준을 정보전송자 대상에서 삭제하고, 개인정보위가 정보전송자 대상을 정하여 고시토록 한 것은 피규제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아울러, 정보전송 비용 부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본인전송 요구권'에 대한 과금(수수료)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 개정안은 전송정보 범위에서 영업비밀 정보 등을 제외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 다만,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정보주체 본인이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제42조의4 제1항 제1호'

부분은 모법(제35조의2 제7항)에서 '전송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과, 안 제4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제3자'를 '타인'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전문기관 등을 통한 본인전송요구 대리 (강화)

- 정보전송자는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거절해서는 안됨
- 대리인인 전문기관 등은 수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업무에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임받아 관리·분석하는 업무 추가

심사결과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본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달을 넘어 수신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법(제38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기관 등의 대리인 역할은 본인전송 요구와 수신한 정보의 전달에만 한정하고, 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고시·지침 등 형태로 구체화할 것을 **부대권고**
- 법 시행령에 전문기관의 업무 중 하나로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인전송 정보에 대한 관리·분석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인전송 요구와 제3자전송 요구'를 구분하고 있는 모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 정보주체와 전문기관 간 사적 계약을 통해 본인전송정보 관리·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철회권고**

심사내용 개인정보 전송 방법 (강화)

-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 이용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 전송

심사결과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사전협의한 방식'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본인전송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자동화도구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됨

- 다만, '사전협의한 방식'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협의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지침 등에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나. 경찰청

김현종 사무관 Tel. 044-200-2436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제정안	예비심사 (2025.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다. 고용노동부

강 철 사무관 Tel. 044-200-2439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0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1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7건 중 1건은 개선권고, 3건은 부대권고, 1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7.1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강화 4 (중요 4)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1.03.)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9) 고용보험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1.03.)	부대권고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10)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부대권고 2	신설 2 (비중요 2)
계		개선권고 1 부대권고 5 원안의결 11	신설 7, 강화 10 (중요 7, 비중요 10)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폭염작업을 정의하고 체감온도 측정기준을 정하며 실내 폭염작업 시 온·습도 조절 등 의무를 부과,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옥외 폭염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항을 정함(강화)

-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심사결과 고용노동부는 기존 규개위가 권고한 장시간 작업 등을 구체화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고, 올 여름 역대급 폭염확산으로 근로자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원안동의.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분석하여 동 조문의 적합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 1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내용 상용근로자 월 보수 등의 신고 (강화)
- 사업주가 상용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매월 근로자 보수를 신고토록 하는 개정안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시행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세청 신고 시 근로복지공단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장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다만,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확충·보완할 것을 **부대권고**

(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사내용 고용보험 근로자의 적용기준 개편(강화), 소득기준 미달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신설)
-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
- 소득기준 미달 근로자에게 소득합산 신청을 통한 피보험자격 취득 기회 부여 및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심사결과 (적용기준 개편) 지난 30년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 온 고용보험이 '소득기준'으로 전환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것, (소득합산 신청) 지침 등을 통해 가입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것을 **부대권고**

라. 교육부

임대종 사무관 Tel. 044-200-2447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총 11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2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0건 중 4건은 개선권고, 1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24.)	개선권고 3	신설 2, 강화 1 (중요 3)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5.09.01.)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10)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2.0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개선권고 4 원안의결 16	신설 16, 강화 4 (중요 4, 비중요 16)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사내용 의료과정운영 학교에 대한 불인증 유예(신설)

-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시 사전 고지(신설)
-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및 업무 공백 시 교육부장관에 사전 통보(강화)

심사결과 (불인증 유예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전단에 인정기관이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사전 고지 관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전고지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것, (업무 공백 시 사전 통보 관련) 현행 1주일 이내 사후통보를 사전통보로 개정하여야 할 충분한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내용을 철회할 것을 **개선권고**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경우'를 추가(신설)

심사결과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경우'를 학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개정안에 입학 취소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

마. 국가보훈부

강 철 사무관 Tel. 044-200-2439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 중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바. 국가유산청

강 철 사무관 Tel. 044-200-2439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안 등 총 5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1건은 개선권고, 1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2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0	신설 11 (중요 1, 비중요 10)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심사내용 영향 진단보고서 포함 사항, 보완요청 사유, 작성 시 준수사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신설)

- 진단보고서 포함 사항으로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자료,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심사결과

- 기존 개정안의 '시·도지정문화(자연)유산' 및 '문화(자연)유산자료'는 이를 영향진단보고서에 포함토록 의무화할 이유가 충분치 않으므로 삭제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에 대한 영향진단 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 기준 초과 여부를 진단보고서의 포함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사. 국방부

김현종 사무관 Tel. 044-200-2436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총 2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군인연금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아. 기상청

하윤정 사무관 Tel. 044-200-2425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3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중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9.)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계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1 (비중요 6)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수현 사무관 Tel. 044-200-2443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48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10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7건 중 9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2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 9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13.)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1 (비중요 6)
(2)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5.01.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17.)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4)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17.)	원안의결 5 개선권고 2	신설 7 (중요 2, 비중요 5)
(5)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0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4.14.)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1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5.19.)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5.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6.3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6)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6.3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7.14.)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7.21.)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9)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7	신설 1, 강화 6 (비중요 7)
(22)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5.08.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4)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9.05.)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6)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9.05.)	원안의결 1 부대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8)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9.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3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5) 백색목록 지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7.)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3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8)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9)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0)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8.)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2)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2.15.)	원안의결 10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9 (중요 1, 비중요 10)
(43)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4)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7)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8)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9 부대권고 2 원안의결 96	신설 70, 강화 37 (중요 11, 비중요 96)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 (신설)

-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을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자로 규정

심사결과

- 개정안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규제 대상 기업 규모, 최종제품의 원가 상승 정도 등 고려 시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원안동의**
- 다만, 개정안은 의무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바,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

(나)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사내용 전기차 제작자의 자체 인력·장비 보유 의무 (강화)

- 배출가스·소음 인증시험에 필요한 자체 인력·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의 면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어린이통학 용도를 제외한 전기승용차(버스 포함) 제작자는 자체 인력·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심사결과

- 현재 전기차 시장 변화와 전기차 성능개선 수요, 내연차와의 규제 형평성 등 고려 시, 전기차 제작자의 자체 인력·장비 보유 의무를 배제할 타당성이 높지 않으나, 전기차 제작자가 개정안에 따른 자체 인력·장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 한편, 내연차를 중심으로 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시험 시설 및 인력'을 전기차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전기차의 구조·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인력·장비 기준을 규정하도록 **부대권고**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심사내용 배전반, 분전반 설치 기준 (강화)

- 비주택용 배·분전반을 포함하여 모든 배·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옥외로 연결되는 배관·배선 등을 통하여 분전반 내부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심사결과

- 개정안 232.84.다.의 배·분전반 설치 가능 장소에 "EPS실·TPS실 등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리자 점검이 가능한 곳"을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차. 문화체육관광부

조대웅 사무관 Tel. 044-200-2445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관광법 시행규칙 등 총 16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2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안건 2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관관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3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25	신설 19, 강화 6 (비중요 25)

카. 법무부

김현종 사무관 Tel. 044-200-2436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타. 보건복지부

김동현 사무관 Tel. 044-200-2339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등 총 42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7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9건 중 2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7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1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17.)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4, 강화 1 (비중요 4, 중요 1)
(3)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4)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8	신설 3, 강화 5 (비중요 8)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0.)	원안의결 1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3	신설 1 (비중요 1)
(7)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05.)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03.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5)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9.01.)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5.09.1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20.)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3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5.10.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5)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6)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2.2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4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개선권고 2 원안의결 77	신설 60, 강화 19 (중요 5, 비중요 74)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실시기준 설정 (신설)

-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설정(치료 전 단계, 치료 단계, 사후관리 단계별 실시기준)

심사결과

-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하되,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새로운 의료기술 실시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 3년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대불 청구의 심사기준 추가 (강화)

- 조정중재원의 대불청구* 심사 시 기준 추가(재산 확인 및 강제집행절차 이행 여부,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예상액,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및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 의료분쟁 합의·조정·중재 등에 따라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가 자력(資力)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심사결과

- '강제집행절차 이행 여부'를 삭제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 지급 청구 여부'로 완화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심사내용 원격대학 등의 언어재활 관련 현장실습과목 기준 (신설)

- 원격대학 등(원격대학·대학원)의 언어재활 관련 현장실습과목 기준(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등 3개 과목과 지도교수 자격, 실습 인원 비율, 실습실 환경 등의 운영기준 규정)

심사결과

- 개정안 기준은 현행 민간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원격대학의 실습환경 미비를 지적한 판결의 취지, 언어재활사협회 등의 원격대학 실습의 품질 향상 요구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파. 소방청

조대웅 사무관 Tel. 044-200-2445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16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2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안건 22건 중 3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소방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1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10.)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3)
(3)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1.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31.)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5)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9.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0.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5)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9 개선권고 3	신설 9, 강화 13 (중요 3, 비중요 19)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재실자 밀도를 통한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신설)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수용인원은 바닥면적(㎡)을 재실자 밀도(㎡/명)로 나눈 값으로,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방식의 수용인원은 지상·지하층 모두 바닥면적(㎡)에서 재실자 밀도(㎡/명)로 나눈 값으로 통일하도록 규정

  ※ 수용인원 : (현행) 면적(㎡) × 거주밀도(명/㎡) → (개정) 면적(㎡) ÷ 재실자밀도(㎡/명)
  피난안전구역 : (현행) 수용인원(명) × 0.1 × 0.28㎡ → (개정) 현행과 같음

심사결과 개정안은 적용기준을 통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재실자 밀도 방식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이 감소할 수 있어 인명피해의 우려도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층의 수용인원과 피난안전구역 면적의 산정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거주밀도 방식을 적용할 것을 **개선권고**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최초 실무교육 (신설)

-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에 최초로 받는 실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시간을 16시간으로 규정

심사결과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리 업무 일부를 전문업체에 대행시키기 때문에 일반 소방안전관리자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이나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나 적정성이 불충분하고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대종 사무관 Tel. 044-200-2447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39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6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9건 중 2건은 철회권고, 9건은 개선권고, 3건은 부대권고, 5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17.)	개선권고 2 원안의결 5	신설 7 (중요 2, 비중요 5)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1.17.)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1.2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2.07.)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6)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0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5.03.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디지털 의료 제품 허가·인증·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4.0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5)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5.04.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4.14.)	철회권고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17)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5.04.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07.)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2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5.07.)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2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4)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06.0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6)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29)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5.07.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3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2)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2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4)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8.2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10.27.)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신설 5 (중요 3, 비중요 2)
(3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1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8)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5.12.15.)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3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5.12.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철회권고 2 개선권고 9 부대권고 3 원안의결 55	신설 51, 강화 18 (중요 17, 비중요 52)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위해성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판매정지 등 처분(신설)

심사결과 개정안 제51호 가목은 관리의무 일부 미실시를 전부 미실시와 동일하게 처분하여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바, 일부 미실시의 경우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할 것을 **개선권고**

(나)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사내용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세부 인증 기준 규정(신설)
-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안 [별표1])은 구체적인 항목 및 세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우수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안 제9조)은 재인증 시 유효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할 것과 피규제자의 인증 신청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 처리기한을 명시(안 제7조)할 것을 **개선권고**

(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심사내용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절차 및 결과제출 의무(신설)

- 제조자 등은 판매 중인 담배의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게 의뢰하고, 판매가격 신고 후 판매를 개시하는 신규 출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

  * 다만, 「담배 유해성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조자등은 첫 정기검사를 '26.1.31.까지 의뢰하여야 함

- 제조사 등은 검사결과서와 담배 제조 시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에 포함된 성분 명칭을 검사결과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 담배 원료·첨가물 관련 정보보호를 위해, 시행규칙 제정안에 비밀유지의무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 추후 모법에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것 ▵신규 출시 담배의 검사 의뢰 의무 및 시기에 대한 모법상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추후 법제처와 협의하여 위임일탈의 우려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 ▵유해성분 검사결과가 담배 제조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 제2조에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에 대한 피규제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거. 성평등가족부

하윤정 사무관 Tel. 044-200-2425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중 1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성평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3.31.)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4.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5.08.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4)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신설)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인 센터장, 팀장, 팀원의 자격으로 자격증, 경력, 학력 등 기준 규정

심사결과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원의 자격기준으로 9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경력자를 추가하여 종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급수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급수로 자격기준을 정한 내용은 삭제하며, 자격기준 중 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역 간 또는 대상자 등에 따라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등적용 하도록 **개선권고**

너. 외교부

안중진 주무관 Tel. 044-200-2442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외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더. 원자력안전위원회

강 철 사무관 Tel. 044-200-2439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2.)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1 (비중요 3)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원안의결 9	강화 6, 신설 3 (비중요 9)

러. 인사혁신처

김현종 사무관 Tel. 044-200-2436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11.1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계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머. 재외동포청

안중진 주무관 Tel. 044-200-2442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5.03.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버. 질병관리청

김동현 사무관 Tel. 044-200-2339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08.25.)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5.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중요 1, 비중요 3)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심사내용 신고 대상 제1급 감염병 추가(강화)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1급 감염병에 '니파바이러스 감염증(Nipah virus infection)' 추가

심사결과

-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높고,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고위험 병원체로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점이 인정되고, 질병청은 관련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급 감염병 지정을 결정하였으며 신고·진단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적정하게 규정된 점을 고려, **원안동의**

서. 행정안전부

조대웅 사무관 Tel. 044-200-2445

1 2025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25년에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 총 6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1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안건 13건 중 1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19.)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2)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5.05.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1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5.06.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5.07.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5.11.11.)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2	신설 7, 강화 6 (중요 1, 비중요 12)

2 2025년 주요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개정안

심사내용 기업재난관리사 자격관리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과 관련한 결격사유,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 자격대여 금지,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기준 규정

심사결과 (결격사유) 업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피성년후견인과 이 법을 위반한 범법자에 대하여 국가자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질서 및 신뢰 유지 등을 위해 2년간 자격취득의 제한은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 시험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부정 응시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억제력 발휘를 위해 자격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 응시자의 윤리적 성찰과 사회적 신뢰의 회복 기간을 고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자격대여) 국민의 생명·재산이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자격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며, 국가 「자격기본법」에서도 자격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안동의**

(자격 취소) 거짓·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자격을 회수하기 위함이며, 자격대여 행위는 법적 금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수의 자격제도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되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고의·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해 자격 취소만 규정하기보다는, 그 경중·동기·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자격정지를 하거나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행정제재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례원칙에 부합하므로, 자격 취소 외에 자격정지의 근거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02 규제영향분석

천해선 사무관 Tel. 044-200-2414

1 | 제도 개요

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역할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생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목표

(1)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

(2)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과적인 규제의 사전 방지

(3)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규제자의 역량 강화

(4)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롯한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통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

다.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법 제7조2항)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4항)

2 | 작성항목 및 요소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순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에는 △문제 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명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집행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세부항목
규제개요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유형, 입법예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내용,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여부,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비용감축제, 규제정비계획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규제의 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경쟁제한·기술·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비용·편익분석
Ⅲ.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규제의 집행 가능성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경과, 향후 평가계획, 규제정비계획, 종합결론

3 | 작성대상 및 절차

가. 작성 대상 및 유형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에 따라 분석서 작성유형을 표준형과 간이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작성유형	기 준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 명 이상 등) • 명백하게 진입 또는 경쟁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다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규제 • 규제 수준 및 정도가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 기타 비용분석이 필요한 규제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 • 기타 표준형을 제외한 규제

나. 작성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서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 등록단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분석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2항). 다만,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강화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통보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4항 및 5항)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법 제8조의3),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여 차등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19년 7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정할 때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법 제5조의2)

(2)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7조2항, 시행령 제6조3항)

아울러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규제에 대한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대한 국제기준 적합성 등 규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 기술영향평가(산업통상부)

(3)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7조3항) 또한, 자체심사를 할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및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심의

(4) 예비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를 거쳐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예비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1항) 이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2항)

(5)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규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 8개 요건에 해당될 경우(령 제8조의2)

4 |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가.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심사 건에 대해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평가의뢰(국무조정실→작업단), ②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③검토의견 제출(작업단→국무조정실), ④규제심사(국무조정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2021.8.11.)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위) :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부) :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부) :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나. 경쟁영향평가

(1) 개념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추진경과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며 2007년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토록 제도화하였고, 2010년 10월 OECD 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 운용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6월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방법, 평가를 통한 시장경쟁 촉진 사례 및 성과 등을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알렸다.

(3) 목적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 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2025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415개 법령, 730건 규제사무의 신설·강화규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총 14개 법령 16건의 규제에 대해서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6) 2025년 경쟁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자 교육기관을 신설하면서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에 공공기관일 것을 요구	공공기관만을 1급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관련 없이 1급 자격자 교육기관 시장에서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성 존재 ➡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이 아니라도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2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원기술사를 신설하면서, 산림기사·토목기사 자격자는 교육 이수 후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 마련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산림복원사업 진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할 우려가 있는 등 경쟁제한성 존재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격자도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해 산림복원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3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납입자본금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에서 “납입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일 것”으로 강화	납입자본금을 상향하는 것은 잠재적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자의 수 감소로 시장 집중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존재 ➡ 납입자본금을 1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의견 제시
4	해경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인명구조요원 자격 기준에 민간자격증을 폐지하고 수상구조사로 일원화	민간자격폐지는 공급자의 수 및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간 인명구조요원 교육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인명구조요원 채용에 있어서 선택범위를 축소함 ➡ 민간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및 지정이 원활하도록 할 것, 기존 민간 자격자 보호를 위해 국가자격 전환 시 완화된 시험조건을 적용하도록 할 것 등 의견 제시
5	과기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소재지역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역 내 또는 인근 시·군·구에 위치하도록 규정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을 지역 내 또는 인근 시·군·구(기초지자체)에 위치하도록 한정하면 인근 시·도(광역지자체)에 위치한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 ➡ 전담기관 지역요건을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지역 내 또는 인근 시·도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변경하도록 의견 제시

다. 중소기업영향평가

(1) 개념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추진경과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통해 8개 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등화를 검토하고 차등화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법 제8조의2. 2018.4.17.개정 2018.10.17. 시행)

(3) 목적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5) 2025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검토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은 418개 법령의 신설·강화 규제안을 검토하여 31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6) 2025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1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의 유형 지정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 삽입
2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①온도계 비치가 어려운 장소(예:실외작업장)에서는 기상청 날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안, ②주된 작업장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3	기후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유해성미확인물질의 판단기준이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신규화학물질이 해당될 가능성으로 행정부담 가중, 일부 판단기준의 경우 과도하여, 유해성미확인물질 판단기준 완화 및 수량기준 적용 검토
4	기후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영업의 시설 기준	야생동물의 종류별로 생태 습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의 시설 기준 조정 필요
5	기후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①종이팩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방안 마련 후 재활용기준비용 상향 검토, ②재활용기준비용 재검토 조항 신설
6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부당지원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①‘완전모자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시한 사례 제외, ②함께 입찰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오인이 없도록 문구 명확화 검토
7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보험회사등의 준수사항	①개정안이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 제시 ②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매출·소득보전 방안 마련 필요
8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민원다발 온라인쇼핑몰의 공개	①공개대상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한 경우”로 명확화 ②소명자료 제출기간 연장 및 공정위 처리결과의 검토기간 명시
9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중요한 표시·광고 대상 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 추가	요가·필라테스업, 결혼서비스업종의 규제 이행 준비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방안 검토
10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사주 보유규모·처리실적 공시 강화	직전 반기 계획과 다르게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우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예외조항 마련 방안 검토

라. 기술영향평가

(1) 개념

기술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표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적합성 평가(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특히, 과도한 시험·검사·인증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며, 유사한 시험검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시험·검사 해야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 추진경과

'12.7월 국가기술표준원은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도록「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를 위해「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실 훈령 제696호)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에 신설하였다.('12.12월)

명확한 업무처리지침의 설정을 위해 '14.1월 '기술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15.8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신설인증 규제심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모든 신설·강화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15년부터 기술규제 기업애로개선지원단(舊,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기술규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간 약 1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기술규제 합리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3.7월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시 기술영향평가 사항을 검토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였다.

(3) 대상

기술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2025년 기술영향평가 검토결과

산업통상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은 103개 법령, 138개 규제사무를 검토하여 총 88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5) 2025년 기술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1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내장식물의 불연·준불연재료 합격 표시	(규제 효율성 제고 – 기존 제도 활용) 소방청이 기운영 중인 소방용품 형식승인 등에 품목 추가로 운영 권고
2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의 검사 기준 및 방법	(규제 신뢰성 확보 – 규제 오적용 방지) 검사 생략이 가능한 '각종 등화장치 광도와 색도' 등에 대한 기준 명확화 필요
3	기후에너지환경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기냉(난)방기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 기준 조정 등	(규제 신뢰성 확보 – 적용 기준 일치) 전기냉난방기 등의 '최초성능 측정기준'과 '사후관리 검사기준' 일치화 필요
4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기준	(규제 신뢰성 확보 – 법체계 정합화) 시험기관 지정 및 취소 법적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권고
5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심사 규정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인증 ·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규제 신뢰성 확보 – 규제 명확화) 본문 및 표 내 '소프트웨어 안정성 등급' 정의가 상호 일치하도록 수정 필요
6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설치 이격 기준	(피규제자 혼란방지 – 적용대상 명확화) 공고 시행 전 계획 인가 사업자 등은 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권고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피규제자 혼란방지 – 유예기간 현실화) 현재 유통 중인 농약의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시간 부여 검토 필요
8	산업통상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	(피규제자 혼란방지 – 국제 규범 준수)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으로, WTO TBT 통보 필요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9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성능기준 고시	실내장식물의 충족해야 하는 불연·준불연재료 성능기준	(피규제자 혼란방지 – 규제 명확화) “성능인증” 표현 명확화 필요(소방용품 성능인증, KFI 성능인증으로 오인 가능)
10	식품의약품 안전처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피규제자 혼란방지 – 충분한 정보 제공)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자료 및 가이드라인·매뉴얼 등 정보 제공 필요

04 규제합리화 법령·제도 운영

1. 행정규제기본법 ····· 214
2. 규제등록제도 ····· 217
3. 일몰규제 정비 ····· 219
4. 규제비용감축제 ····· 224

2025 규제개혁백서

PART. 04

규제합리화 법령·제도 운영

01 행정규제기본법

유가영 사무관 Tel. 044-200-2429

1 | 입법연혁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8월 공포되고 1998년 3월 1일에 최초 시행되었다. 같은 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심사 도입, 기존규제 정비 등 현재의 규제시스템 체계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후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근거 마련('13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형평 근거 마련('18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19년), 규제샌드박스 절차 통일 및 재검토결과보고서 작성·보존('23년) 등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규제혁신을 뒷받침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연혁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내용
1997.8.22. (1998.3.1.)	△ 행정규제 등록 및 대국민 공표, △규제영향분석제도, △ 기존규제 정비, △신설·강화 시 규제일몰제 △규개위 설치 등
2005.12.29. (2006.6.30.)	△ 규제사무목록 국회 제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존속기한 도래 시 국회 제출, △규개위 위원 증원(20명 → 25명)
2010.1.25. (2010.1.25.)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13.7.16. (2013.8.17.)	△ 재검토형 일몰제 근거 마련
2015.5.18. (2015.5.18.)	△ 규제영향분석 시 중소기업 영향 고려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내용
2017.11.28. (2018.3.1.)	△ 과징금·과태료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2018.4.17. (2018.10.18.)	△ 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차등적용, △규제정비 요청 처리절차(규제개혁신문고), △ 연관규제 개선, △규개위 회의록 공개
2019.4.16. (2019.7.17.)	△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도입 시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 우선 고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2023.7.11. (2024.1.12.)	△ 재검토기한 미설정사유 소명 의무화, △재검토결과보고서 작성·보존·공개, △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통일, △규개위 개의요건 신설 등

2 | 2025년 개정 추진사항

이재명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국정과제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첫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한다.

둘째, 기존규제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결과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공무원이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제22대 국회에 계류('25년 12월 말 기준)되어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24.12.23.	규제 정비 요청이나 타 행정기관 소관 규제 관련 의견 제출 시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25.4.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사항으로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25.7.9.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인증 총량제 도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5.8.1.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 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부위원장 직위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25.8.19.	국민 생명·안전·환경보호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의무화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25.9.17.	부처가 국민 생명·안전·환경보호 관련 규제 필요성 소명 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미이행 가능하도록 예외 마련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25.10.1.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도입, 신산업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 규제개선 추진 적극행정 면책, 사후규제영향평가, 국제규제협력 근거 등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25.11.5.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도입, 신산업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 규제개선 추진 적극행정 면책, 사후규제영향평가,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25.12.2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

02 규제등록제도

정용균 사무관 Tel. 044-200-2913

1 | 개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행정규칙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의 명칭·내용·근거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매년 6월 말까지 규제사무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 등록대상 및 단위

규제등록제도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규제 중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이다.

〈 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등록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5년 전면적인 제도 개편 이전까지 정부는 규제등록 시 '규제사무'를 하나의 등록 단위로 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규제사무'별로 규제정보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하나의 규제정보카드를 한 건의 등록규제로 간주한 것이다. 이때 '규제사무'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서로 연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조(條)를 묶어서 하나의

‘규제사무’로 정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규제사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부처별 규제 수 및 총 규제 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또한 주관적인 ‘규제사무’가 실제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한 번에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부처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록체계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규제등록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우선 등록 단위를 ‘규제조문’으로 변경하여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등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규제등록 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규제등록 시스템으로 전송받고, 각 부처 규제 담당자들이 해당 규제정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등록 규제조문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부처별 소관법률과 연계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규제조문을 규제등록카드와 함께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03 일몰규제 정비

정용균 사무관 Tel. 044-200-2913

1 | 규제의 재검토 개요

1 개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개선 및 합리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경제·사회 및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유형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효력상실형은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을 말하며, 재검토형의 경우 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 신설·강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해당 법령 등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폐지, 완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통상 3년)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5 적용원칙 및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존 규제 역시 규제 목적이 한시적이거나, 규제시행 상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재검토기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재검토의 여지가 없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 2025년 심사결과

2025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총 27개 부처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1,489건에 대해 규제존속 및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성을 심사하였다. 국민·경제단체 등 대상 의견수렴을 40일간('25.3.17.~'25.4.25.) 진행하였고, 민간전문가(40명)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결과 378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3 | 주요 정비 사례

(가) 100만원 미만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개선내용 (기존) 특정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연 4회 균등분할 납부 가능
(변경) 100만 원 미만 폐기물부담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완화

기대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 등의 폐기물부담금 일괄 납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

(나)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전자적 매체 활용 허용

개선내용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하거나, 투기 및 과열 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이신문 형태의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함
(변경) 인터넷 신문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허용

기대효과 종이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이 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전자적 매체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등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 확인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다) 승강기 자체점검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개선내용 (기존) 승강기 자체점검 기술인력에게 필요한 실무경력을 관련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만으로 제한
(변경) 경력 산정 시 관련 자격증 "취득 전" 실무경력까지 인정

기대효과 이미 승강기 기사 자격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경력요건을 합리화하고 승강기 점검업종 분야의 구인·구직을 원활화

(라)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 학과 교육시간 합리화

개선내용 (기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 운전을 위한 보통면허의 학과 교육시간이 3시간임에도, 오토바이 등 소형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학과 교육시간은 5시간으로 규정
(변경) 소형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하여, 모든 면허 종류별 학과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완화

기대효과 면허 종류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교통법규에 차이가 없음을 감안, 학과 교육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면허 취득 시 예측가능성을 제고

(마)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폐지

개선내용 (기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임업후계자 지원을 위한 선정요건으로 '55세 미만'일 것을 요구
(변경) 연령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연령층이 임업후계자 지원신청 가능

기대효과 55세 이상 임업인도 임업후계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업의 원활한 계승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연령별 진입요건을 개선

(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정조치 완료 여부 공표

개선내용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특정 시설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할 수 있음
(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청이 공표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리주체의 시설 개선 유인을 부여

(사) 소방 간부 후보생 응시 가능 연령 확대

개선내용 (기존) 소방 간부 후보생의 응시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
(변경) 소방사 공채·경채시험 응시기준과 동일하게, 18세 이상부터 소방 간부 후보생 응시가 가능하도록 완화

기대효과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청년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방공무원 인재 조기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아) 단순 설비 교체·보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제

개선내용 (기존) 단순 설비 교체·보수 행위 시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요구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설비 교체·보수 등의 행위는 "경미한 개발행위"로 분류하여 개발행위허가 요건 면제

기대효과 불합리한 행정상 절차·요건을 합리화하여, 보수 또는 긴급한 설비 교체 등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

4 | 향후 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6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400여 건의 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타당성 및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

2025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8건 개선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란?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시행 후에는
그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당초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기술 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일정 기간마다(최대 5년, 통상 3년) 재심사하여 정비

국민 + 기업
규제 합리화로 규제 부담 완화

주요 개선권고 사례

1. 특정 제품·재료·용기(플라스틱 등)의 제조업자 등이 납부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금액에 상관없이 연 6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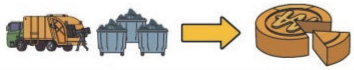

2.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종이 신문 외에 인터넷 신문에서도 확인 가능



3. 고숙련 국가기술자격 시험(기술사·기능장 등) 응시 시 요구되는 실무경력(4~9년) 요건 완화



4. 승강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요건으로 기사·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 후 뿐만 아니라,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



5.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 교육시간(5시간)을 승용차 교육시간과 동일하게 3시간으로 단축



6. 임업의 계승 발전을 위해 임업후계자에 대한 연령 제한(55세 미만) 폐지



7. 공장 등 소음유발시설과 공동주택과의 사이에 확보되어야 하는 거리를 부지의 넓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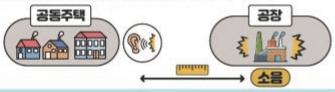

8.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정조치 완료 시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9. 다른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방간부 후보생의 응시 연령 하한 개선

21세 이상 → 18세 이상



10. 토지의 형질 변경이 없는 단순한 설비 교체·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면제



국무조정실

04 규제비용감축제

천해선 사무관 Tel. 044-200-2414

1 | 개요

가. 의의

규제비용감축제(Cost-In, Cost-Out)는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규제를 도입할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비용감축제의 전신인 규제비용관리제는 2년 간('14년 7월~'16년 6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총리 훈령 제정(「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16년 7월)」)을 통해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2018년 1월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종합평가 연구용역('17.9~12월) 결과에 따라 법제화는 곤란하지만 훈령·지침 등의 제도개선·보완을 통해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22년 7월에는 규제비용감축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4개 부처로 대상기관을 조정하고, 규제비용관리제에서 감축제로 전환하였다. 전부처 기준 신설·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규제비용 200%(One-In, Two-Out) 감축을 목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비용감축제에서는 이전과 달리 전부처 규제비용 200% 감축을 위한 부처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부처별 감축 성과에 따른 환류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운영절차

(1) 적용대상

규제비용감축의 대상은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대상 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국가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는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을 제외하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제외 요건

-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2) 운영절차

규제비용감축제는 기존의 규제심사과정에 비용감축제 적용여부 검토 및 비용분석검증을 통한 비용적립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분과 폐지·완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분은 부처별 계정(Account)에 적립(Banking)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규제비용감축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부처의 비용분석을 규제연구센터(KDI·행정연)가 검증하고 있다.

(3) 규제연구센터

2014년 6월, 규제비용감축제(舊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KDI와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규제연구센터는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KDI와 한국행정연구원은 각각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비용분석업무는 KDI의 경우는 분석평가팀에서, KIPA(행정연구원)에서는 비용분석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2 |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가.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실적

2025년 24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531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다. 동 기간 중 신설·강화(Cost-In) 규제로 인해 총 496억 원의 규제비용이 증가되고, 폐지·완화(Cost-Out) 규제로 총 1,027억 원의 규제비용 감축이 이루어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4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순비용이 증가한

기관이 5개, 순비용 증감이 없는 기관이 9개로 나타났다. 감축 규모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214억 원), 산업통상부(-184억 원), 보건복지부(-139억 원) 등으로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94억 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75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37억 원)은 규제순비용이 증가하였다.

〈 2025년 규제비용감축제 기관별 운영현황 〉

(단위 : 백만 원 / '25년 규제비용 순)

기관명		Cost-In 금액 (A)	Cost-Out 금액 (B)	규제순비용 (A-B)		
					감축률	목표치
총 계		49,564.38	-102,702.61	-53,138.23	207.2%	200%
1	농림축산식품부	9,035.00	-30,430.26	-21,395.26	336.8%	350%
2	산업통상부	-	-18,439.40	-18,439.40	순감	220%
3	보건복지부	649.77	-14,522.15	-13,872.38	2,235.0%	100%
4	국토교통부	4,306.73	-13,384.32	-9,077.59	310.8%	300%
5	관세청	-	-6,549.54	-6,549.54	순감	300%
6	해양수산부	5.38	-3,604.06	-3,598.68	66,990.0%	100%
7	중소벤처기업부	2.24	-3,393.31	-3,391.07	151,487.1%	300%
8	지식재산처	-	-390.67	-390.67	순감	100%
9	공정거래위원회	0.38	-121.13	-120.75	31,876.3%	300%
10	행정안전부		-66.40	-66.40	순감	20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100%
12	고용노동부	-	-	-	-	100%
13	교육부	-	-	-	-	200%
14	국가유산청	-	-	-	-	300%
15	금융위원회	-	-	-	-	200%
16	기획재정부	-	-	-	-	300%
17	문화체육관광부	-	-	-	-	130%
18	산림청	-	-	-	-	350%
19	질병관리청	-	-	-	-	200%
20	성평등가족부	0.64	-	0.64	0.0%	100%
21	기후에너지환경부	14,502.72	-11,263.53	3,239.19	77.7%	200%
22	식품의약품안전처	4,212.35	-537.84	3,674.51	12.8%	160%
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473.24	-	7,473.24	0.0%	200%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375.93	-	9,375.93	0.0%	200%

나. 주요 사례

(1) Cost-Out 주요 사례

①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추가**(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기 존	농업진흥지역에서 재해 대비 폭염·한파 시설 설치 제한
개 정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효 과	농업진흥지역 밖 대비 농업진흥지역 안의 낮은 지가로 인한 설치비용 등 **연간 약 247억 원 절감**

②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기 존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주거지 인근에서 개인물품을 보관해주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 건축물 용도 분류체계는 공유보관시설에 해당하는 용도 부재
개 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1,000㎡ 미만 공유보관시설을 신설하여 주거지역 입지가 용이하도록 개선
효 과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형 공유보관시설을 공급, 임대할 수 있는 신규 시장 창출로 **연간 약 68억 원 편익 발생**

③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 개선**(중기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기 존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 시 대표 모델 이외 상한·중간·하한에 해당하는 모델의 성적서를 제출
개 정	다수 모델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경우 1개 공인시험성적서로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 과	공인시험수수료 절감에 따른 편익 **연간 약 34억 원 발생**

(2) Cost-In 주요 사례

①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방미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 존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 부재
개 정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일환인 연계정보의 오남용·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계정보 생성·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부과
효 과	연계정보 저장 암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간 약 74억 원 비용 부담 발생**

②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의 절차 및 결과 제출 의무화**(식약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 존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의뢰 절차 및 검사결과 제출 시기·방법 부재
개 정	검사신청서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되 판매가격 신고 후 판매를 개시하는 담배는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고, 제조자등은 검사결과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사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
효 과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의뢰 등 **연간 약 41억 원 비용 부담 발생**

③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의무화**(기후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 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시약판매업 신고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부재
개 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규정
효 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건비 **연간 약 19억 원 발생**

05 규제합리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 2025년 규제합리화 평가 ····· 232
2. 2026년 규제합리화 추진방향 ····· 238

2025 규제개혁백서

PART. 05

규제합리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01 2025년 규제합리화 평가

강형석 사무관 Tel. 044-200-2452

1 | 규제합리화 평가 개요

규제합리화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실시되는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규제합리화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규제합리화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합리화 추진기반·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대상기관은 기관별 등록규제 조문 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개 기관*을 제외한 3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외교부, 통일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우주항공청

주요 평가 방향은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사회흐름에 맞춰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합리화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민 생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핵심규제와 다부처 연관 복합·갈등규제 개선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산업 규제합리화 노력 및 성과, 규제신문고 등을 통한 국민·기업의 현장 건의과제 개선노력, 규제비용 감축, 신설·강화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등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국민의 규제합리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홍보 노력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였다. 또한, '25년에는 신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네거티브 입법방식 전환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규제합리화' 취지에 맞게 생명·안전 등 중요가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 개선을 적극 평가하였다.

평가는 장관급 기관(22개)과 차관급 기관(14개) 총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의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에 대해 진행하였다. 규제합리화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민관합동으로 「규제합리화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분과위원장), 규제조정실 실·국장, 민간전문가로 구성(4개 분과, 17명)

평가항목은 크게 핵심 분야 규제개선 57%, 규제 품질관리 28%, 규제합리화 소통 및 체감도 15%로 구성하였다. 핵심 분야 규제개선 항목에는 핵심규제 개선, 신산업 규제개선 등 중점과제 개선 성과와 규제신문고, 현장규제애로 등 건의과제 개선 성과가 포함되었다. 규제 품질관리 항목에는 규제비용 감축 성과,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 실적, 신설·강화 규제 관리 노력 등이 포함되었고, 규제합리화 소통 및 체감도 항목에는 대표성과 홍보실적과 소통노력,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결과가 포함되었다.

2 | 2025년 규제합리화 평가 결과

2025년 규제합리화의 중점 추진성과 중 하나는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불편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규제합리화 역량을 결집하여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핵심규제를 개선한 것이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다부처·이해관계자 갈등규제를 적극 혁파하였고, 대국민·경제단체 등 현장건의와 소통을 중심으로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성장 모멘텀을 강화하였다.

2025년 규제합리화의 또다른 중점 추진성과는 규제샌드박스 등 신산업 규제합리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도입을 지원한 것이었다. 2019년 최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개편·내실화하고자 하였으며,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등을 통해 신산업 성장 동력을 적극 확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규제비용감축제도, 사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품질관리 강화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적극 대응하였다. 규제비용 감축률 207.2%로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국민·경제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기한 도래 1,489건 중 378건을 정비하였다. 또한, 806건의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건의·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6건에 대해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심사역량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인해 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역대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6개 기관의 종합만족도는 전년(75.8점) 대비 0.7점 상승한 76.5점으로 산출되었다.

3 | 부처별 평가 결과

2025년 평가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 등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직제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관급 기관(직제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기관별 우수사항

가. 장관급 기관 (직제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AI 분야 규제합리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 지원

- 국가 R&D 예비타당성 평가를 폐지하고, 대형 R&D 맞춤형 제도로 개편하여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시성을 도모
- 공공저작물 및 행정부 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AI학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발표로 신산업 분야의 성장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국민 편의성 증진

- 첨단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를 위해 난치질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치료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 사망자 의료데이터 공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AI·산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병원 밖 이동형 엑스레이 장치 사용 허용 등으로 의료 분야 민생불편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산업 분야 활성화 및 국민 애로 해소를 위한 환경·에너지 규제합리화 적극 추진

- 미판매 식품 이용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규제개선 추진
- 식물부산물을 재활용한 신소재·화장품 생산기술 등 자원순환 분야 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탄소중립 기여 및 신기술·신산업 성장 촉진

국토교통부

■ 주택·교통 분야에서 선제적 규제합리화 추진 및 신산업 성장 토대 마련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 국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 자율주행 원본영상 데이터 활용을 가능케 하고, 실증구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해 신기술 개발·시장진출을 촉진

해양수산부

■ 다부처 협업으로 미래지향적 규제합리화 추진 및 어업·수산업 민생불편 해소에 기여

-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 분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총허용어획량제(TAC) 정착업종 중심으로 어선크기 상한을 완화하여, 어선 내 복지공간을 확대하는 등 어업·수산업 분야 현장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중소기업 성장과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

-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매출액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
-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 위험가중치 완화 및 민간모펀드 최소 결성요건 완화 등으로 벤처투자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

나. 차관급 기관 (직제순)

식품의약품안전처

■ 허가·심사체계의 개편으로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 지원

-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바이오헬스 허가·심사 체계를 혁신하는 등 신산업 인프라 강화에 적극 노력
- 로봇 수술기 등 신기술 적용 제품의 선제적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한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선도

관세청

■ 국민편의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규제 혁신 적극 추진

-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을 일원화, 보세판매장 수용능력 증감 승인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기틀 마련
- 현장소통, 콘텐츠 제작을 통한 적극적 홍보전략 마련 등 규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홍보 우수

조달청

■ 전면적 규제 검토를 통해 규제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 280개 조달규정을 원점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추진하여 낡은 규제를 폐지·합리화하는 등 규제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 단품 물가 조정제도의 시범도입, 다수공급자 계약 시 할인율 적용 예외 마련 등 수요 맞춤형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애로 적극 해소

산림청

■ 합리적 산지·임업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산지 내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산촌체류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기준 전면폐지로 임업의 애로를 해소
- 청장 주재의 '규제합리화 TF'와 '민간참여 수요조사'를 통해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합리화 추진

4 | 분야별 평가 결과

가. 핵심규제 개선

규제합리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비롯한 현안관계장관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 등 회의체와 총리 주재의 미니 TF, 현장대화를 통해 범정부적 규제합리화 노력을 결집하여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하였다.

이해관계자·부처 갈등으로 장기간 미해결된 핵심규제를 두 차례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월, 10월) 등을 통해 개선하고, AI 학습데이터 개방,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여 신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국민·경제단체·전문가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시행 등 관광규제와 미판매 식품 이용 활성화 등 민생규제를 혁파하였으며, 황당규제 공모전과 같이

국민참여를 통해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51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규제합리화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소관 부처별로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소통·협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더욱 강력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6년 1월 29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8년간 유지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게 되었다.

나. 신산업 규제합리화

성과중심 규제샌드박스로의 개편 추진, 신산업 분야 1호 'AI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창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9년 규제샌드박스 최초 도입 이후 2025년까지 누적 2,526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신산업·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왔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조실 중심의 전주기 통합관리, 실증 이후 법령정비 의무 강화, 부가조건 최소화 등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산업 분야에서도 소통을 확대하여 반도체공장 등 현장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비효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스마트 항만 구축·스마트 농업 기반 형성 등 기존산업 수요자 맞춤형 문제해결로 신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규제 품질관리

규제비용 감축제도 개선,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강화 등을 통해 기존 규제의 품질과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규제비용 감축제도를 운영하여 소상공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등 규제 폐지·완화로 비용을 감축하였다. 이와 함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 강화로 기존 규제의 합리성을 개선하였다. 국민·경제단체 및 주요 민간협회 대상으로 의견을 제출받고, 민간전문가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 규제당사자 중심의 심사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489건 중 25.4%에 달하는 378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심사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총 806건의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진행하였고, 이해관계자의 건의와 기술규제·중소기업·경쟁 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86건에 대해 개선·보완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02 2026년 규제합리화 추진방향

박도연 사무관 Tel. 044-200-2416

1 | 기본방향

2026년 규제합리화는 혁신·성장, 공정·상생, 지역균형의 가치를 토대로 '5대 대전환 성장전략'(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신산업 혁신 가속화와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둘째, 지역 맞춤형 규제합리화를 통해 지역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균형성장을 촉진한다. 셋째, 민생 밀착형 규제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넷째, 국민 생명·안전 분야는 예방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최적의 안전 수준과 생활 편익을 동시에 제고한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 | 세부 추진방향

가. 경제·산업 활력 제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AI, 데이터, 드론, 방산, 에너지 등 핵심 산업 전반의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미래 주력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연구개발(R&D) 및 연구자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콘텐츠, 바이오·뷰티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나. 지역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정부는 5극3특 광역 경제권과 연계하여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지원하는 '메가특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보다 유리한 규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성장거점인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 정비를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균형성장을 견인한다.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규제합리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구조적 규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여 균형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다. 민생규제 합리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자금조달, 고용, 행정 부담 등 경영 전반의 애로요인을 완화하는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소상공인의 의무 부담 경감 및 세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이동권, 재산권 보장, 양육 부담 완화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을 통해 일상 불편을 해소한다. 동시에 장애인·환자·청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도 병행하여 포용적 규제체계를 구축한다.

라. 국민 생활·안전 규제합리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예방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한다. 화재, 건설사고, 산불·산사태 등 재난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등 일상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활에 침투한 불법·유해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편익과 안전 수준을 동시에 제고한다.

3 | 향후 계획

2026년에는 중점 분야별 세부과제를 연중 상시 발굴하고, 전 부처와 국조실, 규제합리화위원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건의와 자체 발굴을 병행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민생 밀착형 과제까지 폭넓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갈등 사안을 적극 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아울러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규제합리화 성과가 실질적 성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06 부록

1. 각 부처 규제합리화 성과사례 ····· 244
2.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 340
3. 규제합리화 관련 법령 ····· 347

2025 규제개혁백서

PART. 06

부록

01 각 부처 규제합리화 성과사례

강형석 사무관 Tel.044-200-2452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혁신지원 원스톱창구 운영	기 존 신산업 분야 사업현장에서 관련법률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 등의 안내가 필요 개 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 운영 조치사항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운영
2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기 존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의 사업자들이 법적 불확실성 노출 개 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본격 운영 조치사항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3	의료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특례	기 존 의료·바이오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근거법령이 부재 개 선 의료·바이오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선 적용, 후 제도화 추진 조치사항 의료·바이오 데이터 실증 특례 운영
4	글로벌 CBPR 인증요건의 보호수준 향상	기 존 APEC 프라이버시 9원칙을 바탕으로 50개의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인증 부여하나,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 시 일부 간극 존재 개 선 민감정보, 유출 신고 등 보호법 상 주요 조항을 인증요건에 신규 반영 조치사항 Global CBPR Program Requirements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인구감소 지역의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법률 지원	기 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 필요 개 선 인구감소지역 정책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법령의 유연한 법률 해석 및 법령 개정안 마련 지원 조치사항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원
6	클라우드사 대상 위탁사 관리감독 의무 명확화	기 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사업자가 수탁자인지 제공받는 처리자인지 모호하여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 개 선 관련 안내서의 개선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안내 조치사항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발표
7	인공지능 윤리 정립	기 존 원칙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필요 개 선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 조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안내서 제정
8	개인정보 적법처리 근거 확대	기 존 급속하게 발전하는 신기술·신산업을 뒷받침할 적법한 근거가 모호한 경우 다수 개 선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 및 '공익'을 고려한 개인정보 적법처리 근거 확대 조치사항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허용
9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 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 개 선 평가결과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 경우 관리실태 조사 정기조사에 갈음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컨설팅지원 등으로 개선 유도 조치사항 보호수준 평가 지원
10	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제재 처분 개선	기 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반복적 자료제출 등 요구 개 선 경미한 사건에 대한 처분 면제 등 제도 개선 조치사항 조사정책 개정안 마련
11	인터넷망 차단 조치 완화	기 존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소량의 개인정보 다운로드나 삭제 시에도 어려움 존재 개 선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험 분석 결과에 따른 보호조치 적용 시 인터넷차단 제외 조치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2	인터넷망 차단 제도 개선	기 존 개인정보 취급자 중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컴퓨터에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보안 한계 존재 개 선 인터넷망 차단 제도 개선 및 대체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보안성은 유지하되, 유연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조치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
13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기 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23.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었으나 본격 시행을 위반 세부기준 수립 필요 개 선 전송요구·전송방법, 거절·중단방법, 전송대상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 수립 조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2 경찰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경비업 허가요건 중 교육장 기준 폐지	기 존 경비업법에서 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도록 규정 개 선 현실을 고려하여 경비업 허가요건 중 교육장 기준 폐지 조치사항 경비업법 개정
2	화약류 등 판매소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기 존 화약류 등 판매소의 구조, 시설, 설비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도 시도경찰청장 허가 필요 개 선 판매소의 구조, 시설, 설비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고시로 위임 조치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3	경찰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시 서류 및 심의절차 간소화	기 존 경찰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신청 시 청구자가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경찰청에 제출 개 선 청구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망을 연계하여 경찰청에서 직접 구비서류 발급·확인 조치사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4호 개정

3 고용노동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내일배움카드 훈련정원 변경 인정 개선	기 존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정원'은 변경 불가능하며, 강의실·실습실 기준면적은 '정원'으로 규정 개 선 '정원' 항목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강의실·실습실 기준면적을 '실시인원'으로 변경 조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2	외국인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허용	기 존 내일배움카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미발급'이 원칙 개 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허용 조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3	임금결정 현황조사 폐지	기 존 사업장 담당자 등이 임의 입력하는 자계식 조사방식으로 조사대상 사업장 부담 개 선 임금결정 현황조사 폐지 조치사항 임금결정 현황조사 폐지
4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합리화	기 존 지주회사에 속한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으로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계열사와의 공동출자를 통한 표준사업장 설립 불가능 개 선 장애인고용법에 특례 규정 신설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 조치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5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법제화	기 존 온열질환자 급증함에도 대응 기본수칙 부재 개 선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의 5대 기본수칙을 법령에 규정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6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기 존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 전 측정자를 지정하고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 측정기의 지급 의무 의미가 불명확 개 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7	일학습병행 참여대상 확대	기 존 일학습병행 참여대상은 입직 1년 미만자에 한정 개 선 참여대상을 입직 3년 미만자로 확대하여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 조치사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	기 존 신규 외국인력 배정하기 위한 점수제의 배정 기준이 복잡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도 존재 개 선 고용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 삭제 등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 조치사항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업무처리 요령 개편
9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기 존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포함한 고용허가 요건을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부터 순차 배정 개 선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 삭제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 개선 조치사항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업무처리 요령 개정
10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 업무범위 합리화	기 존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이와 연속되는 분류작업을 금지 개 선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분류작업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조치사항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11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기 존 신규 반도체 설비 가동 전 공정안전심사* 의무로 제품 생산 지연 *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가동 전 심사 개 선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직원 지정제 시행 조치사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요건 완화	기 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요건으로 ① 취업규칙 등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명시, ② 전자적 출퇴근 기록 시스템 설치 사업장, ③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로 규정 개 선 임신한 근로자 누구나 근로시간 단축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 완화 조치사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13	외국인근로자 권역 간 사업장 이동 허용	기 존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 개 선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비수도권 권역 간 이동 허용 조치사항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 개정

4 공정거래위원회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중앙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개선	기 존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개 선 시장진입·창업 활성화, 사업 활동 제약·부담 완화 등 경쟁 제한적 규제 발굴·개선 조치사항 국가 법령 개정 합의
2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 완화	기 존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 개 선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 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 조치사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3	52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 개선	기 존 산모나 신생아가 피해를 당해도 소비자가 입증 부담을 지는 상황 개 선 모자보건법상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가 자료만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을 완화 조치사항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완료
4	해외 직구 유해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기 존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직구 제품 비중이 급증하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확산 개 선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소방안전본부를 신규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 조치사항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 고시 개정
5	결혼서비스 사업자의 품목별 가격 및 환불조건 등 표시 의무화	기 존 결혼서비스업의 가격 조건, 환불 조건이 불투명 개 선 서비스 구성 요소별 가격 조건, 환불조건을 홈페이지 및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규정 조치사항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6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선납 이용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표시 의무화	기 존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개 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선납 이용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등록 신청서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 조치사항 중요한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7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기 존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 개 선 분쟁 사례별 책임 소재, 배상 비율 등 개인 간 거래에서 통용 가능한 분쟁해결기준 마련 조치사항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국민 생활밀접 분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기 존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이용자보호가 취약하거나 이용자권익을 침해하는 법령 개선 필요 개 선 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법령 개선안 의결 조치사항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및 의결
9	모바일 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기 존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금액은 현재 구매액의 90% 수준 개 선 유효기간 경과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치사항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0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	기 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4.)에 따른 계도기간(2개월~1년) 기 부여 개 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 명확화 조치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및 컨설팅 실시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AI)학습 활용 가능 유형 전환	기 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건으로 인해 AI 학습데이터 활용 제약 개 선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저작물(공공누리 2·4유형) 개방 확대 검토 조치사항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2	준주거구역 내 생활형숙박업 입지 허용	기 존 연구개발특구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 불허 개 선 국토계획법령과 동일하게 생활숙박시설 입지 조건부 허용 조치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3	상업구역 내 생활형숙박 및 일반숙박업 입지 허용	기 존 연구개발특구 상업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및 일반숙박시설 입지 불허 개 선 국토계획법령과 동일하게 생활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조건부 입지 허용 조치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4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완화	기 존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술기준이 국제기준 대비 과도 개 선 국제표준에 맞춰 일부 기준 삭제* 등 완화 * (예시) 9㎑ 이상 1㎓ 이하에서 평균전력은 -36dBm 이하 조치사항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개선	기 존 엄격한 심사로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하기 어려움 개 선 SW품질관리 역량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체계 개편, 신청요건 조정 등 진입장벽을 완화 조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6	BMI 임상연구·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안	기 존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이나, 이후 기술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사회적 이슈 대응 불투명 개 선 윤리·사회적 이슈 구체화 및 대응방안 마련 조치사항 BMI 임상연구·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7	기술료 사용기준 개선	기 존 기술료 사용 기준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로 한정되어 미활용 특허 포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적으로 해석 개 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뿐 아니라 '포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조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
8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	기 존 기술지주회사 현금출자 및 주식보유비율 출자회사(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이 관계 부처와 법령에 따라 다르고, 현물(기술) 출자비율 유지를 위한 투자 유치에 장애 개 선 법령에 따라 다른 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을 10%로 완화·통일하고,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자본금 대비 최소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설립 시에만 적용 조치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임직원 휴직·겸직·파견 규정 정비	기 존 창업 촉진을 위하여 허용하는 교직원·연구원의 유직·겸직제도(기간)이 관련 부처 및 법령에 따라 달리 운용 개 선 휴·겸직 허용 대상을 직원까지 확대하고, 허용기간은 최대 6년까지 하되, 소속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 조치사항 연구개발특구법

6 관세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수입신고 시 종이서류 제출대상 축소	기 존 수입신고 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이서류로 제출 개 선 수입신고 시 종이서류 제출이 필수적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 조치사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 관할세관 일원화	기 존 보세공장 건설 시, 건설 단계에서는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고, 완공 후에는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운영 개 선 기업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여러 지역에 보세공장 설립 시, 건설단계(보세건설장)부터 관할 세관을 일원화 조치사항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3	환급신청·제증명 정정 신청 시 종이서류 제출 의무화 폐지	기 존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에 따라 민원인이 세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종이서류를 제출 개 선 종이서류 제출 민원을 세관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제출 추진 조치사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4	FTA 수출지원을 위한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기 존 원산지(포괄) 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가 제한적 개 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청장이 원산지(포괄) 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확대 조치사항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별표 개정
5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 확대	기 존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도입(2개 은행) 개 선 관세납부 전용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 확대(2개 → 17개) 조치사항 관세납부 시스템 개선
6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기준 완화	기 존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에 대해 매각처분 시 화주는 최장 4개월 내 기간동안 매각처분 보류 요청 가능 개 선 특수한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물품의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현행 4개월 초과하여 신청(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사항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7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 적용 예외대상 추가	기 존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 가능기간을 6개월(필요시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로 운영 개 선 중계무역 물품 수출지원을 위해 보세창고 장치 가능기간을 1년(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확대 조치사항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8	보세판매장 수용능력 증감 승인업무 효율화	기 존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변경 시 증가되는 면적이 최초 면적의 110%를 초과하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개 선 매장면적 확대 시 세관장이 직권 승인 가능한 면적기준을 신설 조치사항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9	면세점 판매장식 개선(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허용)	기 존 면세점에서는 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만 판매할 수 있어, 고객이 체험 후 제작하는 맞춤형 상품 판매에는 한계 개 선 주문받아 맞춤 제작한 후 출국장 인도장 등에서 인도하는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허용 조치사항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0	면제점 이용 불편 개선	기 존 출국장면세점 판매물품에 한하여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때 인도자는 교환권 회수 후 구매자에게 물품 인도 개 선 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에 대한 이동판매도 허용하고, 인도장에서 여권 등이 없어도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원확인 방법을 허용 조치사항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1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기 존 보세판매장과 달리 제주 지정면세점은 관련 법령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을 열거하여 규정 개 선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 내에서 판매 가능물품에 대한 HSK(품목번호) 추가 확대 조치사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개정
12	수입물품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	기 존 사후관리 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 개 선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을 수입신고 전에 가능토록 개선 조치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3	사후관리 생략 대상물품 금액기준 상향	기 존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일정 기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 의무 면제 가능 개 선 사후관리 생략 가능한 금액기준을 상향하여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 조치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4	FTA 수출지원을 위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기 존 중소상공인의 경우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 개 선 중소상공인 FTA 수출지원을 위해 마스크 팩, 립스틱 등 K-화장품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 조치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개정
15	외국적 요트의 자격전환 허용	기 존 관광목적으로 국내항 간 이동하려는 외국적 요트는 최초 입항 시 자격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절차 필요 개 선 관광목적 외국적 요트에 대하여 국내운항선으로의 자격전환을 허용하여 국내항 간 이동 시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 조치사항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6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지 확인 절차 개선	기 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 개 선 시작하기 5일 전까지 현지확인 통지서를 송부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7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	기 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특허갱신 평가기준에 따른 갱신심사가 필요하나 신규특허에 비해 절차가 복잡 개 선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통합하여 특허갱신 준비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사항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
18	해외거래처 부호 발급 신청절차 개선	기 존 수출입 등 절차에 필요한 해외거래처부호 발급을 관세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이 필요 개 선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9	선상 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기 존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전에는 선박에 적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전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선상 수출신고제도를 운영 중 개 선 국내에서 제조하여 벌크선으로 적재 수출되는 철강제 관, 파이류, 관류 등에 대하여 선상 수출신고 대상에 추가 조치사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20	고세율 원재료 사용·환급 신청기관 합리화	기 존 제조 전 고세율 원재료 사용여부 확인은 제조지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토록 하면서, 제조 후에도 원거리에 위치한 환급지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개 선 제조 후에도 사용여부 확인은 제조장이 위치한 세관에 신청하도록 단일화 조치사항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21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방안 정비	기 존 국제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공항만 인근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내국물품을 반입 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국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운영 개 선 지침으로 운영중인 종합보세구역 GDC 관련 내용을 고시에 신설 반영 조치사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부담 완화	기 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하향 조정 가능 개 선 기존에는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아야 감경 가능하였으나 세관장 이상 표창으로 하향 조정 조치사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3	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 확대	기 존 일시수출입 차량 신고의 경우 관세사 등 명의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의 경우 신고인을 화주로 제한 개 선 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을 관세사·통관취급법인 등으로 확대 조치사항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24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완화	기 존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확인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로 수출신고서 및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필요 개 선 기존 제출서류 외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을 추가하고, 총 5종의 서류 중에 택일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요건 완화 조치사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5	전략물자 우수 관리업체 통관심사 간소화	기 존 세관장은 전략물자 수출 심사 업무 시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행 개 선 CP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에서 제외 조치사항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26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특허요건 완화	기 존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이 직선거리 15km 이내인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아 물품관리체계 통합관리 가능 개 선 거리제한 요건을 기존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 조치사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7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확대	기 존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물품 반출입 시, 우수업체이고 최근 3개월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경우, 보세운송 신고수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 개 선 우수업체인 보세공장은 법률 위반이 없는 경우, 반출입 횟수에 관계없이 보세운송 신고수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 조치사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8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 검사 허용	기 존 장외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을 장외작업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하는 경우, 원 보세공장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검사 선별시 원 보세공장으로 반입 필요 개 선 장외작업장에 장치한 상태로 수출입신고하는 경우,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에 신고하도록 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9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으로 국가 전략기술산업 지원	기 존 국가 전략기술 핵심 분야의 보세가공제도 활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세가공제도 관련 규제 정비 필요 개 선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우수업체 승인 생략 등 규제 정비 조치사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30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기 존 보세가공 후 잉여물품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내·외국물품으로 구분관리하고, 외국 잉여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필요 개 선 동일한 HS 품목으로서 내·외국물품 구분관리가 곤란한 잉여물품은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고, 과세대상 잉여물품에 대해 혼용 중량비율 또는 설계 손모량에 따른 재고관리 허용 조치사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31	관세환급 신청절차 간소화	기 존 납세의무자가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첨부서류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개 선 첨부서류 제출 의무 생략 조치사항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32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대상 확대	기 존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 절차 생략 가능 개 선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33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 확대	기 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 개 선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후적용 신청대상을 추가 조치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7 교육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학생 수행평가 부담 완화	기 존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외에 실시 및 과제형 암기식 가능 개 선 수행평가 수업 시간 내 실시 원칙 적용 및 과제형 암기식 금지 조치사항 수행평가 개선사항 교육청 안내
2	기간제 교원 채용관련 건강검진 등 개선	기 존 일반건강검진외 별도의 신체검사 필요, 1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 없이 재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서 및 마약검사서 제출 개 선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로 결과로 갈음, 1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 없이 재채용된 경우 신체검사서 및 마약검사서 제출 면제 조치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3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규제 완화	기 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및 발행기준, 발행절차 등을 교육부 예규로 규정 개 선 지방분권 취지에 발맞추어 중앙정부의 예규를 폐지하고, 교육부 자체 수립기준으로 대체 조치사항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폐지
4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입소권 협의 대상 확대 개선	기 존 아파트-오피스텔 혼합단지 내 오피스텔 거주자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시 우선입소권 적용 대상 미해당 개 선 아파트-오피스텔 혼합단지 내 어린이집 시설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도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시 우선입소권 협의 대상에 포함 조치사항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5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기 존 신학기(3~5월) 이외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전면 금지 개 선 학기중 아동 퇴소 시 상시적인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허용 조치사항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6	학자금 대출 관련 금리상한 하향	기 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는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100의 9 개 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100의 5로 하향 조치사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7	특수교사 임용 전 경력의 호봉인정률 개선	기 존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영유아어린이집·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최대 30%까지만 인정 개 선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영유아어린이집·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80% 이내) 신설 조치사항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공립대가 국립대와 통합하여 통합된 국립대로 출범 시 공유재산 활용 규제 개선	기 존 공립대가 국립대와 통합대학으로 운영 할 경우 지자체 소유의 교지·교사 활용 불가 개 선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예외 조항 신설하여 공립대가 국립대와 통합하여 국립대로 운영 할 경우 지자체 소유 교지·교사를 원활히 사용 가능 조치사항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9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 완화	기 존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 학력과 경력 기준 존재 개 선 학력기준을 없애고, '관련 분야의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학력'이 아닌 '경력'을 기준으로 개선 조치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개정
10	우수 연구인력 해외 유출 방지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예교수 규칙 개선	기 존 명예교수는 공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특별강의만을 담당하고,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 명예교수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의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함 개 선 명예교수의 복무 범위를 확대하고,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 명예교수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의 지급액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개선 등 조치사항 명예교수규칙 개정
11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기 존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규정 부재 개 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전공심화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 조치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2	전문기술 석사 자격 요건 개선	기 존 전문기술석사과정 지원 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으로 규정 개 선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요건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 2년으로 완화 조치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3	전공심화과정 운영요건 중 교원확보율 개선 완화	기 존 전공심화과정 지정 기준 중 교원확보율이 경력 유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개 선 교원확보율 기준을 경력자 대상 과정과 무경력자 대상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 조치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4	전문기술 석사 과정 수업연한 개선	기 존 전문기술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가능기간을 1/4 이내로 규정 개 선 전문기술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가능기간을 1/2 이내로 확대 조치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5	온라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	기 존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수강이 어려운 문제 발생 개 선 온라인학교 신설을 통해 학교·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 선택·이수 가능 조치사항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6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기 존 평생교육시설이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 시설면적 감축은 가능하나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설요건 예외 적용 필요 개 선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내대학운영을 위해 메타버스 도입 근거 및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기준 마련 조치사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17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기 존 교육 현장에서 VR 기기의 보급이 활발하나, 안전 위주의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제약 개 선 다양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콘텐츠를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교육 분야 메타버스 활성화 방안(가이드라인) 마련
18	현장실습계약 체결 의무기한 삭제	기 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기업과 현장실습 계약 시 현장실습 실시 7일 전까지 체결 필요 개 선 현장실습 계약체결 의무기한 삭제 조치사항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
19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 기준 완화	기 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월소득 인정액 기준 8구간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를 일률 적용 개 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9구간까지 지원확대 조치사항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기준 개선
20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결원보충제 유효기한 확대	기 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결원보충제 효력이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입학전형에 한정 개 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6학년도까지 연장 조치사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8 국가보훈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저소득 국가유공자 요양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 존 요양지원 보조금신청이 있어야 건보공단에 본인부담금액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 개 선 건강보험공단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보훈대상자의 편의 개선 조치사항 건강보험공단과 시스템 연계
2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원 신설	기 존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 불가 개 선 홀로 남겨진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지급 가능 조치사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	6.25전몰군경 자녀 추가지원금 대리신청 도입	기 존 저소득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훈관서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 제출 개 선 저소득 6.25전몰군경 자녀 추가지원금 지원기준 중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4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기 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한정적 개 선 보훈병원 및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등까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확대(140곳) 조치사항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5	보훈회관을 경로당으로 인정 개선	기 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보훈회관은 경로당에 준하는 시설로 미인정 개 선 모든 지자체에서 보훈회관을 경로당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조치사항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
6	진료기록 연계를 통한 등록심사 절차 개선	기 존 요건심사 및 신체검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종이문서(우편)로 송부 개 선 육군본부, 병무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진료기록 전자 전송체계 구축 조치사항 시스템 연계
7	대부사실확인원 정부24발급	기 존 대부받은 채무자 등이 상환내역 등을 확인 증명하기 위해 유선요청 시 대부사실확인원 발급하여 팩스 메일 등으로 송부 개 선 정부24에서 대부사실확인원 발급 조치사항 정부24 시스템 반영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장기복무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시설 확대	기 존 장기복무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국가관리 일부시설로 국한 개 선 타 국가보훈대상자와 동일하게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종류 확대 조치사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행정소송 조정권고 처리절차 개선	기 존 법원의 조정권고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개 선 관련부서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취합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재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조치사항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개정
10	대부지원 신청 지역제한 폐지	기 존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만 대부 신청 지원 개 선 전국 모든 보훈관서에서 대부신청 지원 조치사항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
11	재가복지대상자 이동지원비 지원기준 완화	기 존 재가복지대상자 이동지원 지원 시 거주중인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인접 시군구로 이동 시 10km 범위 내에서만 허용 개 선 인접 시군구 이동 허용범위를 10km에서 30km로 상향 조치사항 이동보훈복지 사업지침 개정
12	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서류 절차 개선	기 존 국가유공자는 공설화장시설 이용요금이 면제대상이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필요 개 선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없이 행정시스템을 통한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면제 가능 조치사항 장사업무시행지침 개정
13	교육지원대상 선정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기 존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조사 생략 개 선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조치사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14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기준 완화	기 존 일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이 기준중위소득(100~200%) 이하일 경우 교육지원 개 선 교육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대상별 생활수준 적용기준을 완화 조치사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5	제대군인 지원신청 제도개선	기 존 미등록한 제대군인(10년 이상)이 호국원 또는 현충원 안장을 위해 화장장 이용 시 제대군인확인서 발급이 불가 개 선 별도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 확인을 통해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추진 조치사항 미등록 사망 제대군인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처리지침 시행
16	제대군인자녀 지정취업 지원연령 상향조정	기 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에게 취업지원을 35세 이하까지 실시 개 선 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지원연령을 39세 이하까지로 상향조정 조치사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국가유산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궁궐 인기 활용프로그램 예매서비스 개선	기 존 궁궐 인기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선착순 예매서비스 적용(선착순 40%, 추첨제 40%, 전화예매 20%) 개 선 궁궐 인기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선착순 폐지 및 추첨제 확대(추첨제 80%, 전화예매 20%) 조치사항 활용프로그램 예매서비스 개선
2	매장유산 발굴조사 지원 확대	기 존 소규모 정밀발굴조사의 지원 상한액을 1.5억 원으로 제한 개 선 소규모 정밀발굴조사의 지원 상한액을 3억 원으로 확대 조치사항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위탁 약정체결
3	자연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제도 개선	기 존 천연기념물, 명승 등의 공개제한지역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 개 선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 외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출입 허가 조치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4	역사문화권 사업 절차 개선	기 존 사업비 10% 초과 변동 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변경 필요,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관만 정비사업 시행 가능 개 선 사업비 산정 시 물가변동분 제외, 정비사업을 지자체의 출자 및 출연기관 시행 가능 조치사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국가유산 주변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합리화	기 존 국가유산 주변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물건을 쌓는 모든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필요 개 선 국가유산 주변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대상에 한하여 허가 필요로 개정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조치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제정
6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자격 확대	기 존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자격을 5년 이상 이수자로 한정 개 선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자격에 10년 이상 일반 전승자도 추가 조치사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7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수출허가 소요기간 단축	기 존 국외전시 목적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수출하는 경우 2개월의 처리기간 소요 개 선 전시목적 수출허가 소요기간을 1개월로 단축 조치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10 국방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초급간부(장교후보자) 선발절차 간소화	기 존 대학 재학 중인 예비 장교후보생 응시자의 경우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 대체 불가능 개 선 대학 재학 중인 예비 장교후보생 응시자에 대해 장교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을 학업성적으로 대체 조치사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2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가능시기 확대	기 존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재임용 가능 개 선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 조치사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3	장병내일준비적금 특별중도해지 제도 신설	기 존 조기전역, 간부·사회복무요원으로 병적전환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가 종료(중단)되었음에도, 적금의 만기일까지 기존 납부원금과 정부지원금의 수령이 불가 개 선 조기전역, 병적전환 등으로 병역의무가 종료(중단)된 경우 전역일을 적금의 만기일로 간주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4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제보호구역 해제·완화	기 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 개 선 통제보호구역 28,005㎡ 해제 및 973,031㎡를 통제에서 제한으로 완화 조치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5	현역모집부사관 지원율 제고를 위한 병 지원 자격 완화	기 존 현역부사관 모집(병→부사관)을 위한 지원 시기는 '병으로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으로 규정 개 선 현역모집부사관 지원 자격을 '일병이상 복무 중인 사람'으로 지원 자격 완화 조치사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6	군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시험 인정기간 확대	기 존 군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3년으로 규정 개 선 군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7	군 간부 휴가제도 개선	기 존 군 간부 휴가 제도 중 외출 등 일부 휴가의 세부 분할 사용 불가 개 선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 '분' 단위 사용, 가족 간호 청원휴가 '시간' 단위 사용, 하사 이상 군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휴가 신설 조치사항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8	군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기 존 군인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이 육아휴직, 병가, 출산·유산·사산휴가 등으로만 한정 개 선 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휴직(30일 이상 휴가)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조치사항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9	군 가사휴직 범위 확대	기 존 군인의 가사휴직은 간호휴직만 가능 개 선 가족돌봄을 위한 돌봄휴직까지 가사휴직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조치사항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10	군종 장교의 장기복무 지원 자격 기준 완화	기 존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은 임용 최고연령인 35세까지만 지원이 가능 개 선 군종장교의 평균 임관 나이(32.3세)를 고려하여 장기복무 지원 연령을 38세로 확대 조치사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병역이행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제재 완화	기 존 「예비군법」에서 예비군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위헌결정*('22.5.26.)됨에 따라, 「병역법」 상 병역이행 통지서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 개 선 병역이행 통지서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행정제재(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조치사항 병역법 개정

11 국세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세무검증 부담 최소화	기 존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개 선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세무검증 부담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미래혁신 세정지원 대상 추가
2	영세사업자 국세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기 존 현행 국세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규정 개 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영세사업자 0.4%, 일반납세자 0.7%) 및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영세사업자 0.15%, 일반납세자 0.4%)로 인하 조치사항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개정
3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발	기 존 환급 신청을 대신해주는 민간 세무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일정 수수료(10~20%)를 지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 증가 개 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없이 사용하기 쉽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개발 조치사항 홈택스를 통한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발
4	세무조사 상주기간 단축	기 존 지난 60년간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대부분을 조사팀이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는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 개 선 조사관서 조사진행방식으로 개선 조치사항 세무조사 관행 혁신
5	납세자 중심 홈택스 고도화	기 존 홈택스가 복잡한 서식 기반의 화면 구성으로 신고서 작성이 어렵고 이용절차가 복잡하여 납세자 신고 시 불편함 초래 개 선 홈택스 고도화 2단계 추진 조치사항 홈택스 개편 서비스 제공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6	주류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완화	기 존 주류 제조·유통 시, 불법 가공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표지를 부착 개 선 전통주의 주세 감면 대상 수량*을 확대하여 납세증명표지의 부착 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주류 면허자가 제조하는 주류는 최초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면제 * 전통주 납세증지 부착 완화 : (발효주류) 500㎘ → 1,000㎘, (증류주류) 250㎘ → 500㎘ 조치사항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개정
7	주류도매업면허(T/O)의 합리적 허용기준 마련	기 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 방지 및 안정적 주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 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신규면허 부여 개 선 업계 현장 의견,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면허 허용범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조치사항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8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프로세스 전면 재설계	기 존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 모두 작성 개 선 납세자가 알고있는 정보과 국세청 보유정보 결합하여 자동채움하거나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 조치사항 홈택스 서비스 개선
9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제공절차 간소화	기 존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제공에 대한 소관과 검토 등 내부 절차 장기간 소요 개 선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 기간을 단축 조치사항 제공절차 간소화
10	시음주 물량 한도·장소 확대	기 존 시음주는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연간 주종별 한도*가 있고 소매업자는 제공 불가 * (희석식소주) 12,960ℓ, (맥주) 18,000ℓ, (그 외 주류) 9,000ℓ 개 선 시음주 한도를 확대하고, 전통주는 추가로 별도 구분하여 허용물량 추가 확대 조치사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11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사실증명 신설	기 존 납세자가 본인의 업종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타사실증명을 수동 발급 개 선 업종코드가 기재된 표준화된 사실증명 신설하여 홈택스 발급 가능토록 개선 조치사항 사실증명 표준안 마련 및 전산개발, 관련 훈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2	미지급 환급금 환급서비스 개선	기 존 미지급 환급금은 개좌개설신고를 통해서만 계좌로 수령가능하여 국민불편초래 개 선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계좌를 입력하면 입력계좌로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개정 및 관련기관 협의
13	탈세제보 처리 진행상황 모바일안내 시스템 구축	기 존 탈세제보 접수안내일로부터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 시 60일이 되는 날 통지 개 선 제보자 신청에 따라 모바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처리상황을 2개월 단위로 수시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개정
14	국채투자 비과세절차 간소화 및 상세안내로 시장활성화 지원	기 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외국인 국채투자 유치에 어려움 개 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및 관련 관련가이드라인 개정하여 홈페이지 게시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 거주자 증명서 및 거래·보유명세서 제출의무 폐지 조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5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의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기 존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의 경우 소규모 제조면허 미발급 개 선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제조장도 시설기준 마련하여 제조면허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6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에서 등록제 전환	기 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로 규정 개 선 등록요건 충족 시 등록제로 개선 조치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7	위스키·브랜디 등 나무통 저장·숙성기간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	기 존 해외와 위스키·브랜디 등 나무통숙성주류의 저장·숙성기간에 대한 분류기간이 다르나, 국내에서는 기간 확인절차 미비 개 선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한 나무통 저장·숙성기간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 조치사항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18	청년층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연체가산 이자율 인하	기 존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미납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가산) 이자율은 납기 경과 시 3%, 납기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매월 1.2% 부과 (한도 9%) 개 선 학자금 연체(가산) 이자율을 납기 경과 시 2%, 납기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월 0.5%로 인하 (한도 5%) 조치사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9	주류도매업자 창고면적 완화	기 존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창고면적이 66㎡로 규정되어 있고, 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시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제출 개 선 창고면적을 22㎡로 완화하고, 현행 체인사업자 평가 내용을 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반영 조치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	주류 자동판매기 성인인증방식 확대	기 존 유흥업소에 설치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수단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제한적으로 인정 개 선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주류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수단으로 추가 조치사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12 국토교통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기 존 드론 규제완화구역 47개 (23개 지자체) 지정 및 운영 개 선 지자체 9개의 신규 18개 구역 추가 지정 및 기존 지자체 5개의 7개 구역 중 4개 구역 변경 및 2개 구역 추가 조치사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고시
2	항공안전 합리화	기 존 방위각시설·종단안전구역 등 일부 공항시설 국제기준과 불부합 개 선 주요 시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조치사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3	화물차안전운임제 재도입	기 존 화물차주의 불안정한 소득 및 과적·과로·과속 문제 지속적 제기 개 선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화물차주를 보호하고, 교통안전 개선 조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4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기 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취소 시 구제방안 부재 개 선 후속사업자가 당첨자에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5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오피스텔)시 복도폭 규제 완화	기 존 용도변경 시 복도폭 1.8m 확보 개 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복도폭 1.5m로 완화 조치사항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6	탈북민·복지시설 퇴소자 등 긴급 주거지원 요건 완화	기 존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요청 시, 소득 등 요건 검증에 장시간 소요 개 선 최초 입주에 한해 소득검증을 면제 등 입주자격 완화 조치사항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유사 행정조사 통합 실시	기 존 사업 시행 관련 보고 및 검사 시 조사기관(행복청) 내 부서 간 중복조사 우려 개 선 유관 부서 간에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등 안내 조치사항 관련 부서 협조공문 배포
8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기 존 건축물 용도가 없어 지자체별로 해석이 상이 개 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1,000㎡미만) 조치사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
9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기 존 기반시설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 개 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조례 등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 조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운전경력조회 행정절차 합리화	기 존 특별교통수단 운전에 적합한 운전면허 보유사실 등 확인을 위해 '운전경력조회 회신서'를 경찰청에서 발급 개 선 '운전경력증명서'로 운전경력조회 회신 양식을 대체하여 행정절차 합리화 조치사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11	마을주민 보호구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기 존 마을주민 보호구간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애로 개 선 도로법 시행규칙에 법적근거 마련 조치사항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12	현재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기 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특별관리지역 내 주유소의 설치는 허용하나 수소충전소는 금지 개 선 특별관리지역 해제를 통해 주유소, LPG 충전소 부대시설로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특별관리지역 해제 고시
13	친환경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허용	기 존 친환경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가 현행법상 정비업에 포함되어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 수행이 제한 개 선 정비업체 방문없이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또는 정비가 가능토록 허용 조치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4	중소·중견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수수료 감면	기 존 스마트물류센터 신규 인증신청 시 수수료(예비인증 300만 원, 본인증 300만 원)를 부과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부담 개 선 중소기업은 인증수수료 전액 감면, 중견기업은 50% 감면 조치사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15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	기 존 현재 임시운행허가에 최대 3~4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에 한계 개 선 신속허가제 및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 등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허가기간 단축 조치사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6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기 존 청약, 주택 대출 등에 관한 일부 기준이 혼인 시 더 불리하게 설정 개 선 혼인·출산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 및 대출 기준 개선* 등 *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0.75억 원→1억 원), ②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 원→2억 원), ③ 신혼부부 청약 기준 완화 (특별공급 물량확대, 우선공급 비율 상향, 무주택요건 완화, 출산 시 추가 특별공급 기회 부여 등) 조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7	그린벨트(GB)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고제 변경	기 존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나, GB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 가능 개 선 GB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조치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8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폐지	기 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시 자동차등록원부 변경신고 필요 개 선 주민등록 변경 시 등록관청에 방문 신고 없이 자동 변경되도록 법령 정비 및 시스템 연계 조치사항 자동차등록령 개정
19	화물자동차 허가 규제 개선	기 존 사업용 화물차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대형 차량으로 교체 시 제한없이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이 5톤으로 제한 개 선 기존 사업용 화물차(일반 화물운송업)를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한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10톤 이상으로 완화 조치사항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13 금융위원회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증권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기 존 증권업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개 선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 조달액의 25% 상응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발행어음·IMA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1/3 수준으로 축소 조치사항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의 신속 퇴출 추진	기 존 상장유지요건 및 상장폐지 절차가 완화적 개 선 시가총액·감사 의견미달 등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심의단계 단축 등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조치사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3	비상장 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	기 존 비상장주식, 조각투자증권의 다자간 매매 방식의 장외거래소 영업이 금지 개 선 비상장주식, 조각투자증권 장외거래소 제도화 조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기 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금지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일부 사업자는 정부방침을 회피하여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운영 개 선 자율규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레버리지(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서비스 제한 조치사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5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 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부여, 불공정거래 과징금의 수준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제재 합리화 필요 개 선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조치사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6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기준 마련	기 존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유형 중 하나인 초고금리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개 선 초고금리 수준을 법률상 하한인 60%로 규정 조치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7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기 존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개 선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이자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동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금소법」 적용을 받지않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타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 조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8	청소년 마이데이터 이용 개선	기 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의무 개 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9	마이데이터 대면영업 활성화	기 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이용에 애로 개 선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을 할 수 있게 하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내부 관리규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절차 등 마련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10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	기 존 동일인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경우 차주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을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바, 대출기한 연장을 기대한 정상차주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대출로 전환되는 불이익 존재 개 선 조합 사정으로 동일인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그 한도를 초과한 날이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금융감독원 보고)을 받아 제한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1년 연장 허용 조치사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1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기 존 '22~'24년 간 0.5~1.5%의 신용카드수수료 적용 개 선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0.05~0.1%p) 조치사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12	한은과 RP매매 시 금융위 승인 면제	기 존 한국은행과의 RP매매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요구 개 선 신협중앙회의 한은에 대한 만기 91일 이내 RP매도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 조치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3	신협 예보기금 적립방식 개선	기 존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률 상한 달성 시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의 존재 개 선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률 상한 달성 시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 조치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14	국채통합계좌 연계 통합주문 허용	기 존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도 매매 주문은 개별 계산주체별로 처리 개 선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통합주문계좌를 통한 통합주문을 허용 조치사항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5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기 존 미시적 행위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로 인해 상황별 유연한 보안 대응이 곤란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 개 선 293개 수범사항을 166개로 통폐합하는 한편,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을 의무화 조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16	금융보안 규제체계 선진화	기 존 금융보안 규제가 세세한 행위규칙 위주로 되어 있어 규제준수에 부담으로 작용 개 선 보안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으로 개선하고, 재해복구센터 확대 등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 조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17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기 존 반려동물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을 위한 기초정보 등록·관리체계가 부재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가 적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질병명, 진료행위 명칭 사용 개 선 반려동물 보험DB 구축,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60개→100개) 조치사항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동물진료 권장절차 고시

14 기상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인공강우 기술개발 근거 마련 및 산불대응 체계 구축	기 존 산불 대형화와 반복되는 가뭄 등 복합적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데이터 연계체계 제한 존재 개 선 복합적 기후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과학적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 조치사항 기상정보제공 플랫폼 내 산불특화 페이지 구축·제공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	정보시스템 재난관리체계 합리화	기 존 정보시스템 재난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및 관리 체계 보완 필요 개 선 무중단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재난관리체계 매뉴얼 제정 조치사항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및 행정정보시스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제정
3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기 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의 일상화로 현행 예보모델을 활용한 예보정확도 향상에 한계 개 선 초단기부터 기후까지 이음새 없는 기상예측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형 AI 기상·기후 모델 개발 조치사항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고시 제정
4	API 방식 기상기후데이터 개방 확대	기 존 에너지, 수자원 분야 특화 지원을 위한 관측·예측·통계데이터 묶음형 API 제공 개 선 기존 분야에서 농업, 교통 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해당 분야 산업특화 지원 조치사항 농업, 교통 분야 묶음형 API 제공
5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사업 지원	기 존 도심항공교통 운항고도에 특화된 항공기상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상세정보 제공에 한계 개 선 수도권 실증노선에 특화된 기상관측 및 예측기술 개발로 민간기관 실증사업 선제적 지원 조치사항 실증노선 특화 기상관측 및 예측자료 제공
6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합리화	기 존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원가회수율이 낮아 정보 생산비용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 개 선 항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으로 국민 세금 부담 완화 조치사항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개정
7	중소 기상기업 수출지원 기준 완화	기 존 지원기업의 수출규모(3년 평균수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 중이나, 기준이 높아 수출실적이 낮은 기업은 대상 선정 어려움 개 선 수출실적 기준을 50% 완화(수출초보 10→5만불 미만 등) 조치사항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보관 현장지원 제도기반 마련	기 존 기후변화로 증가하거나 강해지는 위험기상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재해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기관 간 업무 분리로 그 대응에 한계 개 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보관 등의 인력을 현장에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기관 간 협력 강화 기반 마련 조치사항 기상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9	기상사업 등록취소의 행정절차 간소화	기 존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 개 선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기상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15 기획재정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기 존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경감 개 선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 경감으로 개선 조치사항 주세법 시행령 개정
2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 존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국세청장 지정 개 선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조치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 확대	기 존 소규모 주류는 탁주 등 5개 주종 허용 개 선 소규모주류 면허대상 주종에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 추가 조치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4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요건 완화	기 존 창고면허요건 66㎡ 개 선 창고면허요건 22㎡로 완화 조치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5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범위 확대	기 존 일반주류 알코올 허용 오차 0.5도 개 선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발효주 0.5도 추가 허용 조치사항 주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16 기후에너지환경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체계 개선	기 존 무공해차 충전기의 이용상태, 요금, 고장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 지속 개 선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 설치정보(위치, 규모 등) 등록 의무 및 관리기준 준수의무 부여 조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	연소형 방향제, 초 안전성 개선	기 존 연소형 방향제 및 방향용 초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부재 개 선 연소형 방향제 및 방향용 초에 대해 연기 흡입 주의, 충분한 환기 등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3	노면전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제정	기 존 노면전차(트램)용, 항공기용, 선박용 연료전지는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사용 및 판매가 제한 개 선 노면전차용, 항공기용, 선박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 조치사항 수소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 마련
4	발전사 매립장 관리제도 개선	기 존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이 오염우려가 낮음에도, 사후관리 절차 준용 및 최종복토 의무부여로 부지 활용 제약 개 선 환경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외 기준을 명확화하고, 부지 활용 시 최종복토를 면제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5	대기총량관리제 우선 적용	기 존 총량할당을 받는 통합허가사업장은 총량제와 통합허가 제도 적용시기 불일치로 2~3년 주기 연쇄적 규제강화 대응 부담 개 선 통합허가 재검토 대상인 총량관리사업장은 총량 할당을 받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현행 통합허가기준 적용기한 연장 조치사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6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기 존 원료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폐기물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기간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대 30일을 적용 개 선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기간을 180일로 확대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7	통합허가 및 대기총량허가 접수창구 단일화	기 존 통합허가와 총량허가는 별개의 허가로, 유사한 첨부서류를 허가접수 창구가 분리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개 선 서류 중복제출 지양 및 허가기간 단축으로 사업자 행정편의 제고 조치사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8	기술검토 일원화	기 존 각 법령상 규제기준* 마련을 위해 기술수준 등을 각각 검토 *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대기관리권역법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환경오염시설법의 최대배출기준 개 선 '배출허용기준-통합허가-총량관리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대한 기술 및 규제 수준을 통합검토(기술작업반 공동활용) 조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9	전기차 배터리 유통체계 구축 지원	기 존 비반납대상 전기차 폐배터리의 발생 증가에도 민간 인프라 부족으로 유통체계 미흡 개 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성능평가, 매각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유통 지원 조치사항 환경부-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10	폐전지류의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기 존 전지류에 대한 폐기물 세부 분류에 '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만 규정 개 선 전지류 폐기물 분류기준을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폐기물 분류체계별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비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속처리	기 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아야 운영 가능하나, 영세 사업장은 검사결과서 발급(30일 소요) 전까지 시설 운영이 불가 개 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로만 구성된 설치검사 신청에 한하여 15일 이내 검사결과서 발급 조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2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체계 도입	기 존 계획·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업 내용의 특성 고려 없이 동일한 평가절차 진행 개 선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여, 심층평가·신속평가 등 차등화된 평가체계 도입 조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3	환경영향평가사업 생태면적률 특례 부여	기 존 지역실정 고려 없이 사업별로만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 설정 개 선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계획·사업의 경우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를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조치사항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4	남은 식품의 사료자원화 허용	기 존 농산물 유통과정 중 상품성 저하 채소, 집단급식소 조리 전 식재료 등도 일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개 선 조리 전 식재료, 유통 중 상품성 저하 채소 등을 동·식물성잔재물로 분류하여 사료 가공 허용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5	보증금표시 적정 여부 표본조사 의무 완화	기 존 지자체장의 관할구역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대상 보증금제품의 표시 적정여부 표본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나(「자원재활용법」 제36조), 고시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에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의무 부여 개 선 지자체의 적정 여부 표본조사를 자율 시행으로 개정 조치사항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
16	위생안전인증제도 절차 간소화	기 존 제품시험 불합격 업체가 인증 재신청 시 제품시험 이전 절차인 서류심사, 공장심사를 동일하게 진행 개 선 '제품시험' 불합격 업체가 일정 기간(1개월) 내 인증 재신청 시, 공장심사 항목 중 일부 생략 조치사항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개정
17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 확대	기 존 7개 품목* 순환자원 지정·고시 운영 중 *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개 선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 등 신규 품목 발굴 및 품목별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지정·고시 조치사항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8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기 존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공동제출 및 기존자료의 활용에 대한 과도한 비용 요구 개 선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분·담계상 시 합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활용에 관한 분쟁조정(정부) 신청 범위 확대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9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효력 승계 근거 마련	기 존 국외 제조·생산자가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신고 업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이 부재 개 선 새로운 대리인이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효력을 승계하도록 규정을 마련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0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기 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표시사항 일부 오표기 등)도 고발 조치 개 선 표시기준 및 광고 제한사항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조치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1	관리대행업 등록기준 및 등록요건 완화	기 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모든 장비를 각각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 개 선 공통되는 장비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 배출 예외 허용	기 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 폐수배출시설 등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 하수가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없음 개 선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효율적인 오폐수처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은 하수를 제공 조치사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3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한도 상향	기 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지원한도는 기업당 1조 원에 불과 개 선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지원한도 상향(기업당 1조 원 → 2조 원) 조치사항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 개정
24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	기 존 전기자동차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시 운전자 안전성 고려 미흡 개 선 저온 시험 시 차량 내부온도, 시간당 정지구간 의무사항 적용 등 시험 개선 조치사항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25	하천편입토지보상 소멸시효 연장	기 존 과거 보상 없이 국유화되었던 하천구역 내 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에 만료 개 선 보상청구기한을 2033년 12월까지 10년 연장 조치사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6	댐 주변 정비사업 지원 확대	기 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한도 200억 원, 총 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댐 대상 미포함 개 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한도 700억 원, 총 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대상에 포함, 스마트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 추가 조치사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7	수익자부담금 제도 폐지	기 존 댐 건설시점에 하류발전사업자의 예상증가 수익을 산정하여 예상 증가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 개 선 수익자부담금 제도 폐지 조치사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8	유상할당 경매 참여대상 확대	기 존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참여 대상이 유상할당 대상업체에 한정 개 선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참여 대상을 유·무상할당 대상업체로 확대 조치사항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개정
29	배출권 이월 및 차입 기준 완화	기 존 (이월기준) 해당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KAU)과 상쇄배출권(KCU)의 순매도량의 5배, (차입기준) 해당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15% 이내 개 선 (이월기준) 해당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KAU)과 상쇄배출권(KCU)의 순매도량의 6~10배, (차입기준) 해당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30% 이내 조치사항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이월·차입 기준 완화 반영
30	배출권 거래시장 제3자 참여자 확대	기 존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 참여자는 할당 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한정 개 선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 참여자에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추가 조치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1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완화	기 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개 선 체납된 부담금의 1천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조치사항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32	배출권거래제 위탁매매 시스템 도입	기 존 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를 통해서만 배출권의 거래가 가능 개 선 위탁매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소를 직접 거치지 않고 배출권 거래 가능 조치사항 위탁매매 시스템 구축 및 도입
33	열분해시설 수율을 측정하는 절차 명확화	기 존 열분해유 회수율을 50%이상으로 명시하였으나 측정 단계가 불명확 개 선 열분해시설의 검사시간 및 수율 측정 위치 명확화 조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34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마련	기 존 암모니아 원료 기반의 수소추출설비는 안전기준이 부재 개 선 암모니아(부식성, 독성 등)를 원료로 활용한 수소추출설비 적용 안전기준 마련 조치사항 수소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
35	화학물질 등록·신고 관련 민원접수 일원화	기 존 화학물질 등록·신고(선임·해임)에 있어 업무별로 여러 기관에 같은 서류를 중복 제출 개 선 민원접수처를 일원화하여 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6	재난방지를 위한 긴급한 하천공사의 추진절차 간소화	기 존 재난 방지 등을 위한 하천공사의 경우에도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고시(하천법 제27조) 등 절차이행에 장기간 소요 개 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긴급한 하천공사를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경미한 하천공사'에 포함 조치사항 하천법 시행령 개정
37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서류 보관방법 개선	기 존 시료채취기록부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4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서류 보관의무 존재 개 선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시스템)에 입력한 서류에 한해서는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조치사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38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 지원	기 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연료나 산업소재를 만드는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음 개 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조치사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39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성능평가 합리화	기 존 전기차 성능 평가 시 불필요한 항목, 기준 개정 필요 개 선 자동차 운영환경 항목 평가기준 개선(16일 방치→7일 방치)로 시험기간 단축 조치사항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40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 일원화	기 존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대기배출물질·소음 측정을 위한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법이 부처 간 상이 개 선 공동고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기준 개선안 마련 조치사항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4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기 존 환경오염과 관계없는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개월 개 선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로 하향 조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42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	기 존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 측정 시 극단적인 조건으로 측정하여, 실제 저온 주행거리와 격차 발생 개 선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안 마련 조치사항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43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개선	기 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는 시간당 처분능력 100kg 이상의 기계적 방식으로만 한정 개 선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거쳐 다양한 멸균분쇄기술 허용 및 처분능력 기준 완화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4	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간소화	기 존 전기차 전류, 전압 측정 시 환경부 형식승인을 취득한 장비로 측정 개 선 전류, 전압 측정 시 OBD 단자를 활용한 측정방식도 허용 조치사항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45	폐의류 폐기물 규제 합리화	기 존 폐의류가 폐기물 규제 대상으로 분류 개 선 의류관리제도를 마련하여 폐의류 폐기물 규제합리화 방안 도출 조치사항 의류 환경협의체 운영
46	전기차 충전기 관리 강화	기 존 전기자동차 충전기 고장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 야기 개 선 사업수행기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재사항을 마련 조치사항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개정
47	지자체가 운영하는 친환경 선박운행 허가	기 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행을 허용하였으나,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운행 금지 개 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전기·수소·태양) 선박 운행 허용 조치사항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48	지자체 녹색생활 확산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기 존 에코마일리지 사업 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취급·처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나, 지자체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부재 개 선 인센티브 부여사업(탄소중립포인트, 에코마일리지)의 지자체 추진 근거 마련 조치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49	온배수 재이용 범위 확대를 위한 물재이용법 개정	기 존 재이용가능 온배수의 범위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 제외) 온배수'로 한정하여,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재이용 불가 개 선 재이용 가능한 온배수의 범위를 공장 온배수까지 확대 조치사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50	댐건설관리법 수익자부담금 폐지	기 존 댐 건설비용 일부를 하류 수력발전사업자에 부과 개 선 제도 도입 이래 징수실적이 없어 댐건설관리법 수익자부담금 폐지 조치사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5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부정당제재 종료기업 감적 삭제	기 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부정당제재 기업에 대하여 제재종료 후에도 적격업체 평가 시 감점 처리하여 이중처벌 문제 발생 개 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시 감점항목을 삭제 조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
52	폐기물 처리신고자의 기술관리인 의무 채용기준 완화	기 존 1일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하는 처리업체는 자격증 보유 기술관리인 채용 필수 개 선 음식물류 폐기물 1일 재활용능력 5톤 이상 10톤 미만인 시설은 '그 밖의 시설'로 간주하여,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으로 완화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53	폐기물 매립시설 상부토지를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이용 확대	기 존 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 종료 후 30년간 사후관리하며, 매립시설 상부의 토지이용 용도를 제한 개 선 최종복토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토지이용 가능 용도 확대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개정
54	대책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기 존 잔류성오염물질이 함께 오염된 경우 정화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청취는 의무이나, 대책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청취는 의무사항이 아님 개 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 도입 조치사항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55	토양정화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기 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사항 발생 시 영업정지 조치만 부과 가능 개 선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 조치사항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6	산림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기 존 산림의 조성·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한 산림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개 선 유사 성격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57	배출권거래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기 존 과태료 부과기준 부재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관계 없이 동일 과태료 부과(1천만 원 이하) 개 선 배출량 허위보고와 같은 중대 위반사항과 구별하여, 취소사유 미보고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합리적 과태료 부과 조치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8	Copper 유독물질 지정 제외 유예	기 존 Copper(CAS No. 7440-50-8)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질로 통보됨에 따라 유독물질 지정 예정 개 선 Copper 입자크기 1mm 이상인 경우 제외, 신규 유독물질 지정 시 이행기간 고려하여 2년~최대 4년 유예기간 부여 조치사항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17 농림축산식품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규모 상한 폐지	기 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기준은 1만5천㎡이상 100만㎡ 미만 개 선 농촌경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규모상한(100만㎡) 삭제 조치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2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신청 처리기한 신설	기 존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서식 내 처리기한 부재 개 선 서식 내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지자체 행정절차의 효율화 추진 조치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3	2톤 미만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기 존 건설기계 중 하나인 지게차는 농작물 상·하차 등 농업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농업기계로 미분류 개 선 2톤 미만의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포함 조치사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4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기 존 반려동물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을 위한 기초정보(생년월일 등) 등록·관리체계가 부재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진료절차 등)도 부족 개 선 반려동물 보험DB 구축,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 조치사항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절차 고시 개정
5	반려동물 관련 업종 영업장 내 CCTV 설치 확대	기 존 반려동물 관련 업종 중 수입·생산·전시업은 학대방지를 위한 CCTV 설치의무 업종에서 제외 개 선 CCTV 설치의무 업종을 수입·생산·전시업까지 확대 조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6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기 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증 2차 실기시험 시 응시견 조건을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로 한정 개 선 응시견 조건에 배우자 명의 반려견 포함 등 자격제도 정비 조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7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제한 완화	기 존 정부양곡의 도정은 정부가 지정한 도정공장(120개)에서만 가능 개 선 정부관리양곡 도정시장의 진입제한을 완화 조치사항 정부관리 양곡처리 도급계약체결요령 개정
8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 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연대보증서,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개 선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및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조치사항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및 연대보증제 폐지
9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기 존 장묘시설 표준 가격정보 등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 미흡 개 선 장묘시설 표준 가격정보를 포함한 장례절차, 업체정보 등이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조치사항 동물보호법 개정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선
10	농지성토용 재활용 토사의 기준 명확화	기 존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흙)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농지법령상 구체적인 기준 부재 개 선 농지에서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토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조치사항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11	주말농장 내 주차장 허용	기 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주말농장에 주차장 시설 부재 개 선 주차장을 농지이용행위(부속시설)로 허용 조치사항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18 농촌진흥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 간소화	기 존 무인항공용 논 제초제는 다수 등록되어 노동력 절감에 활용되고 있으나, 밭 제초제는 상대적으로 부재 개 선 농작물 재배예정지에 손 살포용으로 등록된 농약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무인항공용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
2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비료(상토) 허용	기 존 용광로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는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나, 비료의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원료가 제한됨에 따라 원예작물 비료(상토)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 불가 개 선 비료(상토)의 사용가능 원료로 고로슬래그 추가 조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별표 개정
3	가축분뇨 액비 처방기준 완화	기 존 연간 액비 최대사용량은 '비료사용처방서'를 준수하여 사용량을 처방하고, 작물별 질소·인·칼륨 필요량과 액비의 질소·인·칼륨 성분함량에 따라 하나의 성분도 초과되지 않게 처방 개 선 토양 칼륨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보다 낮은 논은 질소·인으로 액비를 처방하여 칼륨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완화 조치사항 가축분뇨발효액(액비) 활용 분석지침 개정
4	천연생장조정물질 비료원료 허용기준 개선	기 존 천연생장조절물질 비료원료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협소·불명확 개 선 생장조절물질이 해초추출물처럼 천연 함유된 원료에 대해서는 0.12ppm 이하로 검출될 경우 비의도적 농약성분을 예외적 허용하여 비료관리법 위반행위에서 제외 조치 조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5	토양살충제(터부포스) 잔류기준 설정	기 존 토양 내 서식 해충 방제를 위한 터부포스 농약은 효과가 높고 가격이 저렴하여 토양살충제로 선호도 높음 개 선 PLS제도에 따라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하던 것을 별도 후작물 기준(0.1mg/kg 등)으로 설정하여 완화 조치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6	농촌지도사업 청년농업인 기준 완화	기 존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시 청년농업인은 청년배정 사업 참여와 선정 가점 대상이나, 장기교육 선발로 교육 수료 후 연령이 초과하는 경우 대상 제외 개 선 장기교육 선발로 교육 수료 후 사업신청 연령이 초과하는 경우도 교육수료 차년도까지 청년농업인으로 인정 조치사항 2026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반영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7	농업과학도서관 이용 연령 확대	기 존 16세 미만인 이용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대출 서비스 이용 불가 개 선 모든 아동·청소년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제도 및 기능 개선 조치사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개정
8	과수화상병 매몰지 재식재 금지기간 단축	기 존 과수화상병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해 매몰지에는 24개월간 과수나무 재식재가 금지 개 선 화상병균에 대한 토양 잔재물 연구결과(국립농업과학원)를 토대로 재식재 금지기간 단축(24개월→18개월) 조치사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

19 문화체육관광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음악·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을 하려는 자의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기 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 개 선 관련 내용 삭제하여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조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의 신고·변경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기 존 시장 등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개 선 관련 조문 삭제하여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조치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3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의 신고·변경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기 존 시장 등은 인쇄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개 선 관련 조문 삭제하여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조치사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선
4	체육시설업 휴·폐업 시 회원 통지 의무 부과	기 존 체육시설업 휴·폐업 시 사업자는 휴·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휴·폐업 사실을 통보 개 선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 회원 등에게 통지 의무 부과 조치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사무소 등록기준 완화	기 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중 '독립된 사무소' 기준을 요구 개 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중 시설 기준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개정 조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6	게임 확률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특례 마련	기 존 관련 규정 없음 개 선 게임 확률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특례 마련 조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7	출판사업자 폐업 신고기간 연장	기 존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이 7일로 짧음 개 선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완화 조치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8	인쇄사업자 폐업 신고기간 연장	기 존 인쇄사의 폐업신고 기한이 7일로 짧음 개 선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완화 조치사항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9	지역신문 기금 지원 요건 완화	기 존 지역신문 기금 지원요건에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 가입한 경우'가 존재 개 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4가지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가입한 경우' 삭제 조치사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10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관련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 구체화	기 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에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규정 개 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 조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11	문화콘텐츠 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투자 제한 완화	기 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문화콘텐츠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투자 비중 제한 개 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한 전략펀드 조성 조치사항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 조성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기 존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방송광고를 17-19시 모든프로그램에 대해 금지 개 선 고열량·저영양식품 방송광고를 17-19시 어린이주시청 프로그램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완화 조치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21 법무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의료관광 개선	기 존 의료관광 비자를 운영 중이나, 신청인이 재외 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애로 존재 개 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지정(39개→90개) 조치사항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2	온라인 법률플랫폼 개선 방안 마련	기 존 온라인 법률플랫폼 개선이 지연 개 선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조치사항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3	외국인 유학생 구직비자(D-10) 기간 연장	기 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비자로 국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단위가 6개월로 짧음 개 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구직비자(D-10) 기간을 1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4	톱티어 비자 신설	기 존 통일된 우수 인재 비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한 산발적 도입으로 해당 비자별 연계성 미흡 개 선 학술, 연구, 산업, 창업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비자 프레임워크 제시 조치사항 관련 지침 마련
5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식운영	기 존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존재 개 선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과학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 조치사항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시행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6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실시	기 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 제한 개 선 인구감소지역 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발급 조치사항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22 보건복지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 명확화	기 존 사망자데이터는 개보법 규율 대상이 아니나, 명확한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존재 개 선 복지부·개보위 합동으로 사망자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하여 사망자데이터 활용 활성화 조치사항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2	난치질환의 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기 존 난치질환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치료신청의 예측가능성 저하 개 선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난치질환 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3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 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화되었음에도 의료인만 합법적 문신 시술이 가능 개 선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 조치사항 문신사법 제정
4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규제 완화	기 존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단계적 적용('24.2~) 후 소상공인 등 현장의 규제 저항이 심화 개 선 법령 개정을 통해 중복 및 과중한 규제를 정비하고, 이용자 선호와 기기 현황을 고려한 편의제공 방식 다양화 조치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 실증특례	기 존 약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는 반려동물 등 치료를 위해 인체용 의약품이 필요 시 약국개설자에게서만 구입 가능 개 선 의약품도매상이 동물병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동물용의약품·인체용의약품을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 도입 조치사항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위 의결 및 실증특례 부여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6	첨단재생의료의 수입원료세포사용 허용 규제샌드박스 지정	기 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 등은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받은 기관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에 공급 가능하나, 세포처리시설 업무에 수입이 포함되지 않아 연구에 사용가능한 원료세포가 제한 개 선 해외로부터 원료세포를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추진 조치사항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7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연장	기 존 기존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직전 등급과 같은 경우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인정 개 선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5년으로,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연장 조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8	병원 밖 이동형 엑스선 장치 활용을 위한 사용기준 마련	기 존 의료기관 외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이동검진차량 장착 또는 차량 통행 불가 지역에 한정 개 선 위해성 우려가 적은 저선량 포터블엑스선 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 조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9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요건 확대	기 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요건을 주·야간보호기관 기반으로 제한 개 선 방문간호기관 기반으로도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요건 확대 조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0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신청 등 온라인 접수 허용	기 존 신규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나, 수급 자격 갱신·등급변경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개 선 장애인 활동 자격 수급 자격 갱신 등의 업무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토록 복지로 시스템 개선 조치사항 복지로 시스템 개선
11	노인복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위탁요건 완화	기 존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이 있어야만 노인복지주택 위탁 운영 가능 개 선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실시경험 요건 삭제 조치사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12	사회복지시설 군복무 관련 경력 인정 확대	기 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군복무 관련 경력인정과 호봉 획정 시 대체역,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 개 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군복무 경력인정 범위 확대·개선 조치사항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3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부여	기 존 청소년 장애인(14세~18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미비 개 선 청소년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조치사항 관련 기관 간 연계 완료
14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편의 개선	기 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노인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 가능 개 선 대리 신청 업무편의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과 치매안심정보시스템 간 연계기반 마련 조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5	부부가 아닌 자도 가임력 검사 지원 및 검사횟수 확대	기 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대상을 임신준비 부부에 한해 생애 1회만 지원 개 선 결혼여부/자녀수 무관, 20~49세 남녀 무관하게 주기별 1회(최대3회) 지원 조치사항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
16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점검 및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통합	기 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관리 점검과 장기요양 기관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 기관운영에 부담 개 선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시 CCTV 설치조사 시 통합 조사 추진 조치사항 서식 개정
17	응급환자 이송업 사무실 면적요건 완화	기 존 응급환자 이송업을 위해서는 66㎡ 이상의 사무실 면적 필요 개 선 응급환자 이송업 사무실 면적요건 면제 조치사항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18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 분류	기 존 첨단재생의료법상 임상연구의 위험도 분류(저중고)를 사안별 안전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필요 개 선 현행 위험도 기준에도 불구, 충분한 연구자료가 축적된 경우 등에는 위험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조치사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3 산림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부담 완화	기 존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의 처리기간 30일 개 선 신속한 행정처리로 인해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 조치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 위임	기 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기준을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마련 개 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 조치사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3	임업용산지 내 가축방목 시 입목·죽 보호시설 설치의무 면제	기 존 임업용산지 내 가축방목 시 가축(52종)에 대해 입목·죽 보호시설 설치의무 개 선 임업용산지 내 가축방목 시 입목·죽 보호시설 설치의무 면제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4	국·공립 수목원 조성면적 기준 예외 인정	기 존 사립·학교수목원이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어도, 사립·학교수목원과 국·공립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이 달라 기부받기 어려움 개 선 국공립수목원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를 규정 조치사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5	유해 조사·발굴을 위한 국유림 대부 등 제출서류 간소화	기 존 국유림 내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해 대부 등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측량한 실측도 제출 필요 개 선 신속한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해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제출 허용 조치사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6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농림어업인 범위 명확화	기 존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별도로 미규정 개 선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7	국가 및 지자체 자금지원 대상 확대	기 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비를 융자·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목원은 제외 개 선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 조성·관리 및 운영' 추가 반영 조치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기 존 시장·군수 등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개 선 시장·군수 등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산림경영계획서 사업내용 대상 기준 완화	기 존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조림, 숲가꾸기, 벌채·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개 선 산림경영계획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을 경영계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지자체장 동의시 채석단지 지정허용	기 존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 내에서는 토석채취 행위 불가 개 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지자체장 동의 시에는 채석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토석채취제한지역 행위제한 완화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1	다자녀 가정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전면 면제	기 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은 주차료 부과 대상 개 선 객실 및 야영장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다자녀 가정'은 주차료 전면 면제 조치사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별표 개정
12	교통취약지 등 산림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기 존 산림정책자금 신청 시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한 지역산림조합으로만 신청 가능 개 선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13	토석채취 허가 시 채석경제성평가 기준 완화	기 존 채석경제성평가 시 허가면적 기준을 '시추면적'으로 산정 개 선 채석경제성평가 시 허가면적 기준을 '채취면적'으로 개선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14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채석경제성 평가 수행기관 확대	기 존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채석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 등 6개 기관(자)만 가능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광업·건설부문 기술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지질조사·광물자원연구사업 수행법인), 산지보전협회 개 선 채석경제성 평가 수행기관에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추가하여 확대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5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관련 재해방지 기준 마련	기 존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부대시설의 설치 시 산사태취약지역 검토기준 부재 개 선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부대시설의 설치 조건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편입하지 않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조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16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복구비 예치 면제	기 존 산지에서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복구비 예치 대상 개 선 산지 내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은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복구비 예치 면제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7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강의실 면적요건 폐지	기 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66㎡ 이상 강의실 필요 개 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강의실 면적요건 폐지 조치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18	사방지 지정해제 경과기간 단축	기 존 사방사업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직권으로 사방지 지정해제 가능 개 선 사방지 지정에 따른 산주의 재산권 침해 방지 및 사방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사방사업 후 1년이 경과하면 직권으로 사방지 지정해제 허용 조치사항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
19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규제 개선	기 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조성 시 사업면적과 상관없이 진입로의 연장거리를 10㎞로 제한 개 선 진입로를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도의 타당성 평가와 설계 및 시공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 진입로 연장거리 기준 삭제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20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기 존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는 허용하나, 판매시설은 제한 개 선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조치사항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예규) 개정
21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기준 완화	기 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표고,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100분의 10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허용 개 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표고,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100분의 20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허용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2	숲경영체험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개선	기 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사업구역 면적 기준으로 적용 개 선 숲경영체험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 기준을 실질 개발면적으로 개선 조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3	임업용산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용	기 존 임업용산지에서 공용·공공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개 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4	산지경사도 25°이상 면적 제한을 골프장 개발면적의 50%이하 완화	기 존 경사도 측정 기준 골프장 전제면적 개 선 경사도 측정기준 골프장 전체면적 중 원형보전지역 제외 조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개정

24 산업통상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지역냉난방 열요금 제도 개선	기 존 시장 기준 요금보다 총괄원가가 낮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요금 사업자로서 시장기준요금의 100% 준용하여 열요금을 부과 개 선 시장 기준 요금보다 낮은 요금 상한을 신설(단계적 추진, 98%→97%→95%) 조치사항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2	이동수단용 복합재료용기 최고충전압력 상향	기 존 복합재료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이 35MPa로 제한 개 선 이동수단용 복합재료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을 87.5MPa까지 상향 조치사항 고압가스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 제정
3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대상 확대	기 존 고정식 수소충전소는 이동수단 전반을 대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반면,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한정 개 선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이동수단 전반으로 확대 조치사항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4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성능 평가제도 도입	기 존 국내의 경우 수소충전 관련 규격 및 절차에 관한 확인 제도 부재 개 선 고압·고속 충전 환경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방법, 절차 등 규정 조치사항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제정	기 존 건설기계용 연료전지는 안전기준이 부재 개 선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 조치사항 수소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 제정
6	로봇 현장 도입 시 일관된 기준 적용	기 존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간소화 개 선 인증 심사 시 평가항목 축소 (16개→8개),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추진 조치사항 인증 제도 개선
7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	기 존 집단에너지 부담금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라는 단일 목적 이행을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정비 필요 개 선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부담금을 폐지하고 분담금으로 전환 조치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8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의 매입·임대방안 개선	기 존 산업단지는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만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운영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이후에 임대 가능 개 선 산단 관리정책을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해소되고 첨단산업에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개선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9	녹색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 존 녹색인증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이 3년 개 선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
10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기 존 전기공사기술자는 특급/고급/중급/초급 등급별로 시행 가능한 시공관리를 구분 개 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순수 현장경력 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조치사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1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시 심의·의결사항 네거티브화	기 존 개발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심의 개 선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정의하고, 그 외 사항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2	전북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 활성화	기 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충전사업 중 LNG 자동차 충전은 고정식(배관 또는 탱크)을 통한 충전 방식만 허용 개 선 NG 탱크로리를 통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관련 시설 기준 등 신설 조치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3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권한 위임 및 경미한 사항 범위 확대	기 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 개 선 토지용도변경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자체에서 자체변경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 조치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4	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기 존 엔지니어링 사업입찰에서 사업 수행실적을 '상대평가' 방식으로만 평가 개 선 발주청이 사업특성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선택적으로 적용 조치사항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
15	디지털 도어록 안전기준 개정	기 존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으로 건전지나 어댑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 선 화재 시 안전성능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이차전지를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조치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16	산업단지 내 연접한 산업용지 토지임대 허용	기 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토지 임대차 불가 개 선 인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 일부의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허용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5 새만금개발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기 존 새만금사업을 위해 설립한 신규법인은 매출액과 사업내용 등이 없어 신용평가를 받기가 부적절 개 선 신용평가 대상을 외투기업이 아닌 외국투자가로 명확화 조치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6 성평등가족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수습기간 요건 완화	기 존 수습기간 6개월 내에 수습기간 중 교육 과정 이수가 필요하나, 평일 근무 등으로 인해 6개월 내 교육 이수에 어려움 개 선 수습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조치사항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개정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양식 간소화	기 존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의 어려움과 업무부담 호소 개 선 평가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정책 점검사항 및 개선안을 정형화한 자가진단형(체크리스트) 평가 확대 조치사항 성별영향평가 지침 개정
3	가정밖 청소년의 임대주택 지원요건 완화 및 신청절차 간소화	기 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 중 시설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로 요건 규정 개 선 LH공공임대주택의 지원요건 중 '시설 이용기간 2년 이상' 요건 삭제 및 신청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

27 소방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소화기 적응화재별 그림 및 문자 병기 의무화	기 존 소화기 본체에 그림과 문자의 병기 의무화 조건 부재 개 선 소화기 본체용기에 적응화재별(A,B,C,D,K) 그림과 문자 병기 의무화하도록 규정 조치사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2	소방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 개선으로 제품의 안정성 확보 및 화재피해 최소화	기 존 소방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이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화재 시 단선에 따른 2차 사고 방지 필요 개 선 소방용전선의 내화시험 강화 및 국제표준을 반영, 기본보다 고온에서도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조치사항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3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확인 기준을 마련하여 작동 신뢰성 및 제품 안정성 확보	기 존 현재 가스계소화설비에 사용하는 헤드의 성능확인 기준이 부재 개 선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내식 및 강도 성능 확인을 위한 기준 마련 조치사항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4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개선으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 확보	기 존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객실별 수용인원을 미고려 개 선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 조치사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개정
5	금속화재(나트륨, 칼륨)용 소화기 인증기준 마련	기 존 금속화재 중 마그네슘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 인증기준만 존재 개 선 금속화재(나트륨, 칼륨)용 적응성 있는 소화기 인증기준 마련 조치사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6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증기준	기 존 복도 폭 규제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불가사례 다수 발생 개 선 용도변경 시 화재·피난안전성 검토(성능위주설계 인용)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 제정(공동고시) 조치사항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개정
7	전국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공개	기 존 숙박시설 예약·이용 시, 이용자가 스프링클러의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부재 개 선 숙박 예약플랫폼 사용 시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를 연계하고, 숙박시설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상시 공개 조치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8	지하주차장·전기차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	기 존 지하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 구역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관련 법령 미흡 개 선 소규모 지하주차장 소화활동설비 설치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제정 조치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개선	기 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불필요한 가점 및 서류제출 등 미비점 존재 개 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하한 응시연령을 18세로 통일하고, 가점 및 서류제출 요건 합리화 조치사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 개정
10	반도체 공장 소방규제 완화	기 존 현행 건축법령 및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미반영 개 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및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조치사항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통일된 화학물질 위험정보 제공	기 존 GHS 제도는 부처 간 이견이 많아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 개 선 부처별 상이한 GHS정보 현황 공유 및 GHS 정부합동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별 화학물질 분류·표시 체계 통일 표준안 마련 조치사항 25년 GHS정보 통일화 추진
12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간소화	기 존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를 2통씩 제출하도록 요구 개 선 신규채용 관련 서류 제출 시 1통씩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28 식품의약품안전처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AI 기술 활용 의료기기 1등급 민원 검토	기 존 1등급 의료기기 신고 민원은 신생 소규모 업체가 주로 이용하여, 규정 미숙지에 따른 반복적 민원서류 보완 발생 개 선 AI 알고리즘 개발 및 데이터 수집·학습으로 민원서류 검토 시스템 구축 및 적용 조치사항 1등급 의료기기 사전검토 시스템 구축 및 적용
2	상담을 통해 풀어가는 약물감시 계획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 강화	기 존 위해성 관리 계획(RMP)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약물감시 계획 타당성 인정 여부는 식약처의 심사 과정 이후 확인 가능 개 선 허가(변경 포함) 민원 진행 중 보완 전/후에 약물감시 계획 관련 상담 운영 조치사항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3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기 존 소수의 심사자가 품질, 비임상, 임상 등 허가심사 신청자료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시간 소요 개 선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다수의 심사자가 전문분야별로 동시·병렬적 검토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바이오시밀러 관련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지침서) 마련
4	항암제 임상 참여요건 개선으로 혁신항암제 치료 기회 확대	기 존 치료법이 더 이상 없는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하던 항암제 임상시험을, 1차 또는 2차 치료 환자 대상으로 전환 개 선 완치가 어려운 치료상황에서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심사기준 마련 조치사항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마련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의약품 제조소 GMP 적합판정 정기조사 시 현장조사 외의 조사 운영방안 마련	기 존 모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 3년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 시 유효기간을 3년 연장 개 선 다음 현장조사 주기 도래까지 제조소의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업체는 현장조사 외의 조사를 실시 조치사항 GMP 적합판정 정기조사 시 현장조사 외의 조사 운영방안 마련
6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신속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 존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 화장품 중 기준이 마련된 액상 형태의 제품만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일부자료 제출 면제 및 보고 가능 개 선 고형제로 개발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 화장품도 자료제출 면제 및 보고 대상으로 확대 조치사항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7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우선 GMP 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	기 존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중단 사례 발생 개 선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우려 발생 시 우선 GMP 심사 실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8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기 존 국가필수의약품의 품목을 확대 중이나, 의료현장에서는 아직도 필수의약품이 부족 개 선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개선 및 현장에 기반한 안정공급 정책 추진체계 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조치사항 약사법 개정
9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한 중량표시제 적극 도입	기 존 중량표시 대상이 아닌 치킨에 대해 가격은 그대로 두고, 가공식품 중량을 5%초과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 가격 인상 개 선 단위(100g) 가격이 아닌 조리 전 생육 총중량을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치킨 중량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10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개선	기 존 영업자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점검 후, 식약처 현지실사 점검결과에 의해 등록 개 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식약처 점검 없이 검토 후 등록 조치사항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개정
11	건강기능식품 교육기관 운영 실적 보고 개선	기 존 교육기관이 매월 관할 관청(지방식약청, 지자체)에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 및 교육수료자 명단 보고 개 선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 보고 의무를 삭제하고, 매월 교육수료자 명단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보고한 경우도 인정 조치사항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2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제조·수입 업체 출입검사	기 존 GMP 품목에 관한 자료 요구 시 현장조사 범위에 대한 기준 불명확 개 선 GMP 품목 심사 범위 명확화 조치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13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 활성화 지원	기 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CDMO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개 선 바이오의약품 CDMO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조치사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14	로봇수술 등 신기술 적용 제품의 선제적 허가심사 기준 마련	기 존 로봇수술 등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부재 개 선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선제적 규제환경 마련 조치사항 로봇수술 등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15	AI를 도입한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 체계 전환	기 존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시행('25.6.14.)됨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통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 예상 개 선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 적용 확대 및 시범운영 조치사항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 체계 도입
16	허브류 재배에 필요한 농약 기준의 네거티브 규제 설정	기 존 특정 작물의 남아있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작물의 재배·유통 원칙적 금지 개 선 국가 주도의 신속한 농약기준 설정 조치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7	문신용 염료 기준·규격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 존 현행 세척제 등 20종 위생용품은 사용 가능한 성분을 목록으로 관리하거나 해당 성분의 안전성 검토 후 승인하는 포지티브 관리체계로 운영 개 선 문신용 염료는 사용금지·함량제한 성분 설정 등 네거티브 관리체계로 전환 조치사항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8	디지털의료기기 생산실적 보고 규정 정비	기 존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실적보고 서식이 부재하고, 생산실적 통계별 종사자 분류기준이 타부처 행정조사와 상이 개 선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실적보고 서식을 신설하고, 타부처와 종사자 분류기준 통일 조치사항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19	공급 부족 위기에도 안심, 바이오의약품 신속 공급 지원	기 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개 선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 확대* 등 공급부족 제품의 속도감 있는 민원처리 * (신속심사대상 확대) 신약·사전검토를 받은 의약품 → (추가) 공급위기 등이 발생한 의약품(제조소 변경 등) 조치사항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0	벌꿀 등 식품 대상 '천연' 표시 허용	기 존 벌꿀 등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시·광고는 허용되나, '천연'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불가 개 선 자연상태로 채집한 벌꿀 등 식품에 '천연' 표시가 가능토록 개선 조치사항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
21	위생용품 소분·판매 서비스 즉시 허용	기 존 위생용품(주방세제 등)을 소분하는 영업은 위생용품 제조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 개 선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 내 위생용품 소분행위가 가능한 관련 영업(또는 행위) 신설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22	수입 위생용품의 견본품 수입신고 면제	기 존 소량의 견본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시 수입신고 필요 개 선 무상으로 위생용품 견본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면제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23	생성형AI 기반 AI 상담원 운영	기 존 일부 제품(면류, 다류)에 한해 식품 표시기준 상담 AI 활용 서비스 운영 개 선 서비스 대상 제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표시기준 외 기준·규격, 준수사항 등을 상시 상담할 수 있는 AI 상담원 운영 조치사항 AI 식품 민원 상담시스템(온고지신) 구축
24	국민 비서를 활용한 개인 SNS로 과태료 고지	기 존 과태료 고지를 주로 우편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신청자에 한해 문자로 고지 개 선 국민비서 구비를 통하여 SNS 알림으로 과태료를 고지하고, SNS를 통해 본인확인 및 서명, 과태료 납부 가능 조치사항 국민비서 서비스 개선
25	세포치료제 신속 무균시험법 현장 활용 지원	기 존 가이드라인에는 신속 무균시험법 현장 활용을 위한 구체적 시험법 검증 기준과 세부 고려사항 등이 미흡 개 선 세포치료제 무균시험에 대한 신속 무균시험법(기존 2주→7일) 산업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검증기준 개발 및 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사항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 개정
26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향상	기 존 중증질환자에게 시급한 보험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허가-평가 연계를 통해 보험급여 절차 소요기간을 줄여 환자에게 도움 개 선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을 연계 대상 품목군으로 확대 조치사항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 공고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7	시험·검사 기관 교육, 실제 필요한 분이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 존 실험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도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공간의 한정으로 다양한 교육 확대 곤란 개 선 실질적 운영 책임자가 대표자 교육을 이수하고, 주 교육장 외에 외부 교육장 및 외부기관 검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28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 선제적 개선	기 존 건강기능식품의 고시된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업체에서 별도로 개별인정을 받도록 규정 개 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확대 조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9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 및 표준제조기준 신설	기 존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당뇨·신장질환·암 등 일부 질환용 제품만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조 개 선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조치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30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포장육을 판매	기 존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만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의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위탁받아 판매 가능 개 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의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위탁받아 판매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31	전자성적서를 모바일로 발급받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곳에 제출	기 존 시험·검사 의뢰와 검사, 성적서 조회까지 LIMS를 통해 이루어지나, 성적서 원본은 여전히 종이로 발급되어 유통 개 선 시험·검사 성적서를 모바일로 발급(전자성적서)하고, 필요한 곳에 온라인(전자문서지갑)으로 실시간 제출 조치사항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2	해썹 기준의 국제조화로 수출 경쟁력 강화	기 존 해썹 업체가 제품 수출 시 별도의 국제 통용 GFSI 승인을 받는 등 중복 인증 개 선 해썹 기준 국제기준 조화 추진 조치사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
33	고열량·저영양식품 등 TV방송광고 규제 개선	기 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오후 5시~7시까지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방송광고를 금지 개 선 방송광고 금지 대상 프로그램을 어린이 주 시청 프로그램(어린이·오락,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 조치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34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기 존 위생용품제조업자·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위생물품을 일정주기(1·3·6개월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또는 위탁검사) 실시 개 선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전반적으로 완화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35	위생용품, 영업자 검사 비용을 감축	기 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유사하게, 품목보고 대상 등 구분에 따라 주기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개 선 원료 및 제조환경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위생용품 특성을 고려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부적합 발생 품목 등 관리강화로 안전 확보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36	新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기 존 등재된 식품첨가물(619품목)만 식품제조에 사용 가능 개 선 식품첨가물 선제적 인정 및 품목 확대 조치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37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관리 기간 설정	기 존 최초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을 지속해서 수입하는 경우 5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 개 선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의 5회 연속 정밀검사 적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 조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38	해외 현지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영업자에게 주는 혜택 확대	기 존 해외제조업소를 자체 관리(위생점검 연 1회)하는 수입자에게 통관 시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중 개 선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 등 영업자의 안전관리 기여도를 고려, 우수수입업소 영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경감 규정 마련 조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39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는 요건 완화	기 존 국내 제조가공업소에서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원료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관검사에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는 성적서 제출 면제 개 선 자사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용도변경 신청 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 조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40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기 존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개 선 민간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전환 조치사항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폐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41	진드기 기피제 표준제조기준 마련	기 존 진드기 기피제는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 변경 시에도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의무화 개 선 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따른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조치사항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42	방사선방어용앞치마의 성능 안전기준 마련	기 존 의료기관 등에서 방사선 조사업무 종사자가 방사선방어용앞치마를 착용하며, 0.25mmPb 이상의 납당량 기준 만족 요구 개 선 방사선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납 이외 원료로 제작된 제품으로부터 앞치마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 조치사항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43	위생용품 영업 변경신고 신청기한 명확화	기 존 영업자 성명, 영업장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 필요 개 선 위생용품 영업 변경신고 신청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4	간편조리세트의 식품 영양표시방법 개선	기 존 자연산물이 포함된 간편조리세트(밀키트)는 산지·부위·시기 등에 따라 영양성분 변동성이 커 일정한 영양성분 표시가 곤란 개 선 간편조리세트 특성을 반영한 영양표시 방안 마련 조치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개정
45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	기 존 식품의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스티커 부착 가능 개 선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경우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표시 허용 조치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46	식품제조·가공업 인증 작업장에서 단순수산물 생산 허용	기 존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필요 개 선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에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공간을 설정하고, 청소계획 수립 등 조건 준수 시 단순수산물 생산 허용 조치사항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47	디지털 헬스기기의 국제적 규제기준 선도	기 존 IMDRF 등 다자간 협력체계 활동 지속 중이나, 국내 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어려움 개 선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국내 가이드라인 확산 및 국제화, 국내 디지털 임상평가 등 가이드라인 영문화 및 홍보 조치사항 국내 개발 기준 영문화 및 국가 간 MOU 체결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48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단맛이 개선된 감미료(스테비올배당체) 사용 허용	기 존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는 스테비아 잎으로부터 추출·정제한 방법으로 제조한 것만 인정 개 선 스테비올배당체의 제조방법으로 효소처리에 의한 바이오전환 방법 허용 조치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49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요건 완화	기 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요건을 관련학과 졸업자로 한정 개 선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 조건을 삭제 조치사항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 개정
50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관리 기준 개선	기 존 국내로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소는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관리자 정보 등 경미한 사항은 매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변경신고 실시 개 선 품목별로 달라지는 변경신고일을 통일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51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허가로 최첨단 의료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확대	기 존 디지털 의료제품에 일반 의료기기와 동일한 허가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최첨단 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 개 선 완제품 허가 외 구성요소(센서, 알고리즘 등) 허가, 기업인증 허가 도입 조치사항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개정
52	세상에 없던 생성형 AI 의료기기,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기 존 국내·외 유명 빅테크 기업은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 중 개 선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29 우주항공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도 개선	기 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군용시설에서 제조되는 경우 군수·민수 규제가 이중 적용 개 선 방위사업법상 제조 허가를 받은 군용시설에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 시 추가 기준 적용 없이 민수 허가 가능 조치사항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정

30 원자력안전위원회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기 존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가 '주무부처의 사업 허가·지정'에서 '원안위의 건설·운영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합리적 마련 필요 개 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부합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성 검사체계 마련 및 허가신청서류 정비 조치사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1 조달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건축 설계공모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기 존 공고서 상 사업설명회 참석 의무와 공모안 인쇄본 제출 및 제본 관련 규정 존재 개 선 사업설명회 참석 의무 폐지를 공고서에 반영하고, 공모 시 인쇄물 제출의무 폐지 조치사항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지침) 개정
2	행정편의적 제도 개선으로 기업 부담 완화	기 존 서류 제출, 인쇄물 제출, 평가 출석 의무 등 행정편의를 위한 조달 절차로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한 개 선 가격기준 통과 기업만 수행능력 서류제출 하도록 하고, 전산파일로 제출 등 조달행정 부담 완화 조치사항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등
3	조합의 인증정보 등 변동사항 통보 기간 확보	기 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인증 정보 변경 시 7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나, 조합은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개 선 조합의 경우도 일반 계약상대자와 동일하게 인증정보 통보기한을 7일로 완화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4	물품 AS 조건 및 절차 합리화	기 존 물품의 하자담보 기간 동안 무상 AS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AS요청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의무 존재 개 선 무상 AS의 대상을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요청 3일 이내 접수 및 AS 일정을 협의하도록 완화 조치사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물품적격심사 서류 보완 횟수 폐지	기 존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 요구 개 선 추가로 발생가능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가능토록 서류제출 보완 횟수 제한을 폐지 조치사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6	설계 공모안 인쇄물 제출 폐지	기 존 설계비 10억 원 이상의 설계공모의 경우, 전산파일과 함께 공모안 인쇄물을 제출(8~10부) 개 선 공모안 인쇄물은 미제출토록 개선 조치사항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7	목록화 자료의 제출의무 중복 규정 삭제	기 존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6조는 목록화 자료 제출의무를 규정하면서, 제품안내서·규격서 등을 필수대상으로 규정 개 선 목록화 자료 중 필수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목록화 자료 중에서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조치사항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8	불필요한 시스템 입력 의무 폐지	기 존 조달기업이 납품 중의 정보를 조달청 계약이행 진행상황 추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요구 개 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진행상황 추적관리 시스템 입력 의무 삭제 조치사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개정
9	외자 수의계약 시 기도입된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적용	기 존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감면이 가능 개 선 외자 수의계약 계약보증금 감면 대상 중 일부 선별하여 면제 조치사항 외자업무처리규정 개정
10	성능이행보증서 귀속 시 이의제기 불가 폐지	기 존 시운전 조건부 계약은 성능이행에 대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며, 시운전이 불가하여 보증금을 귀속할 때 이의제기 불가 개 선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 조치사항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11	납품검사 면제 품목의 기간 종료 후 2년간 재신청 제한 폐지	기 존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해당 면제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납품검사 면제 재신청 불가 개 선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목의 면제 종료 후 2년간 재신청 제한 폐지 조치사항 조달청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2	사업설명회 미참석 업체 공모 참가제한 폐지	기 존 건설 설계공모 시 사전 사업설명회 참석을 의무화 개 선 사업설명회에 불참하더라도 공모 참가 자격을 부여 조치사항 입찰공고서 내용 개정
13	모호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사유 삭제	기 존 해외물자 특성 상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해 수요기관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개 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입찰보증금 면제 예외사유 삭제 조치사항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14	합리적이지 않은 보훈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사유 삭제	기 존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공갈·협박·위협한 경우 또는 검찰기소 등으로 물량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훈복지단체 배정물량 축소 개 선 물량배정 감소 사유 중 계약과장에게 공갈 협박한 경우와 검찰기소된 경우는 삭제 조치사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처리규정 개정
15	납품 물품 포장 방법을 현장 준수 환경에 따라 개선	기 존 물품 납품 시 운송상의 파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포장하도록 규정을 운영 개 선 현장 준수 가능성이 낮은 접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 삭제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16	가격입찰 후 PQ평가 (선입찰) 적용사업 확대	기 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및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건설엔지니어 사업 발주 시 '선입찰 방식'의 적용 대상을 확대 개 선 예정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 조치사항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17	카탈로그 계약 제안서 등 서류보완 기간 보장	기 존 수요기관이 조달업체에 제안서 보완을 요청할 때 제안서 보완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 부재 개 선 3일 이상(공휴일 제외)의 서류보완 기한을 보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 개정
18	사후원가검토조건부(PS) 계약업무처리 기준 개선	기 존 입찰 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 체결 가능 개 선 최근 5년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통계를 토대로 PS항목 비중 단계별 처리방안 마련 조치사항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9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지체상금 부과 범위에서 기납부분 제외	기 존 외자 규정에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지체상금 부과 시 기납부분에 대한 처리 내용이 부재 개 선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범위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조치사항 외자계약일반조건 개정 및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20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할인행사 불허 기간 단축	기 존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할인행사는 할인행사 기간 종료 후 20일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개 선 불허 기간을 폐지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1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자격 요건 강화	기 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 수 대폭 증가 개 선 심사원의 교육이수 의무 강화 및 심사원 참관 의무 규정 신설 조치사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
22	시설공사 AI 기술평가도입으로 건설분야 AX전환 지원	기 존 시설공사에서 AI 기술은 기술형입찰 시 디지털기술로 통합 평가하거나, 관급자재 선정 등에서 우대 부족 개 선 AI 기술 적용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하고, AI 제품이 우선적으로 선정 되도록 평가 가점 등 신설 조치사항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
23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기 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의 범위와 대상이 한정되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불응 시 실효적 수단이 적어 개선 필요 개 선 불공정행위 징후분석 강화를 위한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조달청의 기획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관리 감독권 신설 등 입법 추진 조치사항 조달사업법 개정 및 전자조달법 개정
24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회 확대로 혁신기술기업 성장 지원	기 존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구매를 통한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1회에 한정하거나 일부 조건에서는 시범구매 미제공 개 선 기존 우수조달물품, MAS 등 계약체결된 제품과 소규모·소액 제품 중 시범구매 이력이 있어도 해외시범구매 예외 허용하고, 혁신제품 지정 유효 시 신청기한 제한없이 참여 허용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5	안전 중심의 조달 평가로 재해발생 방지	기 존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안전사회 및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시설 공사 등 조달 분야부터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 개 선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전 분야의 낙찰자 결정 시 중대 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도입 조치사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26	외자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편의 제고	기 존 외자 입찰에서 수요기관은 입찰참가 업체의 규격입찰서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부적합 업체는 5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개 선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를 나라장터에 마련 조치사항 외자 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개정 및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27	물품 MAS 납기지체 평가 개선	기 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은 연 2회 상·하반기에 계약이행실적 평가 대상으로 납품지체는 평균 납기 지체 일수로 평가 개 선 납기 지체가 없음에도 추가로 납기 지체가 발생된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이행실적 평가의 납기지체 관련 항목 개정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8	군피복류 MAS 2단계 적기납품과 품질평가 강화	기 존 수요군(軍)은 MAS 2단계 평가 부담으로 표준평가방식을 선호하나, 표준평가방식의 평가항목과 높은 가격배점으로 군 특성에 부적합 개 선 수요군(軍) 맞춤형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도입 조치사항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정
29	AI 기반 상용SW의 거래실적 요건 폐지	기 존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시 최근 2년간 3건 이상의 거래실적을 요구 개 선 AI기반 상용 SW 계약 시 거래실적 요건을 폐지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30	상용SW 거래정지 효력범위 명확화	기 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거래정지 효력이 디지털서비스몰 관련 계약 및 종합쇼핑몰 관련 계약 모두에 미칠수 있다고 규정 개 선 거래정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디지털서비스몰로 명확히 규정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31	단품 물가조정제도 시범 도입	기 존 공사에 적용되는 총액ES (물가변동) 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조정하는 제도 개 선 원가계산 대상 물품에 단품 물가조정제도 시범 도입 조치사항 단품 물가조정제도 시범 도입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32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 페널티 강화	기 존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시 심의회의 종합평가 결과 평점이 8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적격 판정하고 관급자재로 선정 개 선 납기지체율이 과도한 업체는 관급자재 납품에서 적기납품 항목에서 감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기납품 세부평가기준 조정 조치사항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
33	관급자재 선정 시 AI 활용기술 개발제품 평가 가점 신설	기 존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설계반영제품 관급자재는 다양한 기술개발 제품의 신청을 받은 후, 관급자재 선정심의회에서 종합평가하여 선정 개 선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 관급자재 선정 평가 시 AI 활용 기술개발제품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평가 가점 신설 검토 조치사항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
34	혁신제품 단가계약 요건 완화	기 존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은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또는 우대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체결 개 선 차기 단가계약 모집 공고 시 실적 및 우대조건 완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사항 혁신제품 단가계약 모집 공고 반영
35	중기간 경쟁제품 대상 2단계 경쟁 품목별 기준금액 상향 시범운영	기 존 MAS 2단계 경쟁 시 가격경쟁이 가능해 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 우려 개 선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검토기준에 따른 9개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1억 원 → 2억 원) 시범운영 추진 조치사항 수정공고 및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36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개선	기 존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 중 조달 공급 규모와 안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Ⅰ등급(113개) 또는 Ⅱ등급(162개)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물자로 지정 개 선 중요도에 따라 안전관리물자 등급을 세분화하고 안전관리물자 점검 주기를 단축 조치사항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
37	설계 외부자문위원회 재직 요건 완화	기 존 설계 외부자문위원회 재직을 위한 자격 요건을 나열 개 선 '위촉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 다만, 경력 10년 이하 및 퇴직 후 3년 도과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 조치사항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
38	조달물자 적기납품 및 품질관리 강화	기 존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강화, 공공시설 등의 관급자재 및 군수품 납품지연 방지와 품질확보에 대한 요구 증가 개 선 안전관리 물자 점검을 1등급 3년 주기로 변경하고, 납기지연 페널티를 개선하는 등 조달물자 적기납품 및 품질관리 강화 조치사항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등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39	타소보관 비축품목 재고조사 효율화	기 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장기보관이 어려운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타소 비축을 추진 중이며, 월별 현장 재고조사를 실시 개 선 장 조사를 모바일에 기반한 온라인 조사로 대체하되, 온라인 조사 결과의 추가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현장 조사를 실시 조치사항 타소보관방식 비축 공고 및 특수조건 개정
40	조달시장 적정대가 지급	기 존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분 반영, 공사적 특성을 고려한 간접공사비 적용, 낙찰율 등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개 선 공공공사 특성을 반영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점공사비 적용, 선박등 단품물가 조정제도 도입, 구매업무 협의 시 공공정보화사업 기능점수 표기 등 조치사항 일괄 등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41	공공주택 CM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정성평가 축소	기 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평가(20점) 및 기술제안서 평가(80점, 정량 및 정성) 합산 후 최고득점자로 낙찰자 결정 개 선 공공주택 CM 용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 조치사항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42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복수업종 평가기준 마련	기 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후 전문공사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는 발주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 개 선 복수 전문공사 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마련 조치사항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43	적격심사 상습포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제외	기 존 공급입찰 진행 시 공급가능성,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찰 후 적격심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제출을 포기하는 사례 급증 개 선 무차별입찰 방지를 위해 상습적인 심사 포기자를 계약체결 기피 우려자로 보아 입찰보증금 부과 의무 부여 조치사항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개정
44	상용SW 납품요구외 추가물품 무상제공 금지 조항 신설	기 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요구서 외 물품을 수요기관에 무상제공하여 지속적 문제 야기 개 선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의 무상제공 시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불이익 부여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45	MAS 2단계경쟁 사전판정 이의제기 절차 마련	기 존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의 사전판정 제외에 대한 업체의 이의제기 절차 없이 평가 진행 개 선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 사전판정의 이의신청 기간 부여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46	학술연구 수행능력 심사평가에 기술인력 평가 도입	기 존 현 적격심사 심사항목에는 기술 인력 평가요소 부재 개 선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분야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보유 평가'를 신설 조치사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47	품질보증 조달기업 정보변경 및 관리 절차 명확화	기 존 품질보증조달기업의 정보변경과 품질관리를 위한 불시 점검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부재 개 선 품질보증기업의 정보 변경 시 시설·장비 현장 심사 후 승계를 허용, 불시 점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요건 미충족 시 납품검사 면제 제외, 지정 취소 등 사후 처리 방안 강화 조치사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
48	혁신제품 실태점검 하자조치 규정 신설	기 존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 후 실태점검 시 하자 시정조치 미이행 등에 시범사용 기관만 불이익이 있고, 기업에 대한 불이익 규정 부재 개 선 시범구매 계약 혁신제품에 대해 실태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간 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 배제하도록 강화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49	혁신제품 부정당업자 단가계약 미체결	기 존 혁신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 체결 중에 있으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미체결 요건이 규정에 없어 계약체결 불가 시 민원 발생 개 선 부정당업자 제재, 지정취소 사유 발생, 소송·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문화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50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 평가시 KS인증기업 우대 방안 도입	기 존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서비스 KS인증 운영 개 선 서비스표준(KS) 인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서비스 신뢰도 관련 정량평가기준 신설 및 시범 적용 조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
51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절차 개선	기 존 군수품 품질 및 계약이행 확보를 위해 업체의 군수품 생산능력을 계약 이전에 확인하는 생산능력 확인 절차를 운영 개 선 조달청이 직접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생산능력 확인 기준을 현실화 조치사항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개정
52	생성형 AI 구독서비스 신규 도입	기 존 보안성 등의 문제로 현재 업무망에서 생성형 AI 사용 불가 개 선 민간의 생성형 AI 제품을 공공기관들이 쉽게 구매해 공공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독 서비스를 제공 조치사항 용역 카탈로그 계약 공고 반영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3	혁신제품 SW 융복합제품 규격추가 완화	기 존 혁신제품 규격추가는 세부품명이 동일한 경우만 가능하여, 적용기술이 같아도 세부품명이 다르면 신규로 심사 진행 필요 개 선 SW동일 기술이 적용된 다른 세부품명은 규격추가를 일괄로 심사하도록 규제합리화 및 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54	우수조달물품 임대서비스 제공	기 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MAS 3개 품명, 카탈로그 계약 14개 품명 등 총 17개 품명에 대해 임대서비스 제공 중 개 선 우수제품도 임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및 임대서비스 추가특수조건 제정
55	제3자 단가계약 계약해지 사유 정비	기 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특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개 선 객관적 기준이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등 개정
56	설계공모 입찰시 무효사유 명확화	기 존 조달청 설계공모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준하여 운영 중으로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 개 선 설계공모의 성격에 맞춰 입찰무효 사유를 명확화 조치사항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57	MAS 차기계약배제 예외 적용으로 업체 피해 방지	기 존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중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종결된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 차기계약(또는 재계약) 배제 개 선 배제기준은 종결 기준로 하되, 예외적으로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미종결된 품목이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허용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58	MAS 시험성적서 제출개선으로 서류제출 부담 완화	기 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만 제출 허용 개 선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시험성적서 사본제출 허용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59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기 존 제조역량이 부족하지만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혁신제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체 제도를 운영 개 선 혁신제품 지정신청 요건 중 협업체 결성 시 참여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다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60	상용소프트웨어 MAS 기본계약기간 연장	기 존 상용소프트웨어 MAS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 품목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하여 짧은 계약기간 적용 개 선 계약기간(3년)을 우선 부여하고 인증 상실 시 판매 중지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 개정
61	참여기술자 변경 승인 기간 확대	기 존 건설사업관리용역(CM) 참여기술자 변경 시 동급 이상 기술자를 지정하여, 배치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 사전승인 요구 개 선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 14일 전 승인으로 완화 조치사항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
62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사유 확대	기 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의 예외로 재해복구,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긴급구매 등을 포함 개 선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대응에 필요한 긴급조달의 경우에 2단계 경쟁 예외를 인정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63	약자기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사전심사 우대	기 존 환경·보건·안전에 영향이 크고 조달규모가 큰 일부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를 통해 계약자 선정 개 선 MAS 사전심사의 납품실적 평가(배점20점) 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중기업 또는 대기업보다 유리하게 평가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64	저출생 대응 및 탄소중립 등 국가정책 지원	기 존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약자기업 보호, 정책지원 목적의 다양한 신인도 가감점 제도 운영 중 개 선 물품 구매 적격심사, MAS 2단계경쟁 평가에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관련 신인도 가점 신설 조치사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65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위탁구매 범위 확대	기 존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은 제한·지명경쟁 입찰로 구매 가능 개 선 지침 개정('25년 일몰기한 도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위탁구매 기준금액 상향 조치사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 개정
66	상용SW 할인행사 횟수 확대	기 존 가격 할인을 통한 효율적 구매 및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상용 SW 할인 행사를 허용하되, 계약 기간에 따라 할인행사 횟수를 제한 (최대 7회) 개 선 할인행사 횟수 제한을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3회 허용으로 완화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67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외자운송계약 처무 규정 폐지	기 존 해외 도입 물자 구매 시 국적선 운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 개 선 폐지 행정 예고 후 폐지 추진 조치사항 외자운송계약 처무규정 폐지
68	상용SW MAS 2단계 경쟁 대행 서비스 규정 삭제	기 존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제안업체 및 납품 업체 선정 관련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 선 대행서비스 규정 삭제로 현장에서 운영되지 않는 규정의 현행화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삭제
69	입찰자의 시설공사 설계도면 복제·복사 허용 확대	기 존 설계도면의 복제·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입찰참가자의 입찰정보 접근성을 제한 개 선 입찰참가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도면 복제·복사를 원칙적 허용 조치사항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개정
70	제안서 평가 출석 의무 완화	기 존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시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 개 선 발표자(PM)가 출석한 경우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제안서 발표 허용 조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개정
71	MAS제품 단종시 대체납품 허용	기 존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시 규격 변경은 계약 규격의 본질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특성, 안전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개 선 납품연장 이후 제품이 단종되거나 납품기한 내에 책임 없는 사유로 단종된 경우 동등이상의 신제품 납품이 가능토록 규격변경 허용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72	소규모 기술형 입찰 운영 효율화	기 존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은 복잡한 심의 절차로 참여업체 부담이 크고 소요 기간도 상당 개 선 5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기술형 입찰 심의 절차를 간소화 조치사항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73	경제위기 극복 등 한시조치 시 2단계 경쟁 재공고 생략	기 존 상용소프트웨어 MAS 2단계 경쟁 제안 공고 결과, 1개사 제안 시 재공고 후 제안 업체가 1개사인 경우 납품업체 선정 개 선 기재부 장관 공고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납품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74	타소비축 참여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무상대여 개선	기 존 비축 물량의 일정 부분(30%)을 타소비축 사업자에 무상 대여 개 선 무상 대여의 기간을 타소비축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기간(1년) 내 자유롭게 정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타소보관방식 정부 비축 특수조건 개정
75	조달기업 수출 역량 강화	기 존 G-PASS의 수출노력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조달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개 선 G-PASS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진단 및 입찰가점 등 지원 차등화 조치사항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76	분할계약으로 과도한 기업 피해 방지	기 존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조달물품의 경우 효율적 계약 및 관리를 위해 다수의 세부품명 일괄 계약 개 선 계약서 초안 발송 시 세부품명 기준으로 분할 계약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추진 조치사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 시 반영
77	실적증명서, 보증서, 외자계약 요청서 등 온라인 발급 신청	기 존 실적증명서, 보증서, 외자계약 요청서 작성에 업무 비효율성 발생 개 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 추진 조치사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등
78	기술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기 존 고시금액(2.2억) 이상 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개 선 수업수행능력평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PQ평가 전산화 조치사항 협회 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화 등
79	과징금 적용 확대로 기업 재기 지원	기 존 경미한 위반 시 '부정당제재에 갈음하는 금전적 부담'인 과징금은 활용이 저조한 실정 개 선 기업 재기 기회 부여를 위해 과징금 체계 합리화 조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2 중소벤처기업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지역투자 주목적 인정비율 상향	기 존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시 지역투자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비율은 100% 개 선 25년 공고 시 지역투자 주목적 인정비율을 120%로 상향 조치사항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업공고 반영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완화	기 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이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투자로 규정 개 선 등록요건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치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	연대책임 금지를 통한 공정투자 확산	기 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규정이 존재 개 선 창업기획자및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 근거 마련 조치사항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4	창업비자 제도 개선	기 존 창업비자 발급 저조 개 선 지자체, 민간 AC 등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권을 부여하여 해외 우수 스타트업 적극 발굴 조치사항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
5	크레딧 실질 사용처 확대	기 존 부담크레딧 사용처가 전기가스요금 등 7개로 제한 개 선 통신비와 차량연료비를 크레딧 사용처에 포함 조치사항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공고 변경
6	중소기업 확인매출 기준 합리화	기 존 중소기업 확인 매출기준이 15년간 유지, 실제 성장이 아닌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졸업 개 선 매출상한 조정을 통해 단순 물가상승에 의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 해소 조치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7	벤처확인 업종을 확대하여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기 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벤처기업제한업종으로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면 즉시 취소 수순 개 선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 조치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8	소규모 공유보관시설 건축물 용도 신설	기 존 도심 내 소규모 보관시설 수요가 증가하나,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신사업 창업에 애로 개 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공유보관시설(면적제한 전제) 용도를 신설 조치사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
9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기 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개 선 상환연장 기간을 7년으로 확대 조치사항 장기분할상환 정책 사업공고 반영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0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출자한도 확대	기 존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위주 출자자로 결성되어 조합결성 규모가 작고, 조합별 투자 건수도 제한적 개 선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지방에 중점투자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상향(30→40%) 조치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1	창업기획자 컴퍼니빌딩 허용 범위 확대	기 존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기업만 지분 50% 초과 보유 허용 개 선 컴퍼니빌딩 목적의 자회사 설립 시에도 지분 50% 초과 보유 허용 조치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	지자체 출자 시 개인투자조합법인출자 비율 확대	기 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출자 허용 비율은 최대 30%로 제한 개 선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49%로 확대 조치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3	중소기업 R&D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요건 완화	기 존 R&D과제 수행 시 연구자 동시 수행 과제 수 5개, 연구책임자가 동시 수행 과제 수 3개로 제한 개 선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연구자 동시 수행 과제 수를 6개, 연구책임자가 동시 수행 과제 수를 4개로 완화 조치사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14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기업 대상 자금 연계 지원 강화	기 존 중소기업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기업 대상 구조개선 자금 등 연계 지원 중이나, 자금 조달 애로 개 선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기업 대상 지역별 지자체 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계 조치사항 2025년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 수립지침 개정
15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청년창업자 우대	기 존 창업자에게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 개 선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 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 신설 조치사항 창업보육센터(BI)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16	중소기업 기술임치 대행 서비스 도입	기 존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하여 기술임치에 대한 대행 서비스가 불가능 개 선 기술임치 대행 서비스(대한변리사회)를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기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서비스 추진 조치사항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개정
17	벤처투자시 인수합병투자 규제 및 CVC 규제 완화	기 존 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지분을 CVC 소속 기업집단에 매각 불가 개 선 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지분을 CVC 소속 기업집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8	신산업 분야 동종업종 재창업시 인정 요건 완화	기 존 중소기업이 폐업한 이후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3년 경과 후에만 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 개 선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인정 조치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19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제출서류 완화	기 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은 법인 신용정보 관련 서류 외,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 등에 관한 서류도 제출 개 선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정보 관련 서류만 제출 조치사항 혁신바우처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20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대상 확대	기 존 연구인력 채용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동일·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불가 개 선 기존에 지원받은 연구인력이 상향된 학위를 취득하여 타 중소기업에 채용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조치사항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반영
21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	기 존 창업보육센터에 공실 등 여유공간이 있더라도 창업기업 입주기간은 최대 8년으로 제한 개 선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20년으로 확대 조치사항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
22	창업경진대회 제출서류 간소화	기 존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참여를 위해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실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 개 선 실적 증빙자료는 예선통과한 기업만 제출토록 간소화 조치사항 2025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사업공고 반영
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 완화	기 존 소상공인 상환연장제도 요건이 엄격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자들에 대한 활용 저조 개 선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 상환연장 포함 * (기존) '다중채무' 기준은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하고, '매출' 기준은 전기 대비 10% 감소 → (개선) '다중채무' 기준은 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하고, '매출' 기준은 전기 대비 감소로 완화 조치사항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개선계획 반영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기 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이 은행·비은행권의 사업자 대출 및 사업용 가계대출로 제한되고, 거치기간도 고정 개 선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원금 상환개시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2025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 공고 반영
25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외국투자회사 인정 범위 확대	기 존 투자 유치 시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적격 해외투자회사 인정요건을 제한적으로 인정 개 선 모태펀드 출자 이력이 있는 해외 VC 등이 적격 해외투자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 조치사항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33 지식재산처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수출촉진을 위한 초고속 우선심사제도 도입	기 존 수출관련 우선심사 요건이 엄격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심사도 지연 개 선 수출관련 우선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우선심사보다 기간이 더욱 단축된 초고속심사 제도 신설 조치사항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2	디자인등록 출원요건 간소화	기 존 디자인출원서 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이 중복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출원인 불편 초래 개 선 '디자인의 설명'과도 중복될 수 있는 '창작 내용의 요점'의 기재항목 삭제하고, 도면과 디자인 설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디자인의 여부' 기재항목 삭제 조치사항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
3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전담심판부 확대	기 존 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첨단모빌리티·AI·이차전지·차세대통신·디지털미디어 사건처리를 전담하는 6개 전담심판부 운영 개 선 바이오, 로봇, 의약품 기술분야를 추가하여 총 9개 전담심판부로 확대 운영 조치사항 전담심판부 추가 지정
4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개선	기 존 행정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시 서면요구 의무만 규정 개 선 민원인은 자료제출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중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자료제출 서식 개선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특허심사 지원	기 존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첨단기술 분야 우선심사에서 제외 개 선 바이오(생명공학, 헬스케어), 첨단로봇,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첨단기술 분야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 조치사항 우선심사 대상 추가지정 공고
6	신속한 사업화 등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시,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기 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시 출원인은 출원발명에 대한 선행기술 검색방법 및 결과(문헌4개이상)를 제출하는 자체 선행기술조사가 필수 개 선 우선심사 신청 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요건 삭제 조치사항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34 질병관리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교육 관리체계 정비	기 존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감염관리 교육 정보 및 법적 교육 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부재 개 선 '감염관리 교육운영 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 관리체계 정비 조치사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관리 교육운영 관리시스템 개발
2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자료 관리 및 환류체계 개선	기 존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관련 참여기관 정보제공및 감시자료 입력·관리 시스템을 이원화하여 운영 개 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KONIS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 및 감시자료 입력·관리체계 단일화 조치사항 정보 환류 체계 일원화 운영 및 참여기관 공문 안내
3	코로나19 백신 조달구매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기 존 코로나19 백신이 독점 발생 시 백신 수급안정 불안 및 국민 백신 선택권 불가 등의 문제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상황 개 선 백신 수의계약에 가격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백신 구매비를 절감(약 110억) 조치사항 백신 수의계약에 가격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조달계약 체결
4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반품 정책 개선 및 유통체계 전환	기 존 팍스로비드는 완전한 시중유통 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제약사는 기존 '반품 불가 관행' 관행을 유지 개 선 '전면 반품 허용'을 제도화 조치사항 전면 반품 허용을 제도화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운영 개선	기 존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기관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기준 부재 개 선 감염관리 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운영 가이드를 통해 표준화된 감염관리 커리큘럼 마련 및 교육기관의 운영기준 제시 조치사항 감염관리 표준 교육커리큘럼 및 교육운영가이드 마련
6	국내 최초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 운영 표준 모델 공개	기 존 감염병 병원체 확인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진단검사 실험실 운영의 핵심 요건이나, 감염병 검사에 특화된 실험실 운영 및 질 관리 체계의 국내외 공통 모델이나 지침은 부재 개 선 감염병 실험실 운영 체계의 표준 실무 지침을 최초로 제시 조치사항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 운영 지침 게시
7	국가 감염병 검사능력 평가 기준 표준화 및 운영 역량 강화	기 존 매년 공공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에 대해 수십여 종의 감염병 검사 정확도를 평가 중(숙련도평가)이나, 감염병별 소관 부서가 개별적으로 숙련도평가를 운영하고 있어 평가방식 등이 다양하고 복잡 개 선 숙련도평가 운영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합·정비하고, 현장 중심 실무 가이드 마련 조치사항 질병관리청 감염병 진단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가이드 마련
8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기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기 존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대 7일 이상 소요 개 선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기록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9	지자체 역학조사관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신설	기 존 현장대응 중심의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질병관리청수료요건을 적용함에 따라, 시·도 수습역학조사관 수료 의지 저하 및 교육·훈련기간 장기화 개 선 현장 역량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신규 교육·훈련 과정 개설 및 지자체 역학조사관 수료요건 완화능 조치사항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10	한국인 판지놈 지도 구축 및 유전변이 빈도 정보 공개	기 존 공개 중인 전염기서열정보 기반 유전변이 빈도 정보 등은 인구집단의 다양성 반영 등에 한계 개 선 한국인 차세대 참조유전체 지도인 판지놈(Pangenome) 지도 구축 및 유전변이 빈도 등 정보 개방을 추진 조치사항 한국인 판지놈 지도 구축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세균성 감염병 분자역학 분석 의료기관 환류체계 마련	기 존 분자역학 분석 결과 환류 체계가 부재하여 의료현장에서 병원체 유행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 개 선 주요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자역학 분석 정보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 조치사항 세균성 감염병 분자역학 분석 정보지 발간 및 온라인 환류체계 마련
12	감염병 뉴스 정보 제공 채널 및 대상 확대	기 존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환자를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직군(약사, 지자체 감염병 대응업무 담당자)과 일반국민 대상으로 정보 제공 확대 요구 증가 개 선 감염병 뉴스 정보 제공 대상을 감염병 현장 대응 인력까지 포함 조치사항 감염병 뉴스 정보 제공 대상 확대
13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신청 기준 완화	기 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신청 시 교사 수가 5인 이상인 기관(유치원·어린이집)만 신청 가능하여, 소규모 기관의 참여 한계 개 선 안심학교 신청을 위한 교사 수 기준을 3인 이상인 기관으로 완화 조치사항 사업 지침 안내 공문 시행
14	HIV확인검사 기관 범위 확대를 통한 검사기간 단축	기 존 HIV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검사기관이 17개로만 제한 개 선 HIV확인검사 기관을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까지 확대(20개 추가) 조치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5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철회로 병원 재정 부담 완화	기 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조건을 상이하게 적용 개 선 이행보증 보험 가입 조건을 철회하여 병원 재정 부담 완화 조치사항 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 철회 조치 결정 및 안내
16	청소년 건강행태 장기추적 자료 국내 최초 공개를 통한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기 존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는 대외 비공개 개 선 자료 이용 지침서 개발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공개 조치사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와 연계하여 원시자료 공개
17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절차 간소화	기 존 외국에서 배아줄기세포주를 수입할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질병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미 등록된 세포주라도 등록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개 선 등록된 수입 배아줄기세포주는 은행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신속하게 등록 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개정
18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한 피해구제 기회 마련	기 존 코로나19 팬데믹 예방접종 후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 협소 개 선 별도의 보상위원회·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보다 확대된 판정기준 적용 조치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9	결핵 집단발생 취약시설의 맞춤형 결핵 대응 매뉴얼 수립	기 존 결핵 집단발생 취약시설 중 노인입소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매년 지속 발생함에 따라, 현장 실무자를 위한 안내서가 필요 개 선 결핵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맞춤형 결핵 대응 매뉴얼 수립 조치사항 결핵 취약시설에 특화된 지침 마련
20	한국인 유전체 이차발견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기 존 유전체 검사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견되는 이차발견 결과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공식적인 해석 및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 개 선 암 및 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의 병인성 유전변이에 대한 단계별(상담-분석-결과전달-후속관리)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21	백신 평가 표준화 네트워크 참여기관 신규 지정을 통한 감염병 백신 평가 표준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기 존 국내 백신 임상검체 분석 체계가 기관별로 상이 개 선 백신 임상검체 분석 표준화 네트워크 참여기관에 신규 지정되어, 글로벌 수준의 백신 효능평가 표준화 및 신속한 백신 개발에 기여 조치사항 중앙실험실 네트워크 참여기관 신규 지정
22	미등록 외국인 HIV 진료 지원체계 마련	기 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체계가 부재 개 선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진료 지원체계(입원, 외래, 검사비, 약제비)를 마련 조치사항 2025년 HIV/AIDS 관리지침 개정
23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기 존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한 개 선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개통으로 건강위해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제공 조치사항 통합 플랫폼 구축
24	당원병 환자 특수식 지원 품목 확대	기 존 일반 옥수수전분(Argo 등)만 특수식 구입비 지원 품목에 해당 개 선 특수 옥수수전분과 일반, 특수 옥수수전분 혼합 섭취까지 포함하여 총 세 가지 유형을 선택적으로 지원 조치사항 관계기관 공문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25	국민건강영양조사 온라인 기반 자기기입식 식품섭취조사 개발	기 존 대면 면접 방법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를 받고 있어 불편 증가 개 선 온라인 기반 자기기입식 식품섭취조사 시스템 개발을 통해 불편한 행정조사를 개선 조치사항 온라인 기반 자기기입식 식품섭취조사 시스템 개발
26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건의료 연구자원 공유·개방 확대	기 존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질환 인체자원 등은 공유·개방 제한 개 선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만성뇌혈관질환 등 질환 인체자원 공유·개방을 확대 조치사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질환 인체자원 공유·개방 확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7	결핵 빅데이터 (K-TB-N 코호트) 구축 및 개방	기 존 결핵 빅데이터는 사전 선정된 연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연구자는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과업 내용과 기한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 개 선 질병관리청의 결핵환자 신고 정보와 건보공단 건강정보를 연계한 결핵 빅데이터(K-TB-N 코호트)를 구축하고, 건보공단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일반연구자에게 개방 조치사항 결핵 빅데이터 (K-TB-N 코호트) 구축 및 개방
28	강제격리 감염병 격리 체계 정비	기 존 A형간염 및 2급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격리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제한 수준이 높은 의무 격리 대상으로 지정 개 선 A형간염 및 2급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의무 격리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관리 수준을 조정 조치사항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
29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혼합조사 기반 마련	기 존 '08년부터 가구방문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여, 조사방식의 변화 필요 개 선 조사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혼합조사(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편 조치사항 혼합조사 시범사업 추진
30	크루즈선 검역 방법 개선	기 존 크루즈선 국내 입항 시 검역관이 전수 승선하여 검역서류 및 탑승객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에 하선이 가능 개 선 환자 발생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경우에 한하여 승선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 서류검역으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조치사항 크루즈선 검역 개선 시범사업 시행
31	결핵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기 존 결핵치료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스트렙토마이신 등을 긴급도입하여 공급 중이나, 다제내성결핵치료 및 결핵(예방)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한정 개 선 결핵, 결핵균 감염에 따른 질병, 폐결핵, 폐외결핵 치료 등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조치사항 결핵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안내
32	LMO 연구시설이 없어도 LMO 실험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 개정	기 존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하거나 실험을 하기 위해서, LMO 연구시설을 안전관리 등급별로 신고 혹은 허가 필요 개 선 기존 신고·허가된 LMO 연구시설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LMO 개발실험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생물안전 3등급 설치운영지침 등 개정
33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서비스 개선	기 존 보건소 직원이 입원격리 대상자의 격리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입원격리통지서 전달 개 선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한 신속한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 조치사항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 개선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3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신청 편의성 제고	기 존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성인 120%, 소아·청소년 130%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 개 선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연령 구분 없이 140%까지 확대하고, 신청 시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우편 및 팩스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35 통일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대북사업자 지정제도 폐지로 인한 반출승인신청 간소화	기 존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신청 시 '대북 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개 선 기존 협력사업에 대해 요구하던 합의서 제출을 적용하여 반출승인신청 간소화 조치사항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36 해양경찰청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기준 개선으로 국민소득 증대	기 존 AIS(위치발신장치) 정보조작 등 명확한 단속 근거와 기준 부재 개 선 AIS위반 유형을 고장방치, 상시 미작동, 출력 조정, 정보조작 등으로 세분화 조치사항 중어선 신규 조업조건 신설 등
2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기 존 해상풍력 발전으로 직면하게 될 해양사고 예방·대응, 환경보호, 불법단속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 필요 개 선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역 항행 선박의 관제 신고체계 개선 및 외부 관제시설 도입 시 표준절차 마련 조치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통선, 소형여객선 등의 신고 간소화	기 존 통선과 소형 여객선의 경우 선원이 적어 승객이 타고 내리는 작업과 관제 신고를 병행하는데 한계 개 선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바로 출항하는 경우, 항행을 시작하기 전 신고 면제 조치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4	수상구조사 유사자격 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 면제	기 존 수상구조사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64시간 사전교육이 필요하나, 유사 자격·경력자의 경우 교육을 반복 이수하게 되어 비효율 발생 개 선 응급구조사, 긴급구조기관 종사자 등 일정 자격·경력을 보유한 경우 교육과정 일부를 면제 조치사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5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기 존 현행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교육기관 확충에 한계 개 선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강사인력 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 조치사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6	고소·고발 보충 내용 접수 방식에 전자문서 도입	기 존 고소·고발을 수리한 후 내용 보충이 필요한 경우,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듣도록 규정 개 선 형사 절차 전자화 추진 및 고소·고발 보충 내용 접수 방식에 전자문서 제출을 추가 조치사항 해양경찰수사규칙 개정
7	해양경찰 장비도입 시장변화 대응력 및 투명성 강화	기 존 신규 장비 도입 시 객관성이 확보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 요구 개 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예산검토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장비선정 투명성을 확보 조치사항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개정
8	참고인 원격 화상조사 확대 추진	기 존 원거리 거주 참고인이 조사 참석을 위해 관할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경우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이 존재 개 선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하여 참고인 원격 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조치사항 해양경찰수사규칙 개정
9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양경비 정보 수집·활용으로 해양 치안 역량 강화	기 존 국토면적 4.5배에 해당하는 관할해역의 효율적 감시·경비를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개 선 MDA 체계 구축의 안정적인 동력 확보 및 해양경비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 조치사항 해양경비법 개정
10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의무 완화	기 존 수상레저안전법령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한 이용객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일괄 적용되어 불편 초래 개 선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입고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수상레저기구 운항 위험구역 개선	기 존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방파제 등 위험구역 인근에서 고속으로 항해하는 경우, 방파제와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예상 개 선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수상레저기구의 속도를 제한하는 위험구역에 방파제 추가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12	수상레저 규제개선으로 민생규제 합리화	기 존 수상레저사업사업자의 휴업 신고 및 조종면허 응시제도 개선 관련 불편 민원 발생 개 선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휴업 신고하도록 하고, 필기·실기시험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
13	현장교육 및 원격교육 도입을 통한 선박운항자 교육 접근성 강화	기 존 현재 집합교육 형태인 선박운항자 교육은 피교육자의 승선근무로 인해 상시 교육이 어렵고, 승선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원거리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위탁교육기관에 참석 필요 개 선 현장교육, 원격교육 등 선주의 운항자에 대한 교육 방법을 다변화 조치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	어선위치발신 장치관련 신고 전자화로 어업인 편의 증진	기 존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시 파출소 방문이 필요하며, 수리·재설치 연기 신청 시에는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필요 개 선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적 수단(모바일, 인터넷)의 신고방법 추가 조치사항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37 해양수산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해상 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	기 존 종자생산업은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한정 개 선 해상 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등 신설 조치사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2	TAC 단계적 확대	기 존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위해 TAC 단계적 확대 필요 개 선 TAC 적용 어종(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 및 업종(쌍끌이 대형저인망, 근해안강망, 형망, 소형선망) 확대 조치사항 TAC 시행계획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3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기 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대상이 제한 개 선 노지 내수면 양식업과 어업허가 공유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조치사항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	어선 안전 보건관리 일원화 및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 마련	기 존 20톤 미만 어선은 해수부 소관「선원법」, 20톤 이상 어선은 고용부 소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 개 선 어선원 안전·보건관리를 해수부로 일원화하여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 등 마련 조치사항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정 및 어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5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기 존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위해 TAC 기반 어업 규제 완화 필요 개 선 자원관리, 어선안전 이행 전제하에 어구어법 등 14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 조치사항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실시계획 마련
6	기존 양식업 만료 후 해조류 양식으로 허용	기 존 어류 등 기존 양식업에서 김양식업으로 전환 불가 개 선 기존 양식업권 만료 후 김양식 전환 허용 조치사항 면허양식장 개발지침 개정
7	전기차 운송 선박에 전용소방설비 비치 의무화	기 존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 개 선 전기차 운송 선박에 전용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 조치사항 선박소방설비 기준 개정
8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이동 보장을 위한 시설기준 마련	기 존 해상풍력단지 등 산업현장으로 이동하는 인력의 안전한 해상이동을 위한 법적 기반 미비 개 선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기준 마련 조치사항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정
9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개선	기 존 선박소유자만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가능 개 선 선박소유자뿐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가능 및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인증 가능 예외규정 신설 조치사항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10	전기추진선박 신기술 제도화	기 존 이동식전원 등 전기추진선박과 관련된 신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개 선 추진방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 개선 조치사항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선도 기반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예타 면제	기 존 자율운항선박법 실증 특례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미비 개 선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한 기술개발 기반 확보 조치사항 기술개발 예타 면제
12	항만배후단지 내 데이터센터 입주 허용	기 존 스마트항만 구축 및 항만 자동화 촉진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주기반 미비 개 선 항만배후단지 내 데이터센터 입주 허용 조치사항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13	마을어업 내 낚시 유어장 허용	기 존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 개 선 마을어업의 면허어장에서 부유식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 운영 가능 조치사항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14	정기 항만안전 교육 이수주기 합리화	기 존 항만근로자의 정기안전교육 이수 기준이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 내 재이수로 규정 개 선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상관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교육 주기를 일원화 조치사항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15	수산부산물 운반업자 대상 보관시설 구비의무 완화	기 존 수산부산물을 보관 없이 운반만 하는 처리업자에게도 보관시설 구비의무 부여 개 선 운반만 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조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6	TAC 정착 업종 대상 선복량 완화	기 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선복량(어선의 부피)를 제한 개 선 TAC 정착 업종을 중심(대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연승)으로 선제적으로 선복량 상한 완화 조치사항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17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기준 완화	기 존 종자업 허가를 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사육수공급시설에 대해 다른 생산자에게 허가를 제한 개 선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조치사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
18	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완화	기 존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과 블렌딩용 오일 운반선의 선령 제한(15년) 존재 개 선 자동차 운반선과 블렌딩용 오일 운반선에 대해 선령 제한 일시적 폐지 조치사항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9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 제도 개선	기 존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한 차량을 카페리선박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 외에도 경찰서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 필요 개 선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은 차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조치사항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	3톤 미만 어선 대체 시 오차범위 인정 허용	기 존 어선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총 톤수의 오차 허용범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톤 미만의 어선을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 오차허용범위 미적용 개 선 3톤 미만 어선의 대체 시에도 총톤수 오차범위를 인정 조치사항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1	선사의 안전분야 투자 확대 기반 마련	기 존 선원과 여객 등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대응 필요 개 선 선사의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공시제도 시행 및 세부기준 마련 조치사항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기준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2	자연재난 복구단가 현실화	기 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 대상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복구단가 현실화 필요 개 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인상(14개 품목, 평균 27%) 조치사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
23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기 존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입식비만 지원하고, 주생계 어가에게만 한정하여 지급 개 선 입식비 외에 생산비용도 지원하고, 주생계 외에 부업어가까지 확대 조치사항 농어업재해 대책법 개정
24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 존 기상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개 선 2인 이하 승선 및 어선 등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단계적 추진 조치사항 구명조끼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한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보급 관련 사업지침 개정
25	불법 방치어구 등 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기 존 불법 방치어구 등 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미비 개 선 불법 방치어구 즉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법 예외 특례 신설 및 어구 신고제 도입 조치사항 수산업법 개정
26	어선 건조업, 개조업 등록제 도입 기반 마련	기 존 어선 건조업, 개조업 등록제 도입 기반 마련 필요 개 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의 원활한 시행(25.12월)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 조치사항 어선법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27	국적 원양어선 내 외국인 해기사 허용	기 존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 해기사 자격증은 해수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상호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미가입 개 선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 원양어선의 해기사로 고용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선박직원법 개정
28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	기 존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 개 선 부담금 폐지 조치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9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기 존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 개 선 해양심층수관련업에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정의 및 신고절차 등 규정을 신설 조치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30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기 존 수산자원조성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 등 수혜자에게 부과 개 선 부담금 폐지 조치사항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31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기 존 공동운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 개 선 부담금 폐지 조치사항 해운법 개정
32	수산업 융자금 지원대상자 사망 시 회수 유예기간 부여	기 존 수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 개 선 융자금 지원받은 자의 사망 시 회수 유예기간(3개월) 부여 조치사항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33	수산물 위판장 개설자의 자료 의무보관기간 단축	기 존 위판장 개설자가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품목 등 관련 자료를 매수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 개 선 위판장 개설자의 자료 의무보관기간을 2년으로 단축 조치사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34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입지시설 확대 및 양도제한 해제	기 존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적으로 명시, 상부시설 양도제한 발생 개 선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고, 상부시설 양도제한을 해제 조치사항 2종 항만배후단지 설치 시설 고시 제정
35	항만구역 내 처벌대상에서 낚시 행위 삭제	기 존 항만 내 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 개 선 항만에서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처벌대상에서 낚시행위 삭제 조치사항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
36	친환경 선박신조 지원사업 중소선사 가점 강화	기 존 친환경선박 신조가 부담스러운 외항선사 지원을 위해 친환경선박 신조 시 최대 10%까지 선가를 보조 개 선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중소선사에 대한 가점 강화(7→10점), 중소선사 대상 선가보조율 우대근거 마련 조치사항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
37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	기 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는 5개 업종으로 운영 개 선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생산할 수 있도록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 조치사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38	바다해설사 자격취득 교육시간 완화	기 존 바다해설사 자격취득을 위해서 전문교육 60시간 이수 필요 개 선 전문교육 필수 이수 시간 완화(60시간 → 53시간) 조치사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
39	소규모사업은 해역이용 협의·평가 없이 신고로 간소화	기 존 소규모 사업이나 사업연장 시에도 협의·평가를 요구 개 선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서식으로 갈음 조치사항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38 행정안전부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기 존 국민생활 밀접 분야 등 공공데이터 개방 개 선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분야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요구가 높은 AI친화적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조치사항 [기타] AI기업·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선정 및 역점 개방
2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처 확대	기 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되, 정책발행 등에 대해 예외 허용 개 선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 가맹점 등록 기준 예외를 허용 조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
3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 존 지자체장이 재난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 가능 개 선 경제적 비상상황 시 지자체장이 소상공인 등에 임대료 부담 완화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조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선	기 존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가능하여, 실종사망자의 경우 법원 실종선고(사망간주일 판정)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불가 개 선 실종자에 한해 실종선고일부터 1년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한의 기산일을 개선 조치사항 사망자 및 피후견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개정
5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개설	기 존 대국민 서비스가 부처별 소관 시스템(홈택스, 복지로 등)에서 분산되어 제공 개 선 정부24를 확대 개편하여 부처별 대국민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 조치사항 부처별 서비스 연계 확대
6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굴 및 관련 규정 신속 개정	기 존 고금리, 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 침체 개 선 건설협회·기업·지자체·전문가 등 민관합동 TF 운영으로, 실효적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굴 및 관련 규정 신속 개정 조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7	AI 기반 지능형 통합관제 체계 전환	기 존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CCTV 실영상 기반 학습데이터 구축 한계 개 선 안전한 AI 기반 관제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재난안전 관련 학습데이터를 수집·공동활용할 수 있는 환류 체계 구축 조치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번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지자체 재난안전 드론 활용 확대	기 존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가 드론을 현장에서 즉시 사용하여 재난현장을 감시해야 하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 개 선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의 신속한 드론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조치사항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정 개정
9	정주여건 등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기 존 인구성장기에 적합한 기준·규제 지속 개 선 인구감소시대에 따라, 기업·인력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기준 완화 특례 발굴 조치사항 인구감소지역법 등 관계법령 개정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확대	기 존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행·재정적 지원 중 개 선 수도권 집중 및 인구감소 심화, 지방소멸위기 확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확대 조치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개정
11	지자체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	기 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허가기준 규제, 상위법령 규제개정 미반영 조례, 상위법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과도하게 해석되어 적용되는 규제 등 존재 개 선 불합리한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일제정비 및 행태규제 개선, 각종 영향평가 통합심의 진행 조치사항 2025년 지자체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 규제 정비(3,555건 발굴 등)
12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개선	기 존 ISO22301과 중복 부분에 대한 평가면제 규정이 부재하고, 인증에 90일 가량이 소요 개 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인증 효율화로 소요기간 단축 조치사항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13	공무원 직렬에 따라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자기개발휴직	기 존 공무원 종류에 따라 자기개발휴직 요건이 상이 개 선 모든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조치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14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기 존 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지방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의계약 가능 개 선 청년창업기업과 지방계약 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허용 조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 존 현행 인증 유효기간 3년 개 선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1년 연장 조치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2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천해선 사무관 Tel. 044-200-2414

1 | 본 위원회 개최일지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575회 (1.10.)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고					
	국조실	2024년 규제혁신평가 결과	의결	1	0	0	0	1
제576회 (1.23.)	행안부	2024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주요 규제개선 성과	보고					
	국조실	2024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결과	보고					
제577회 (2.14.)	국조실	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보고(KDI)	보고					
	개보위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결	0	0	1	0	1
	개보위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의결	0	0	3	0	3
제578회 (2.28.)	산업부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	보고					
	국조실	2025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의결	1	0	0	0	1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					
제579회 (3.14.)	국조실	규제개혁추진단 주요 추진 과제	보고					
	국조실	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	보고					
제580회 (3.28.)	산업부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	보고					
	중기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제도 검토	보고					
	국조실	제2차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결과	보고					
제581회 (4.11.)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의결	1	0	0	0	1
제582회 (4.25.)	국조실	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개선	보고					
	행정연	법정의무교육 도입 및 운영 가이드 라인(안)	보고					
제583회 (5.16.)	국조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안)	의결	계속심사				
	국조실	2023·2024년 재검토 규제 정비 점검 결과 및 2025년 재검토 규제심사 진행 현황	보고					
제584회 (5.29.)	공정위	기업집단 현황공시 관련 검토(안)	보고					
	방통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연구용역 결과	보고					
	국조실	규제혁신 추진성과	보고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585회 (6.13.)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국토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586회 (6.27.)	중기부	2025년 상반기 중기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제587회 (8.8.)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결과	보고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품목 확대(안)	의결	0	0	1	0	1
제588회 (8.22.)	국조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결과	보고					
제589회 (9.12.)	국조실	2025년 상반기 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	보고					
제590회 (9.26.)	국조실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	의결	1	0	0	0	1
	국조실	2025년 상반기 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	보고					
제591회 (10.17.)	국조실	법정의무교육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안)	의결	1	0	0	0	1
제592회 (10.31.)	국조실	IT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완료에 따른 법령정비(안)	의결	0	0	1	0	1
제593회 (11.14.)	국조실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안)	보고					
	국조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보고					
제594회 (11.28.)	산업부	2025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	의결	1	0	0	0	1
	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결과	보고					
제595회 (12.12.)	국조실	생활숙박시설 객실단위 숙박업 운영지원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안)	보고					
	교육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제도개선 방안(안)	보고					
제596회 (12.19.)	국조실	2026년 기존규제 정비지침(안)	의결	1	0	0	0	1
계	**안건수: 42 (의결안건 14건, 보고안건 28건)**		**-**	**7**	**0**	**8**	**0**	**15**

2 | 경제분과위원회 개최일지

송경준 사무관 Tel. 044-200-2398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573회 (1.6.)	산업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제574회 (1.10.)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575회 (1.17.)	기후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제576회 (1.24.)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의결			1		1
제577회 (2.14.)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578회 (3.2.)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제579회 (2.28.)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의결			1		1
제580회 (3.14.)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제581회 (3.23.)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 제정안	의결			1		1
제582회 (3.30.)	해수부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583회 (4.6.)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584회 (4.11.)	국토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	의결			1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1		2
제585회 (4.13.)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의결		1			1
제586회 (4.20.)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587회 (5.16.)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의결			1		1
제588회 (5.25.)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589회 (5.29.)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의결		1			1
제590회 (6.15.)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591회 (6.22.)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592회 (6.27.)	기후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	의결			1		1
제593회 (7.27.)	중기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의결			1		1
제594회 (8.22.)	국조실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층검토	심의	-				
제595회 (9.12.)	국조실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층검토	심의	-				
제596회 (10.19.)	과기부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의결			1		1
제597회 (10.31.)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598회 (11.14.)	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599회 (11.23.)	지재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개정안	의결			3		3
제600회 (12.12.)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2
제601회 (12.22.)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	의결	1				1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1
계	**안건수: 37 (의결안건 35건, 심의안건 2건)**			**3**	**5**	**36**	**-**	**44**

3 |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김수현 사무관 Tel. 044-200-2443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613회 (1.10.)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제614회 (1.17.)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제615회 (1.2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제616회 (1.24.)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3		
제617회 (2.7.)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제618회 (3.2.)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제619회 (3.30.)	소방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제620회 (3.28.)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제621회 (4.6.)	식약처	디지털 의료 제품 허가·인증·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제622회 (4.11.)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법령 시행에 따른 규제 체계	보고					
제623회 (4.27.)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624회 (4.25.)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3		1	
제625회 (5.18.)	기후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제626회 (5.23.)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3		1	
제627회 (6.2.)	식약처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제628회 (6.30.)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제629회 (6.27.)	기후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제630회 (7.14.)	기후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제631회 (7.11.)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3		1		
제632회 (7.21.)	기후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제633회 (8.25.)	질병 관리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1				
제634회 (8.22.)	국조실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층검토안	심의					
제635회 (9.5.)	기후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기후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결		1			
제636회 (9.12.)	국조실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2차 심층 검토 과제	심의					
제637회 (9.26.)	식약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3		
제639회 (11.3.)	고용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2			
제640회 (10.31.)	고용 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제641회 (11.10.)	행정 안전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제642회 (11.2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 심사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643회 (12.8.)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제644회 (12.15.)	기후부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의결			1		
제645회 (12.12.)	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보건복지부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의 정합성 확보 방안 검토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분석	보고					
제646회 (12.22.)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제647회 (1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2		
계	**안건수: 43 (의결안건 38건, 심의안건 2건, 보고안건 3건)**		**-**	**8**	**14**	**29**	**4**	**55**

03 규제합리화 관련 법령

1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⑤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381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제6항 후단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2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3. 3.] [대통령령 제36161호, 2026. 3.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규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구술·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 「산업융합 촉진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①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라 한다)의 부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3조의8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요청한 날부터 위원회가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4(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① 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결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하여 부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규제 특례 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의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의5(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을 받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의6(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①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이하 "규제법령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 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 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4. 향후 정비 계획
5.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

②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을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이 없더라도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 경우에는 규제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규제의 면제일 또는 완화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8(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의견이 달라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해당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의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신산업,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36161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3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 7. 19.] [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 7.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하 "경제규제"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등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순한 조문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첨단기술·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제한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기존규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관리 대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예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등(이하 "고시 등"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시 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고시 등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여부
3. 고시 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4.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지 여부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관 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와 의견을 제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00669호, 2016. 7.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4. 4. 15.] [국무조정실훈령 제204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중요규제등의 결정)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행정사회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2조(소관)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재외동포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질병관리청,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5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5. 삭제

제17조(심의안건 설명) 규제조정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자문기구·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8조(자문기구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자문기구를 둔다.

1. 비용분석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4. 지방규제혁신위원회

② 자문기구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기구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지방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 자문기구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기구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20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 제·개정 지원
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23조(위임)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③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4호, 2024.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3.] [국무총리훈령 제821호, 2022. 8. 3.,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규제혁신추진단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3.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관한 규제개선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개선과제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성과 활동경력 및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심의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지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심의회 회의에의 참석 요청
   나.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요청
2.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속한 단체나 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에서 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한 안건인 경우

② 위원은 심의 안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는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부칙 〈제00821호, 2022. 8.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시행 2022. 8. 3.] [국무조정실훈령 제172호, 2022. 8. 3.,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명칭은 '규제심판부'로 한다.

제3조(분야 및 분과) ① 규제심판부는 규정 제2조의 규제개선과제의 성격에 따라 경제와 행정·사회의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총괄분과를 둔다.

② 경제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금융·공정거래
2. 주택·교통·입지
3. 소상공인·중기벤처
4. 산업혁신·에너지
5. ICT·과기·방통

③ 행정·사회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행정·지역
2. 교육·문화
3. 보건·의료
4. 해양·환경
5. 고용·안전

제4조(조직) 규제심판부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수행한다.

제5조(심의과제의 선정)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

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회 회의의 운영)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규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
2. 해당 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
3. 해당 규제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등 기타 참고자료

③ 규제총괄정책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가운데 1인을 회의의 의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일반국민 의견수렴)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가 '개선필요'인 경우 해당규제의 소관부처에 그 이행계획이나 불수용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1항에 따라 해당규제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불수용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72호, 2022. 8. 3.〉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1.] [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026.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면제·유예 등에 관한 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를 위하여 각 작업단에 소관 분야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작업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규제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00911호, 2026. 1. 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Annual Report 2025

기획·편집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 / Tel. 044-200-2428
집 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강 철 사무관, 강하늘 사무관, 강형석 사무관, 고명수 사무관, 고연주 사무관, 고유미 사무관, 김동현 사무관, 김민주 사무관, 김수현 사무관, 김수현 사무관, 김영길 주무관, 김은영 사무관, 김현종 사무관, 김혜원 사무관, 박도연 사무관, 박종민 사무관, 변경록 사무관, 성진구 사무관, 성현주 사무관, 송경준 사무관, 송경준 사무관, 신부섭 사무관, 신우철 서기관, 안중진 주무관, 유가영 사무관, 임대종 사무관, 전예진 사무관, 정연호 사무관, 정용균 사무관, 정재영 사무관, 조대웅 사무관, 천해선 사무관, 최원석 서기관, 최원진 서기관, 최형옥 사무관, 하윤정 사무관, 한재찬 전문위원, 박서연 인턴
발 행 일	2026년 3월 31일
발 행 처	국무조정실
편집·인쇄	디자인여백플러스 / Tel. 02-2672-1535

※ 본 백서의 내용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1092113-100001-10

2025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Annual Report 2025

E-BOOK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규제합리화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reg

규제합리화 블로그
blog.naver.com/koreareg